

1999年度  
國政監查

教育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被監查機關 教育部

日 時 1999年10月15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10시14분 감사개시)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육부분부에 대한 199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분규대학의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이 중부대학교, 한려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내는 날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학분규의 원인과 현안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모색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우리가 왜 바쁘신 여러분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많은 사학은 여러 유형의 학내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분규가 발생하고 나면 치유가 매우 어려워 분규가 고질화되거나 일단 정상화되는 듯하다가도 다시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당국인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사학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자율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87%나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학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확실히 담보되는 상황이어야 진정한 대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 나라 사학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우리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계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분규의 원인과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발전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심분 이해하시고 사학분규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해 주셔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당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중부대학교, 한려대학교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의 증인들에 대하여 학내문제와 관련한 신문을 한 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우선 교육부장관께서 이상 3개 대학의 학내문제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신 다음 3개 대학교의 증인이 일괄하여 증인신문서를 한 다음 각 대학교별로 신문하고자 합니다.

대학별 신문순서는 중부대학교, 한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겠습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교육부장관입니다.

어제 보고에 이어서 중부대, 한려대, 덕성여대의 학교별 분규발생원인, 경과, 현 상황,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93년부터 95년까지 신규채용한 30여명의 교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법인 및 학교운영을 이사장과 동인의 처남인 柳時建 부총장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99년9월21일자로 이사장 등 6명을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대전지검에서는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이사장 등 6인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원 신규채용 부당행위가 94년 이후 98년까지 반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교수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높으나 행정감사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수임용 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검찰수사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5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려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설립자가 단기간 내에 한려대의 3개 대학을 설립인가 받았으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교를 관리·운영할 행정체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즉별 및 즉근체제로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재정을 건물신축 등 고정자산 확보에 지나치게 투자하여 실험·실습 등 기본적인 교육여건 확보와 교원처우 개선 등이 미흡하였으며 학교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97년4월30일자로 공금횡령 혐의로 李洪河씨가 구속되었고 98년6월8일부터 6월13일까지 교수협의회 등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설립인가사항 미이행 및 사립학

교법 위반 등이 확인되어 98년7월31일자로 학교폐쇄를 계고조치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한려대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학교측과 교수협의회측의 의견이 상이하며 폐쇄계고 당시 2,300명이었던 학생수가 99년8월말 현재 825명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당시 80명이었던 교수가 9월21일 현재 3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측과 교수협의회측이 학교폐쇄 계고기간 중에도 서로 불인정하고 학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대립하는 등 정상화의 지 및 이행정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폐쇄계고 사후의 이행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금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라는 청문회를 거쳐 학교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성여자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규발생 원인은 韓相權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朴元國 이사장의 학사행정 간여로 인하여 학내갈등을 유발하였으며 97년6월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이사장의 대학 학사행정에 대한 제도적·관행적 간섭 등 8개 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법인과 교수협의회간의 대립양상이 노출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97년10월10일자로 朴元國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고 97년12월29일자로 朴元國 전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 99년8월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朴元國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교육부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李文永 이사장 취임 이후 학생시위 및 교수농성 등은 중단되었으며 교육부가 패소한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은 99년9월6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이사장의 법인 및 학교운영에 대하여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일부 교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朴元國 전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점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법원에 상고한 행정소송을 선임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31쪽의 학교법인 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證 人 姜明姬

證 人 韓相權

證 人 金鍾華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오늘 출석하신 3개 대학교 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중부대학 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부대학교 張炳圭 총장 외 15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張炳圭 총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張炳圭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0월15일

- 證 人 張炳圭
- 證 人 李仁浩
- 證 人 金衡東
- 證 人 徐福英
- 證 人 金兌鎬
- 證 人 金炳炫
- 證 人 李文永
- 證 人 李康赫
- 證 人 李相信
- 證 人 權順慶
- 證 人 金文奎
- 證 人 朴元國
- 證 人 申和容

○委員長 咸鍾漢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에 의해서 증인신문은 먼저 중부학원 중부대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려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 증인들께서는 귀가하시지 말고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학교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교육부 감사시 또 참석하셔야 합니다.

중부대학교 증인들 중에 李普淵 이사장, 柳時建 부총장, 洪京杓 교수협의회 총무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중부대학교에 대한 신문은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세 분을 성명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在五委員 소개하기 전에 李普淵 이사장이 여기에는 불참으로 안 되어 있는데 왜 불참한 거예요, 언제 연락 왔어요?

○委員長 咸鍾漢 연락은 어제부터 온 모양인데 이것은 증인명단을 전부 인쇄해 놓은 다음이라서 그렇고 李普淵 이사장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무조건 안 나온 상태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구두로 통보만 하고 안 나온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구두로 언제 통보 왔어요?

○委員長 咸鍾漢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세 분을 성명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衡東 전 교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浩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炳圭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普淵 이사장은 몸이 불편해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앰블런스를 타고라도 반드시 출석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불참했고 柳時建 부총장은 신병을 이유로, 洪京杓 교수협의회 총무는 골절상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薛 勳委員 李普淵 이사장은 진단서 등이 있었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없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의 신문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薛 勳**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勳委員 金衡東** 증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은 지난 9월에 중부대학의 교수임용 비리를 언론에서 양심선언한 적이 있지요?

○**證人 金衡東** 예,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재에 응했습니다.

○**薛 勳委員** 그 내용을 보면 중부대가 지난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새로 뽑은 교수 30여명한테 2,000만원 내지 1억원씩 해서 모두 20억원 정도의 현금 내지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렇다면 이런 작업들을 증인 혼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이 작업은 제가 해온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해왔던 것을 제가 중간에 맡아서 정돈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재단의 결재와 감독 하에서 제가 재단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교수들을 요구했고 저는 교무처장 신분으로 교수 자격을 확보한 사람에게……

재단에서는 일반과목인 경우에 5,000만원을 요구했고 예·체능계는 1억을 요구했는데 저는 교수자질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액수에 관계없이 일단 면접한 교수를 뽑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지금 한 30여명한테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직접 돈을 다 받았습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돈을 받은 것은 몇 명 안 되고 부총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여관에서 기거를 했었습니다.

○**薛 勳委員** 柳時建 부총장이요?  
○**證人 金衡東** 예.

그리고 처음에 이사장님께서 제가 교무처장이 되기 전에 약 7명에게서 받아 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薛 勳委員**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金衡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명에 한 5,000만원씩 잡아서 약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오늘 柳時建 부총장이 안 왔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증인이 돈을 받아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를 떼면 그것을 이사장 부부한테 주었습니까, 아니면 학교회계에 기부금 형태로 넣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93년도 그 당시 중부대학교는 상당히 자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대금 약 5억원을 내지 못해서 그 쪽에서 저희 학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밟는다고 했고 그때 소위 그것의 변제수단으로 교수들을 재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학교 사정이 6개 학과밖에 없었고 체육과 교수가 두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과 교수를 두 분 더 뽑으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과도 없는 학교에 국어과 교수가 이미 세 분 있었는데 그런 황당한 인원조직에 또 국어과 교수를 뽑으라는 지시가 왔고 그 다음에 낙농과 교수가 여섯 분 있었는데 또 한 분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자 이사장님이……

○**薛 勳委員** 증인! 제가 물은 얘기는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사장 부부한테 직접 주었지요?

○**證人 金衡東** 제가 받아서 전달한 경우는 7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사장님이 직접 받거나 柳時建 부총장이 거의 대부분 직접 받았습니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입니다.

○**證人 金衡東** 그 당시 학교 입시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입시대금으로 바로 지출된 돈도 있고 대부분 원장님과 이사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니까 증인이 돈을 받아서 일부는 학교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직접 이사장한테 주었다는 것이지요?

○**證人 金衡東** 그 당시 이사장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 갖다 드려서 원장님이 학교에 가서 이것 갖다 써라 해가지고……

○**薛 勳委員** 원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衡東** 李普淵 이사장님 부인이 영락병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薛 勳委員** 영락병원 원장으로 있는 부인한테 주었다는 것이지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러니까 이사장 부부에게 돈을 주었네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암호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3,000만원, 6년 수료는 6,000만원, 한 스텝은 1억, 오리무중은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암호를 썼지요?

○證人 金衡東 교수들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같은 때에 들어온 교수들이 누구는 3,000만원을 내고 누구는 5,000만원을 내고 누구는 1억을 냈을 때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왜 저한테는 더 받았습니까 하고 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상호 비밀보안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돈의 성격이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뇌물로 보는데 증인의 자술서를 보면 이것이 무슨 빌린 돈처럼 되어 있고 또 이사장한테 차용증을 받는 형식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부대학교 교수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었는데 한 달 급료가 약 9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자 월급을 3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은 5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안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학교에 와가지고 사실은 그 학교를 그만 두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적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자 하고 참고 기다렸었는데 학교 경영이 어렵자 재단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재단이 계속 바뀌면서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사정은 점점 나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교수님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제가 그 전에 교무처장할 때 교수를 12명을 뽑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월급을 못받자 교수들한테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중부대학교에 갔더니 월급 한 푼 못 받더라.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월급을 주어야 됩니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교수들한테 발전기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초창기에 발전기금을 받아놓으면 지금 고생한 교수들

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있는 교수들에게 돈을 꾸어서 학교가 곧 정상화되면 그 사람들에게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갚을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사장님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갚는 조건의 차용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薛 勳委員 그러면 전부 다 차용증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衡東 이사장님한테 제가 차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퇴직하면서 차용증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자 제가 공갈범으로 몰려서 84일 동안 감옥에 가 있었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자 저를 또 고발해서 신문기자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薛 勳委員 그것 참 억울한 옥살이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 돈 처리가 이틀이면 틀림없이 차용증을 받았으니까 돈을 주어야 뇌물이 아닐 텐데 이 돈이 일방적으로 이사장한테 가가지고 안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저는 그 당시 교수님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학교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수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학교에 돈을 꾸어주었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안정이 되면 받으면 어떠냐, 저는 학교의 경제적인 안정선을 5,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들에게 제시했던 것이 이자는 줄 형편이 못되지만 나중에 4, 5년 후에 학생 숫자가 5,000명이 넘으면 그때 변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교수들에게 차용증 변제에 대한 쪽지를 돌리고 거기에 대한 모임을 갖자고 하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공갈로 고발당해 가지고 갖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그때 학생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證人 金衡東 지금 현재 법정 학생 숫자는 상당히 있는데 우리 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편입을 가고 중간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나올 때 아직 5,000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난 뒤로 이사장한테 돈을 주었던 교수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구속되자 다른 사람들도 구속되었는데 그러면서 교수들의 발언이 많이 억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다 그 말이지요.

○證人 金衡東 그리고 오늘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교수협의회에서 오셨는데 중부대학교에 교수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60여명의 교수협의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여명 내외의 교수협의회가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20여명의 교수협의회 쪽에서 오셨고 60여명, 대다수의 교수들은 아마 교수협의회라는 소리도 못하고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咸鍾漢 위원장, 朴承國 간사와 사회교대)

○薛 勳委員 지금 나오신 교수협의회 李仁浩 회장은 진정한 의미의 교수협의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임자입니까?

○證人 金衡東 교수협의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름이 하나는 교수협의회고 하나는 다름 텐데 어쨌든 현 총장님이 두 단체를, 제가 교무처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현 교수협의회는 전 총장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던 단체고 張炳圭 총장님 오셔가지고는 두 단체 다 인정을 한다고 해서 있는 어쨌든 소수의 인원이 들어 있는 교수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承國 다음은 金許男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金衡東 전 교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차용한 돈을 누구한테 얼마 들어왔다 하는 것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로 해서 모릅니까?

○證人 金衡東 그 당시 돈은 받는 즉시 재단에 갔기 때문에 장부 처리를 했으면 재단에서 했을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글썽 생각에 장부처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것은 교수들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와……

○金許男委員 있었습니까? 나올 적에 재단에다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證人 金衡東 재단에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나서 바로 제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金許男委員 그러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변제되었는지도 모르지요?

○證人 金衡東 지금 현재로서는 변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왜 그러냐 하면 학교라면 차용했다면 차용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차용하고 장부에 올려놓고 또 정상적으로 돈 쓰고 그 다음에 학교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됐다 됐다 그런 식이네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돈이든 학교 돈이든 일단 돈이 들어오면, 돈 부족하면 은행에서도 하고 사채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장부에 올려놓고 그런 이후에 돈이 생기면 변제하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어림내 장난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교무처장도 잘못된 것이 있네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학교는 잘못되면 돈은 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부에서 할 수 있고 사립학교 무슨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빌려서 쓰고 장부에 정리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지출하고 이려고 난 후에 돈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변제하면 그것은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은 역시 교무처장이 대단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단에도 잘못이 있고 두 곳이 다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부대학에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약 14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퇴직사유를 한 30초간 간단히 설명하세요.

○證人 金衡東 교육부 감사장에서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는 여교수를 제재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때 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법정 처벌을 받고 나서 1년8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보내주고 나서 복직하자 그것을 이유로 당연퇴직발령을 받았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금품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았습니까? 아까 어떤 여관에서 누구하고 같이 앉아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안 내면 목을 친다 어쩐다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좀 부

탁한다고 그랬는가 말입니다.

○證人 金衡東 교수들을 보통 면접을 할 때 한 10여명을 해서 면접에서 확정된 분들에게 학교가 어려운데 돈을 꾸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한 4, 5년 후에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저는 돈을 받았을 때 차용증을……

○金許男委員 그러니까 억압으로 안 하고 양해를 구해서 차용했네요.

○證人 金衡東 교수들에게 차용증을 거의 주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금품을 받을 때 누구하고 같이 받았습니까?

○證人 金衡東 여기 안 나오신 柳時建 부총장하고 거의 같이……

○金許男委員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했다?

○證人 金衡東 지금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재단의 지시를 받아서 재단이 얼마 받으라고 할 때 그 얼마 이하를 줄여준 역할을 한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어쨌든 협조한 것은 협조한 것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그분들이 재단에 돈을 갖다주었기 때문에……

○金許男委員 하여튼요. 여기는 설명하는 곳이 아니니까 답변만 하세요. 하여튼 재단에 협조는 되었네요.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으니까 협조는 된 것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저는……

○金許男委員 좋아요. 말씀 안해도 좋아요. 어떤 분한테서 금품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 당시 저희 학교 강사로 나오던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金許男委員 교수들한테 받았다 그 말이지요?

○證人 金衡東 교수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그럴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이렇게 협조하고 다 하다가 폭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金衡東 폭로가 아닙니다. 제가 재판을 계속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불이익을 당하자 기자가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러 왔을 때, 그 다음에 증부대학교에서 이미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타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제가 아닙니다라고 거부하지 않고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밖에 없습니다. 폭로가 아니고 조사에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金許男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張炳圭 총장님한테 묻습니다.

90년 이후에 교육부의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證人 張炳圭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97년3월1일부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그 전에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證人 張炳圭 모르고 있었습니다.

○金許男委員 총장이 되면 이런 복잡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학교에 지적을 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證人 張炳圭 이번에 감사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어떤 내용입니까?

○證人 張炳圭 그 내용은 부총장을 임용할 때 절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말하자면 특별채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하고 그것이 아마 가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신문에 공고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사람 중에 채용한 사람이 있고 또 93년에서 95년까지를 보았기 때문에 과거에 전공이 안맞는 인원을 채용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경징계한 사람이 몇 명이고 중징계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張炳圭 柳時建 부총장이 중징계이고 李箕煥 행정지원처장이 징계이고 징계는 그 두 분입니다.

○金許男委員 교수진과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으로 학생들이 다른 데로 전학하려고 한다는 데 사실입니까?

○證人 張炳圭 실험실습 때문에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러면 교수협의회장께서 학교의 현황을 30초동안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仁浩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국회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 보낼 것이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承國 다음은 李在五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張炳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교육부의 정통관료이지요?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중부대학에 들어 가기 전에도 다른 대학에 근무한 일이 있지요?

○證人 張炳圭 예,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이 들어 간 중부대학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사실 들어갈 때에도 몰랐고 들어 가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李在五委員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설명하면 오히려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중부대학에 왜 증인을 영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학교의 행정질서가 확립이 안됐기 때문에 행정질서를 좀 확립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받고 제가 들어 갔습니다.

○李在五委員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혹시 중부대학의 李普淵 이사장이라든지 재단측이 원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정부패를 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오래 근무한 발췌 증인을 영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張炳圭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중부대 재단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청와대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언론사에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로비활동을 했다는데 증인도 관계있습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어느 한 군데도 간 데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대전에 있는 모 호텔에서 재단과 학교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건의 무마에 대한 대책을 했다는데 증인은 참석 안했습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이 대학 총장이면 대학의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핵심 관계자이지만 제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李在五委員 증인이 혹시 이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나 검찰이나 교육부의 옛날 동료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張炳圭 전화한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대전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찰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張炳圭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교수분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게 소환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갔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증인이 대전지방검찰청에 간 일이 있지요?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누구 만났습니까?

○證人 張炳圭 특수부 부장검사를 만났습니다.

○李在五委員 부장검사 만나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證人 張炳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수분들을 부를 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불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분들의 소환된 하나하나를 일일이 거명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두가지만 얘기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위증하면 안됩니다.

증인은 오랫동안 교육부에 계셨고 또 다른 대학에도 계셨는데 그 동안 중부대학의 이사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중부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張炳圭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하고 구성된 재단의 재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재단에서 간섭을 하거나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이 97년3월1일부터 취임했는데 증인이 취임하고도 전공분야 교수를 공고하지도 않고 채용했다든지 지원하지 않는 학과에 채용했다든지 하는 이런 교육부 감사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

○李在五委員 지난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내용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감사내용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경고받으셨지요?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경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물론입니다.

○李在五委員 중부대학의 감사결과가 다 사실이지요.

○證人 張炳圭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중부대학교 교수일동, 중부대학교 직원일동이라는 이름으로 한겨레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개인 金衡東 증인의 날조'라고 한 이 교수일동이라고 하는 문건은 알고 있습니까?

○證人 張炳圭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그러면 뭐니까?

감사기관의 감사도 인정하고 이것이 허위라고 하는 교수들도 인정하고 그러면 증인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證人 張炳圭 교수일동이라고 한 것은 감사받기 전에 신문에 바로 났을 때에 그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재단으로부터 이사장한테 전화를 받기를……

○李在五委員 증인,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현재 증인은 교육부의 감사 내용 인정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중부대학 일부 교수들이 이 사건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證人 張炳圭 그 당시는……

○李在五委員 지금 말씀하세요.

○證人 張炳圭 그것은 지금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 총장이지요?

○證人 張炳圭 예.

○李在五委員 총장이 교육부의 감사를 인정하나요?

○證人 張炳圭 인정합니다.

○李在五委員 교육부의 감사를 인정하면 이 감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중부대학 교수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까?

○證人 張炳圭 그러나 거기에 감사에는……

○李在五委員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證人 張炳圭 아니, 허위다 아니다 그런 내용이 감사에는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감사의 지적사항 있지요. 94년, 97년 교수 신규채용 부당, 98 골프지도학과 신규 교수 특별채용 부당, 교원인사 업무 부당간여, 학교 자금 부당인출 및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것 인정 안한다는 말씀이예요?

○證人 張炳圭 거기 97년도 채용은 이미 제가 들어가기 전에 채용이 다 끝난 것이고……

○李在五委員 증인, 내가 증인이 총장하기 이전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證人 張炳圭 물론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내용 통보받았지요, 그것 인정하나요?

○證人 張炳圭 그것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교수들의 주장은 인정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그 내용에는……

○李在五委員 알았습니다.

다음 교수협의회 증인 나오세요.

증인,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중부대학의 교수협의회가 몇 개있습니까?

○證人 李仁浩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李在五委員 현재 재단측을 두둔하는 교수협의회하고 또 재단의 부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는 교수협의회하고 두 개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仁浩 두개 있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나 정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수협의회 대표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중부대학교의 부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수협의회입니까, 부정하는 교수협의회입니까?

○證人 李仁浩 그 부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으니까 저희 교수협의회에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하는데 참여했습니까?

○證人 李仁浩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李在五委員 金衡東 증인이 9월6일자 중부대학교 교수일동, 중부대학교의 직원일동이라고 해서 '李在五 교육위원회 위원님 귀하'라고 보낸 이 문건은 증인이 관련한 문건입니까?

○證人 李仁浩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것을 낸 교수협의회는 누

구예요?

○證人 李仁浩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金衡東 증인은 처음에 중부대학에 공채로 들어 갔습니까?

○證人 金衡東 공채가 없었습니다.

○李在五委員 누구 줄로 들어 갔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 당시 학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학교를 새로 설립하니까 같이 가서 일을 하자……

○李在五委員 그냥 무조건 찾아 가서 줄도 없이……

○證人 金衡東 아닙니다. 그 분이 저를 찾아 와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증인은 전공이 뭐예요?

○證人 金衡東 국어학입니다.

○李在五委員 국문학입니까, 국어학입니까?

○證人 金衡東 국어학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런데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미국 갔지요?

○證人 金衡東 그 전에 계속해서 미국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미국갈 때는 씨앗건강요법이라는 초청강연을 받아 갔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이 국어하고 관계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중간에 중부대학교 12년 근무한 후……

○李在五委員 증인이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교무처장이었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때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이라고 생각 안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가급적 막으려고 축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문건에 보면 증인이 여러 번의 상해, 공갈,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衡東 그것이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건들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증인이 보복성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衡東 보복성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증인이 주장한 언론에 보도된 중부대학의 모든 부정, 비리, 부패는 다 사실입니까?

○證人 金衡東 예,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증인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도 처벌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남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承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李在五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金衡東 증인은 93년 12월부터 1년동안 신규채용 교수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제가 일부는 직접 받아서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나요,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나요 아니면 어떤 통장에 넣었나요?

○證人 金衡東 받은 돈을 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전달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어디에서 받았는데요.

○證人 金衡東 저희 학교는 충남 금산에 있고 재단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전 쪽에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재단측에 갖다 주었고 재단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쓰라고 지시했을 때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라장이라는 여관에서 柳부총장과 함께 지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金衡東 柳부총장은 초기 7명의 교수를 뽑을 때는 없었고 그 이후 한달 후에 저희 학교 사무국장으로 와서 그 이후부터는 같이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한라장 여관에 같이 투숙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예, 한 방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그 곳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돈을 받은 장소는 학교에서도 받았고 호텔에서에서도 받았고 한라장 여관에서도 받았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申樂均委員 여관 주인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몽치돈을 입금시켰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대부분의 교수들이 부총장에게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교무처장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전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다준 것을 柳부총장이 받아가지고 아마 돈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 그 여관주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렇다면 이사장이 이렇게 받은 돈을 사용한 곳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대부분 학교운영경비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학교발전기금으로 썼을 것이다.

○證人 金衡東 예,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衡東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교수채용 당시 금품을 내지 않은 교수한테는 일정기간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런 서약서가 아니고 그 당시 중부대학교가 월급 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 교수로 교육부에 발령하면서 1년동안 월급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 분들을 교수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 각서를 받았습시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채용할 때 받은 돈은 어디로 가고 또 채용한 교수에게 줄 월급은 없다 그것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證人 金衡東 93년에 들어오신 교수와 94년에 들어오신 교수들이 처음에는 돈을 내지 않고 월급을 안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월급을 안 받으면서 돈을 내고 들어온 분 그리고 돈을 내고 월급은 받으신 분 이렇게 서너종류로 나누어집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93년과 94년 사이에 기획과장 학생주임 등 교직원들이 학교측의 봉급자금 부족을 이유로 모두 3억3,000만원의 대출보증을 했는데 이런 사실은 인정합니까?

○證人 金衡東 그것은 제가 주도해서 대출을 받았습시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봉급자금이 없다고……

○證人 金衡東 그때 3억 정도 받아가지고는 학교

경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申樂均委員 봉급 이상 우선적인 비용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 당시 93년도 중부대학교……

○申樂均委員 하여튼 그것은 증인과 상관이 없을 것이지요. 봉급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는 이사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제 회계처리에는 교육부에 임명보고만 한 채 봉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봉급을 지급하지 않은 625명에게 1억2,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회계를 부풀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625명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에 보고한 것에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는데요.

○證人 金衡東 아마 휴직된 교수들 급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공이 안 맞고 시간에 안 나오는 교수들은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한 교수에게 급료를 지불한 것처럼 되어 가지고 실제로 지불되지 않고 학교에서 보관해 가지고 쓴 돈이 아마 1억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실제 지급은 안했지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된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證人 金衡東 그 돈은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고 아마 학교 운영경비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申樂均委員 인건비 이상 우선되는 운영경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부대는 94년에 입학정원이 180명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입학정원이, 이때 이미 감사결과 중징계와 경고를 받은 그 후인데도 입학정원이 8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과 아까 돈의 불확실한 처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金衡東 증인이 아까 이런 것을 고발했는데 폭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질의 때문입니까, 본인이 밝히고 싶은 의도가 없었는데도 기자들이 질의해서 밝힌 것입니까?

○證人 金衡東 금년도에 들어서 학생, 교수, 직원이 계속해서 학교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비리를 폭로한다고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해서 더 이상 학생 교수 직원이 고발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申樂均委員** 그러면 金중인이 중부대를 퇴직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퇴직된 원인을……

○**證人 金衡東** 94년도 감사장에서 저희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교수가 있었고 그때 저는 교무처장으로서 교수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때 유죄판결이 무슨 죄목으로 났습니까?

○**證人 金衡東** 명예훼손으로 나왔습니다.

○**申樂均委員** 성희롱 등 성추행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는가요?

○**證人 金衡東** 교수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성희롱이 가능하겠습니까?

○**申樂均委員** 그래서 퇴직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증인이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공갈 협박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30억이 넘는데 어떻게 1억을 달라고 공갈을 하겠습니까?

○**申樂均委員** 다음은 張총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채용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본인이 왜 총장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 보십시오.

○**證人 張炳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이 저에게 부탁을 한 것이 행정질서가 너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행정질서를 확립시켜 달라.

○**申樂均委員** 그래서 행정질서가 확립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98년에 골프지도학과 신규교수를 채용하면서 4명의 면접대상자를 선발해 놓고 지원하지도 않은 柳時建 부총장을 부교수로 임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증인이 선택한 것입니까?

○**證人 張炳圭** 제가 이미 가 있을 때에 柳時建씨는 부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어느날 결재문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柳時建 부총장에 대해서 부교수로 임용 제청하는 서류가 올라왔어요. 저도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 교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이 골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관계는 어떻게 보면 특채도 가능하겠단.

○**申樂均委員** 이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학위를 골프로 받았습니까?

○**證人 張炳圭** 골프와 관련된 논문을 써 가지고

골프지도학과……

○**申樂均委員** 어느 과정에서 그런 논문을 썼습니까?

○**證人 張炳圭** 석사학위 과정에서 썼습니다.

○**申樂均委員** 경영학에서 골프로 학위논문을 썼습니까?

○**證人 張炳圭** 골프마케팅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申樂均委員** 4명에 대한 면접은 왜 했습니까?

임용된 그러한 원인과 이런 행정과 전혀 안 맞아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證人 張炳圭**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98년도에 교수채용할 때 저는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교수채용하는데 총장은 전혀 관계를 안하는 것이 그것이 행정의 정상화입니까?

○**證人 張炳圭** 면접은 제가 하지 않고 보직교수로 하여금 면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직교수로 하여금 면접을 하도록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시켰다면 내용을 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예.

○**申樂均委員**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용을 몰라 책임이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證人 張炳圭** 채용할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承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지금 교수채용 비리는 수많은 교수 지방생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임이 되어보려고 시간 강사로 보따리를 지고 정말 십수년 다니다가 결국 좌절을 하거나 이런 유혹에 빠져서 자기 양심을 팔고 겨우 일자리 하나 얻어 가지고 교수로서의 지성을 버린 그런 상태에서 교직을 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이것은 증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부대학문제도 우리가 성명을 해야 되지만 시중에는 일부 대학에서 이런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사실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되고 저희들 질의 내용이 단순하고 거의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의 분들이 지적한 것보다는 몇 가지 유형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께서는 97년에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99년까지 104명의 교수를 신규채용하면서 31명에 대해 부당 채용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지요?

○證人 張炳圭 예.

○安相洙委員 그 지적 내용에 보면 94년에 교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12명을 특별채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證人 張炳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문공고를 할 때 필요한 전공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신문공고가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전공과 안 맞는 그런 분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의 위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보통 교수지망생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교수를 미리 내정해놓고 돈을 받고 내정을 하든 정실로 내정을 하든 내정해놓고 이런 형식을 거친다 이런 의심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신입 교수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내정을 받고 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나요?

○證人 張炳圭 우리 학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규정을 어기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그것은 채용하는 분들이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그 당시 의사결정은 이사장이 하셨나요?

○證人 張炳圭 그 당시에 누가 결정을 했는지 솔직히 제가 없었기 때문에……

○安相洙委員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나요?

○證人 張炳圭 저는 재단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재단의 문제는 지금도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安相洙委員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이 돌아갈 때는 물어보지 않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학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부의 감사 혹은 사직당국에서 조사하고 이럴 때 상의하지 않

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朴承國간사, 威鍾漢위원장과 사회교대)

○證人 張炳圭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재단과 일체 상의한 일도 없고 재단도 저한테 상의를 해온 일도 없고 다만 지금 말씀대로 신문에 난 것이 저희 보직교수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정도로 제가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 정도이지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재단과 의논해 가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그런 형편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제가 아까 이번에 사립학교 분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가하고 또 규정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제도나 법도 고치고 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이번에 중부대학교의 경우도 중부대학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것은 검찰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교수채용비리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총장께서도 교육계에 오랫동안 계셨던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대담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이 솔직해 보이지 않는데 자신 있습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되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아까 존경하는 申樂均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이지만 총장님과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아까 골프지도교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은 전에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총장님도 과거에 총장님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證人 張炳圭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부총장을 부교수로 제청한 것은 그 분이 골프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특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판단을 했고 들제, 그 분이 재단과 관련되어 가지고 부총장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저희가 도의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安相洙委員 우선 첫째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애

가지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도 하지 않고 한 것이지요?

○**證人 張炳圭** 특채형태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그런데 뭐하려고 공채로 교수를 모집하고 또 4명까지 최종심사에 올려놓았습니까?

○**證人 張炳圭** 그것은 필요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뽑으려고 했는데……

○**安相洙委員** 이것이 바로 교수지망생들이 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교수지망생들을 골탕을 먹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자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張炳圭** 그 문제하고 부총장 이 문제는 사실은 별개문제로 생각을 저는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예정을 하고 모집공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安相洙委員** 다음 金衡東 증인은 1년 동안 30여 명에게 20억정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衡東** 제가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에 제가 교무처장을 한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14년 동안, 84년서부터 근무 하셨지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金衡東 증인이 추측컨대 지금 이 학교에서는 초창기서부터 교수들을 그렇게 금품을 수수하면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까?

○**證人 金衡東** 금품수수는 현 재단이 오고서 시작되었습니다.

○**安相洙委員** 현재단이 언제부터지요?

○**證人 金衡東** 91년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한 9년정도…… 그 이후에 채용된 교수가 몇 명쯤으로 기억하시나요?

○**證人 金衡東** 어쨌든 기존교수가 18명밖에 없었고 현 재단이 들어온 다음에 100여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100여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金중인이 보기에 그런 의혹이 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證人 金衡東** 제가 보기에 사실 제가 그 말을 해서 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부총장이 저한테 부교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부했었

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하고 교무담당 직원하고 불이익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돈을 받고 쓰자고 하거나 무자격자를 쓰자고 할 때 저는 전부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과 4범인가 5범인가 된 것 같습니다.

○**安相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範珍**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金衡東**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들한테 돈을 받으면 전부다 차용증을 주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衡東** 차용증을 이사장님한테 받았습니까.

○**朴範珍委員** 교수들한테는 안 주었습니까?

○**證人 金衡東** 교수들한테는 준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사장님한테 제가 차용증을 해드렸으니까 받아 가지고 교수들한테 나누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별도로 기입만 해놓았었고 차용증을 발급한 교수가 한 12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교수들한테 차용증을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그 차용증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차용증 명의를 저희가 이사장님한테 받은 것은 이사장님이 저한테 주는 형태의 차용증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교수들한테 주는 것은 일부는 제 명의로 된 것 나머지는 이사장 부인 혹은 이사장님 명의 밑에 제 이름이 병기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이사장 명의도 있고 이사장 부인 명의도 있고 우리 金衡東 증인 명의로도 있고 교수들한테 간 차용증에는 명의를 여러 사람 것으로 되어 있군요.

○**證人 金衡東**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리고 이사장한테는 우리 金衡東 증인이 전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습니까?

○**證人 金衡東** 돈을 갖다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교무처장을 물러나면서 제가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들어왔던 교수들에 대해 총괄 받은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돈을 갚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교수들만 고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교수들은 돈도 안내고 들어올 것이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초창기 교수는 월급도 못 받고 돈 내고 들어와 가지고 푸대접 받으면 안되니까 그 분들이 퇴직할 때나 아니면 중간에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관철시킬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갚지 않으려는 재단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교수를 채용할 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衡東** 지금 제가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교수가 안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참회하는 의미에서 중부대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학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한테 당하는 불명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제가……

○**李在五委員** 증인, 교수를 돈 받고 채용한 것이 정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묻는데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朴範珍委員** 그 다음에 張炳圭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張炳圭 증인이 이번에 교육부 특별감사 받고 경고 받았지요?

○**證人 張炳圭** 예.

○**朴範珍委員** 어떤 부분 때문에 경고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張증인은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거의 무슨 책임이 없는 것처럼 죽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교육부 감사 받고 경고를 받았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까?

○**證人 張炳圭** 바로 지금 安相洙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부총장에 대해서 특별채용 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朴範珍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證人 張炳圭** 예, 잘못되었다고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朴範珍委員**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난 사항 중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수봉급을 8년동안 1억8,000만원 부당인출을 해서 업무추진비로 유용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張총장 취임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아마 그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제가 취임된 이후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적되었습니다.

○**朴範珍委員** 총장이 이런 것을 감독을 못하나요, 어떻습니까? 일종에 회계부정인데요.

○**證人 張炳圭**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휴직이 사실 저는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제가 작년에 휴직된 것을 알아 가지고 안된다 이것을 정리를 하라 아파서 휴직이 되면 병가를 해서 병가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알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저는 휴직이니까 휴직자의 월급이 나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朴範珍委員** 중부대학교사건은 교수를 채용하면서 비리가 있고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교원봉급을 준 것처럼 해가지고 학교교비를 빼서 유용을 하고 전형적인 사학비리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총장 취임한 이후에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이 있었어요?

○**證人 張炳圭** 예, 법정전입금은 받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얼마나 받았습니까?

○**證人 張炳圭** 지난 결산 때도 한 5억정도 받았 습니다.

○**朴範珍委員** 교수 임용비리에 대해서 총장이 전혀 몰랐습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진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말로 모른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진짜 관여를 안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金衡東 증인이 성희롱 관계로 해서 명예훼손죄를 받았다는 것도 제가 뒤늦게 알고 그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57조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퇴직이다 이렇게 해서 퇴직을 시켰는데 물론 논리로 따지면 그 전에 왜 몰랐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範珍委員** 중부대학교의 입학정원이 연도별로 증가한 현황을 보면 93년에 160명이었던 것이 2년 후인 95년에는 870명으로 몇 배가 늘고 96년 그 이듬해는 1,180명, 97년에는 1,380명, 98년에는

1,680명, 99년 금년에는 1,775명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이것 교육부 상대로 해서 로비한 것 아닙니까? 총장이 교육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총장시킨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제가 와서 증원이 된 것은 98년에 300명하고 작년에 95명 증원된 것 그것이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된 것이고 그 전 것은 사실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朴範珍委員 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장 취임 후에 입학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사실 증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증원해 달라고 얘기한 일도 없고 다만 학교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약 제가 있었다면 금년 99년 같은데 겨우 95명 늘렸겠습니까?

○朴範珍委員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 위원입니다.

전 교무처장 金衡東 증인님께 물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또 신문보도에서 93년도부터 95년까지 신규채용교수 30여명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

證人 金衡東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20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金衡東 아마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차용증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 명의, 부인 명의, 또 이사장과 金衡東 명의 세 가지 아닙니까?

○證人 金衡東 예.

○李壽仁委員 오늘 李普淵 이사장이 안 나왔지만 이 증인의 공판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인데 金衡東 증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교수채용시에 돈을 받은 책임자로서 이것만 해도 아주 파렴치한 것인데 이렇게 金衡東 증인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정말 파천황의 파렴치, 파천황의 몰염치, 면목이 없다는

뜻에서 몰면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證人 金衡東 제가 거기에 대해서……

○李壽仁委員 그래요, 안 그래요?

○證人 金衡東 그렇게 봅니다.

○李壽仁委員 지시 없이 金衡東 증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저는 교무처장입니다.

○李壽仁委員 이것이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인데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 李普淵의 사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수증인데 金衡東 중부대학 교무처장 것도 있고 영락병원의 원장인 류시욱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李普淵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육계에 있어서 안 될 아주 파렴치한 자가 교육계의 요소에 독버섯처럼 박혀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런 뻔뻔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별로 돈 낸 교수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옆에는 모금액을 암호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각종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돈 낸 것은 전부 다 암호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안에 신경을 써서 마치 범죄조직이나 할 짓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證人 金衡東 처음에는 제가……

○李壽仁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證人 金衡東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李壽仁委員 보안에 신경쓴 나머지 액수도 암호로 써놨어요. 그런 것은 범죄조직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범죄단 또는 사기단 따위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교수채용을 하는 금품수수 문제 뿐만 아니라 무보수 채용, 또 허위 임용보고 이런 등등은 이미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보면 중부대학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범죄조직이지 대학의 이사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139명의 교수 중 61명이 임용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는데 중부대학 교원인사규정 9조에는 교원임용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張炳圭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만 하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언부연하지 말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證人 張炳圭 죄송합니다. 제가……

○李壽仁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證人 張炳圭 제가 인사규정 전체를……

○李壽仁委員 인사규정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세요.

○證人 張炳圭 예, 모르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張炳圭 증인은 여태까지의 증인 중에 가장 비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장 허위증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91년부터 93년 동안에 23명의 교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 반에 육박하는 11명이 봉급도 수업도 없는 서류상 교수입니다. 그것도 몰랐지요?

○證人 張炳圭 그 당시 저는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李壽仁委員 글썄, 모르면 몰랐다고만 하세요.

그 뒤는 알았습니까?

○證人 張炳圭 그 뒤에도 몰랐습니다.

○李壽仁委員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것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證人 張炳圭 이번에 사건 터지면서야 들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리고 94년에는 학과도 설치되지 않은 교수 12명을 비공개로, 그것도 특별채용했습니다. 94년 교육부 감사 때 이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제 말씀 듣고는 아십니까?

○證人 張炳圭 예.

○李壽仁委員 99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모두 30명의 교수채용이 이러한 편법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가 왜 증인한테 이것을 묻는가 하면 결국 이런 것이 10년 내내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99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햇수를 세면 정확히는 한 9년쯤 되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쪽 그렇게 저질러졌어요. 그것을 지금은 아십니까? 내 말 때문에 안다고 그러든지, 모른다고 그러든지, 교육부 감사 때문에 알았다든지 이제는 아십니까?

○證人 張炳圭 사실 97년까지는……

○李壽仁委員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 증인으로서 아주…… 내가 당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요. 나는 아주 경멸합니다. 총장 자격도 없고 교육부차관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가 대체로 썩은 자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지금 증인처럼 여기 와서까지 그렇게 썩은 작태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봐요.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약했으면 눈물이 핑도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참고 참았어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핑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총장께 다시 하나 물겠습니다.

아까 朴範珍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부 감사를 받고도 비약적으로 증원이 되거든요. 180명으로부터 890명으로 비약적으로 뚝니다. 95년에 710명이 한꺼번에 증원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와 유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바로 전에 감사를 해 놓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 중에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證人 張炳圭 제가……

○李壽仁委員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證人 張炳圭 꼭 유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李壽仁委員 됐어요.

金衡東 증인! 이것은 유착이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衡東 그 당시 상황은 유착은 아니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면 金衡東 증인이 감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축소조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칭찬 받고 표창이나 감사장 이런 것을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까마는 상당히 공적을 치하

받았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때 누구하고 교섭을 했어요?

○證人 金衡東 교육부장관의 의지였습니다. 그 당시 金淑喜 장관님이 신입생 정원이 1,000명은 되어야 학교가 정상유지된다, 그 철학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 당시 장관, 차관, 담당국장이 누구인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衡東 아닙니다. 충남·북 총장회의에 제가 대리 참석해서 그때 저희 학교가 기형아 아니면 미숙아니까……

○李壽仁委員 차관이 누구예요?

○證人 金衡東 그때 차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金淑喜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李壽仁委員 알겠어요.

다시 장관께 물겠지만 이것은 내가 여기서 분명히 당부를 드리는데 똑똑히 알아주세요. 교육계의 마피아는 사학마피아와 관료마피아가 있습니다. 이것 둘 다 합해서 교육마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가만히 있었지만 도저히 목과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협조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日柱입니다.

오늘 중부대학의 증인들도 오시고 배석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설립을 해서 교수나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데를 학교인가해 주었다는 사실은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張炳圭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증인은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위층에 있었습니다. 차관까지 지낸 본인인데 교육의 근본은 첫째가 설립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것을 지탱해 낼 만한 이념과 인적 구성의 문제인데 아마 교육이념은 그럴 듯하게 정의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다 나열했지요.

그런데 인적 구성에 있어서 교수채용에 돈을 받고 채용을 했다…… 물론 좋은 분도 그 중에 영입되었겠지요. 그러나 돈을 내고 교수가 되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금의 뒷받침입니다. 이념과 인적 구성과 자금의 뒷받침입니다. 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금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교법인을 인가한 교육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張炳圭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분 같으면 묻지 않겠는데 증인은 교육부차관을 지냈던 분이기에 때문에 묻습니다.

○證人 張炳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金日柱委員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證人 張炳圭 제가 연혁을 보니까 설립을 할 때는 목사님께서 신학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종교단체에서 신학대학을 만드는 형태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설립인가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金日柱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적 구성을 해놓고 자금의 여력도 없어서 교수들에게 돈 받아서 학교운명을 했다…… 아까 金衡東 증인이 얘기한 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교수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직접 지급한 일도 있고 나머지는 들고 와서 이사장에게 바쳤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학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나라입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서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중에 세계에서 이런 대학에 인가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張炳圭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가서 2년이 넘었지요?

○證人 張炳圭 예.

○金日柱委員 그런데 이 학교 현재의 경영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張炳圭 물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證人 張炳圭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證人 張炳圭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아니, 재단이라는 것이 학교에 출연할 수 있어야지요. 1년에 얼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재단에 있어요?

○證人 張炳圭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김형동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다.

증인은 직접 돈 받았어요. 그렇지요?

○證人 金衡東 일부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증인도 대학교수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교수가 되겠다는 교수 지망생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았어요?

○證人 金衡東 그래서 축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金日柱委員 글썽 가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證人 金衡東 가책 받았습시다.

○金日柱委員 교무처장으로서 나는 이 일은 못하겠다고 이사장께 거절해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거절 많이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도 증인 보고 계속 하라고 했습니까?

○證人 金衡東 그래서 1년만에 교수생활을 그만 두었습니다.

○金日柱委員 1년 만이고 2년 만이고 증인의 손으로 교수들로부터 받은 액수가 30억이지요?

○證人 金衡東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金日柱委員 직접 받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證人 金衡東 직접 받은 것이 약 3, 4억 됩니다.

○金日柱委員 그래 가지고 일부는 건축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일도 있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衡東 이사장님 앞에서 지불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보기에 대학교수이면 덕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才德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학에서는 글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어떤 인격자를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분이 여관에 앉아서 교수 임용을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사장한테 칭찬받았을 것 아니에요.

○證人 金衡東 그때도 이사장님의 지시를 안 따랐기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적게 받았다고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어쨌든 부정행위 한 것이잖아요.

○證人 金衡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적은 액수건 많은 액수건 부정행위 한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국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증인 같은 사람 여기에다 얹혀놓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까 당당하게 앉았는데 조금도 가책하는 표정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남자인데 어찌고 하는데 나는 머리 길다고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학교수이기 이전에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덕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이인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몇 년 계셨어요?

○證人 李仁浩 저는 초창기부터 근무했었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현 재단이 새로 들어온 재단이지요?

○證人 李仁浩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이 재단이 학교 인수받으면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仁浩 행정에 대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金日柱委員 혹시 장병규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張炳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김형동 증인 알고 계세요?

○證人 金衡東 56억 정도 처음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日柱委員 현금으로……

○證人 金衡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56억 정도를 학교에 내고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金日柱委員 하여튼 이인호 증인, 지금 현 재단이 학교 경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證人 李仁浩 저는 재정 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요.

○金日柱委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교수입니까?

○證人 李仁浩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仁浩 연봉 한 4,200만원 됩니다.

○金日柱委員 그것은 현재로서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까?

○證人 李仁浩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지금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仁浩 학생 수는 지금 3,900명 정도 됩니다.

○金日柱委員 교수는 얼마나 됩니까?

○證人 李仁浩 139명입니다.

○金日柱委員 학교가 유지되려면 학생 수가 5,000에서 6,000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證人 李仁浩 예.

○金日柱委員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중부대학을 꼭 증인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풀어놓고 보니까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承國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김형동 교무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기부금을 거두어주고 차용증을 써주었지요?

○證人 金衡東 예.

○朴承國委員 그러면 지금 김형동 교수가 써준 차용증은 몇 장이나 됩니까?

○證人 金衡東 교수들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약 10여장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써준 것만 10여장…… 사법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입니다마는 열 장을 써주었다는 것은 열 명에게 돈을 받았다는 뜻이 되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증인이 모금한 금액이 조금 전에 3, 4억 정도라고 했는데 열 장을 써주었으니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따라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金衡東 예. 약 한 5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4, 5억을 증인이 이사장이나 부총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됩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전부 다 주었다는 말이지요?

○證人 金衡東 그렇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차용증을 쓸 때 글씨를 교수께서 썼나요?

○證人 金衡東 차용증 글씨는 녀 장 중에 두 장이 이보연 이사장 완전 친필이고 그 다음에 두 장은 액수는 제가 적고 밑에 사인은 이사장 친필입

니다.

○朴承國委員 열 장이라고 했는데 왜……

○證人 金衡東 그것은 제가 교수들한테 발급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차용증은 이사장한테 제가 받은 차용증입니다.

○朴承國委員 아니, 교수들한테 발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 중에서는 쓰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證人 金衡東 하나도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이사장 부인이 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병원입니까?

○證人 金衡東 중부경찰서 바로 위에 영락병원이라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서울이네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들어온 교수 중에 사법처리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證人 金衡東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朴承國委員 이것은 주고 들어온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교수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장병규 총장께 묻겠습니다.

중부대학 건학이념이 무엇입니까?

○證人 張炳圭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성실하고 창조적인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계통의 대학입니까?

○證人 張炳圭 출발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朴承國委員 이보연 이사장은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證人 張炳圭 개인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朴承國委員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證人 張炳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朴承國委員 류시건은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證人 張炳圭 그분은 아마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골프사업을 하신 분이냐? 그 다음에 이보연씨가 재단 출연금을 얼마를 냈는가 모른다고 하셨지요?

○證人 張炳圭 예.

○朴承國委員 한 56억 된다고 김형동 교수는 들

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장병규 총장은 그 학교에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證人 張炳圭 친구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중부대학교에 가서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평소에 류시건이나 이보연 이사장과는 잘 몰랐던 사이입니까?

○證人 張炳圭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교육부에 있을 때 그분들은 왔다갔다 한 일이 없습니까?

○證人 張炳圭 전혀 없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취임 전에 중부대학에 국고 지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證人 張炳圭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취임 후의 국고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證人 張炳圭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한 5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통상 사립학교가 교육부에 있던 관료를 초빙하거나 모실 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관계를 좋게 해서 소위 학교를 확장하는데, 교수 수라든가 학생 수를 증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고 지원을 받는데 수월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대략 교육부 관료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중부대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병규 총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학교에 가서 공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쪽 동료위원들이 신문하는 것을 듣는 가운데 저 분이 왜 이 대학에 총장으로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나 하면 총장이 내가 가기 전의 일은 전혀 모르겠다 또 내가 가서도 나 모르게 하는 일은 전부 모르겠다 하는 소위 모른쇠 작전인데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죄입니다. 적어도 교육부에서 고급관리를 지내신 분이 중부대학에 갈 때 재정사항은 어떤지 그 내용은 어떤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취임 후에도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 국감 자리에 나올 정도 되면 빠삭하게 알고 와서 뭐라고 신문을 하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총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

다.

전에 것은 모르겠다, 그러면 차관이 계시다 후임 차관이 와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전의 총장이 하시던 일 다 들여다 보고 다 규명을 해놓아야 되고 특히 국감 자리에 올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본인의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감정은 어떻습니까?

○證人 張炳圭 지나간 일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우선 그 역사와 내용을 쪽 훑어 보시고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총장이 판단해야 할 큰 대목입니다. 열심히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혹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신문하신 중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16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盧武鉉 위원 신문하시겠습니까?

○盧武鉉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상으로 중부대학교 관련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관련 증인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張炳圭 증인, 골프학과 교수채용할 때 열한명이 원서를 냈고 심사해서 네명이 올라갔는데 그때 柳時建씨는 원서도 안냈지요?

○證人 張炳圭 안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네명속에도 포함 안됐지요?

○證人 張炳圭 예, 안됐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열한명 원서낸 사람하고 네명 추천한 사람은 완전 틀리리네요? 네명 추천할 때는 그 네명중에 마지막으로 한명을 뽑으라고 올라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네명도 아웃시키고 열한명 원서낸 것은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고…… 柳時建씨가 골프 잘 칩니까?

○證人 張炳圭 잘 ……

○李在五委員 중부대학이 골프대학입니까?

○證人 張炳圭 골프지도학과가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권투지도학과있는 데는 권투선수값다가 부총장시키고 그래야 되겠네요?

○證人 張炳圭 부총장은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李在五委員 그리고 골프지도학과 있다고 골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부교수시킵니까?

○證人 張炳圭 ……

○李在五委員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고받은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채용 자체가 잘못돼서 경고를 받았습시다.

○李在五委員 그것 총장이 채용한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결론이 그렇습시다.

○李在五委員 부교수도 총장이 시킨 것 아닙니까?

○證人 張炳圭 예, 그렇습시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잘못했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시다.

○委員長 咸鍾漢 중부대학교가 과거에 신학교 시절에는 감중학교였습니까?

○證人 張炳圭 예, 그렇습시다.

○委員長 咸鍾漢 그러니까 요근래에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가 무척 많이 생긴 것이 저희들이 전에 감중학교를 대학교로 바꾸어 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전부 감중학교를 대학으로 바꾸어 가지고 대학숫자도 엄청늘고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한려대학교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 하겠습시다.

다음은 서호학원 한려대학교에 대한 증인감사를 시작하겠습시다.

증인 세명을 성명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시다.

金炳炫 전 교수협의회 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兌鎬 교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福英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河 설립자겸 전 이사장은 신병을 이유로서 불참했고 徐福英 총장은 李洪河 증인의 부인이 되

습시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입니다.

먼저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총장 徐福英씨에게 묻습시다.

증인은 97년6월 교육부에 의한 재정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 사항을 미이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福英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을 지금 100% 다 이행을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두 번째로 현재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證人 徐福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가 지금 현재 5개의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25년의 과정속에서 교수임용이나 금품수수나 어떤 향응도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학교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시다.

○金許男委員 폐쇄계고 조치를 철회한다면 옛날과 같이 학생모집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證人 徐福英 만약 폐쇄계고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금까지 교수님과 학생들이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학교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許男委員 다음 金炳炫 전 교수협의회장께 묻습시다.

교수협의회가 임시 이사 파견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金炳炫 아시다시피 방송매체나 언론매체에서 수없이 우리 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했습시다.

그리고 현재 폐쇄계고조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현 재단이 학교를 살릴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학교를 저희들은 살려야 되겠다고 그렇다면 새로운 이사진이 필요한데 공정한 이사진으로 관선이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金許男委員 교수협의회가 설립자와 총장, 교무처장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예, 맞습시다.

○金許男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金炳炫 아직 처리중인 것도 있습니다.

○金許男委員 교무처장 金兌鎬 증인, 폐쇄계고조

치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金兌鎭 그것은 교수협의회장의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작년 7월31일에 폐쇄계고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좌절도 느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재단, 학생 그리고 교수 일동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폐쇄계고를 철회할 만반의 준비를 다 이루었습니다.

○金許男委員 증인은 폐쇄계고가 철회된다면 옛날같이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되리라고 봅니까, 힘이 좀 들 것이라고 봅니까?

○證人 金兌鎭 저희는 폐쇄계고가 철회된다면 옛날과 같이 다시 학교를 제2의 대학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학교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 학생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민들 모두의 염원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徐福英 총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폐쇄계고까지 받았다면 교육부에서 그 학교만 미워서 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 않고 고집하고 제멋대로 했으니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어떻겠느냐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의문시됩니다. 이후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나 만일에 계고가 철회된다면 다른 대학에 신경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證人 徐福英 학교 폐쇄계고조치를 받은 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든 만반의 준비는 지역민과 교수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부 다 철회하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렇게 철회가 되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갈등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동참을 하게 된다면 전부 다 책임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모든 기자재나 시설면이나 환경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경고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 교수협의회 회장 金炳炫씨에게 묻습니다.

만일에 전 교수협의회 회장의 의견대로 안 되고

철회되었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할 적에는 총장의 의견에 맞추어서 협조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金炳炫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쇄를 원한 것이 아니라 철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사진이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이사진한테 계속 맡겨 놓아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金許男委員 두 분이 싸우면 폐쇄되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철회해 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싸우면 폐쇄해 달라는 말과 똑같아요. 서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두 분이 싸우면 할 수 없지요.

나도 오늘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폐쇄해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철회해 주면 또 싸울 것 아니에요? 싸우는 학교는 될 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徐福英 총장께 묻겠습니다.

李洪河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證人 徐福英 부부관계입니다.

○安相洙委員 李洪河씨가 설립자이신가요?

○證人 徐福英 예.

○安相洙委員 증인과 남편 李洪河씨는 91년부터 97년 사이에 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남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한려대와 광양대를 세우고 한려대와 광양대의 교비를 빼돌려 병원을 인수하는 등 횡령, 사문서 변조 및 사립학교법 위반, 건축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證人 徐福英 예, 받았습니다.

○安相洙委員 언제 어떤 형을 받았나요?

○證人 徐福英 제가 날짜는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安相洙委員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사면되었지요?

○證人 徐福英 3개월 후에 사면되었습니다.

○安相洙委員 형을 받은 이후 3개월만에 사면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의 그때의 상황으로는 회계 미숙으로 법률상 횡령은 있었지만 실제 개인의 착복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安相洙委員** 그것이 여권의 실세, 더군다나 법률에 관계하는 분이 도와주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證人 徐福英**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증인이나 증인의 남편인 李洪河씨는 대학교 4개, 고등학교 3개를 소유한 교육사업가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학교를 이용해서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한려대는 교수정원이 307명이었지만 폐쇄계고 직전 교원은 81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39명에 불과합니다. 교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폐쇄계고를 받은 이후에 폐쇄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교사를 지었지만 이것도 결만 멀쩡할 뿐 뒷편은 정리도 안 된 공사중인 상태입니다.

실험실습시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95년 개교 이후 수업이나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徐福英**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에 해당되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확보도 했을 뿐만 아니라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대학 못지 않게 그 환경구성도 충분히 잘 해놓았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런데 교수들이 307명에서 39명으로 내려갔어요. 폐쇄계고를 받을 정도로까지 이르렀고요.

○**證人 徐福英** 폐쇄계고를 저희들이 받았던 것은 설립 당시의 조건부 이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폐쇄계고를 받아서 그것을 착실히 저희들이 100% 이상의 상황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철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安相洙委員**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를 줄테니까

두 분이 학교를 건학이념으로 건실화 하기 이전에 교비를 받아서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증거는 많습니까.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려대의 경우에 97년에 대학의 교비회계 총지출 약 34억 중에서 약 48%인 16억, 98년에는 30억 9,000중에서 65%인 약 23억 그 다음에 기성회비에서는 총 지출 15억의 약 60%인 9억, 98년도 총지출 17억2,000만원 중에서 약 60%인 10억5,000이 고정자산 매입 즉 땅을 사는데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과연 이사장이 학교의 건학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등록금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들이 무슨 교육 사업가입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횡령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것이 각 학교별로의 전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령으로 기소가 되었었던 것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설립하기 전 30년 전의 가정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다른 내용을 또 하나 질의 하겠어요.

편법이라든지 탈법을 많이 썼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학교 4곳을 세우면서 교육부에 제출한 현금출연증명서의 잔액증명서가 모두 위조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서남대 21억8,000, 광주예술대 44억, 한려대학 452억, 광양대학 30억, 증인과 남편께서는 4개 대학을 세우면서 실제 재산을 거의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돈 몇 푼 들여 가지고 학교를 4개나 세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검찰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證人 徐福英**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담당자가 고의성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추후 보완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처분을 저희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서 학교폐쇄계고까지 행정처벌을 받았습시다마는 그 부분은 전부 확인되었습니다.

○**安相洙委員** 徐福英 증인, 우리 나라 사법부를 믿으세요?

○**證人 徐福英** 당연히 믿어야지요.

○**安相洙委員** 그러면 사법부에서 지금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두 부부가 또 그 아드님까지도 부동산을 좋아하는 그런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일대에 아드님 이현성 이름으로 땅이 있지요?

○**證人 徐福英** 예,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얼마쯤이나 됩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전답이 약 5,000평 임야가 약 1,500평 합해서 6,500여평입니다. 인근에는 이현성의 아버지인 李洪河씨 명의의 임야가 약 8,700여평이나 있지



요? 이 땅은 구입비가 어디서 나왔어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사재와 일부 은행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틀림없어요?

○證人 徐福英 틀림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아들이 몇 살이에요?

○證人 徐福英 30세입니다.

○安相洙委員 무슨 직업이에요?

○證人 徐福英 의사입니다.

○安相洙委員 그럼 전부다 자금출처 댈 수 있어요?

○證人 徐福英 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화성 땅에 해당된 부분은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살 수 있는가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었는데 학교명의로……

○安相洙委員 화성에 땅 사놓은 것이 자구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證人 徐福英 학교명의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安相洙委員 그런데 화성에다 땅을 사는 것이 전남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證人 徐福英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安相洙委員 화성에 땅 사 가지고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어요?

○證人 徐福英 만약에 2008년도 정도 된다면 반 이상은 대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安相洙委員 徐福英 증인, 지금 대표적인 문제의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한려대학이 교비를 받아서 유용을 해 가지고 땅을 샀다든지……

○證人 徐福英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安相洙委員 유용을 해서 학교를 늘렸다든지……

○證人 徐福英 유용은 절대로 안되었어요.

○安相洙委員 검찰에서도 다 해가지고 재판 판결까지 나지 않았어요?

○證人 徐福英 그래서 판결을 받은……

○李在五委員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여기 증인이 연설하러 나왔어요?

○證人 徐福英 죄송합니다.

○李在五委員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는다면서 무슨 말이 많아요?

○薛勳委員 1년6월 확정 받았지요?

○證人 徐福英 예, 받았지만 저는 남편과 공모다라고 해서지요.

○李在五委員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여기 지금 뭐하러 나왔어요?

○證人 徐福英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安相洙委員 지금 학교를 이렇게 축재수단으로 삼고 잘못 운영함으로 해서 관계되는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 됩니다.

다음 한 분한테만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 교수협의회장 金炳炫씨, 한려대를 폐쇄하는 경우에 재산을 광양대로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證人 金炳炫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證人 金炳炫 이것은 출연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安相洙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金瑋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瑋鎬委員 설립자 李洪河씨가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증인석에 못나온 형편에서 신문한다는 것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徐福英 총장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李洪河씨 부인으로서 광남고교에서 1985년3월부터 88년2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徐福英 예,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1988년2월부터 95년2월까지 李洪河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광여고에 교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있지요?

○證人 徐福英 예.

○金瑋鎬委員 대광여고 교장에서 바로 1995년3월 李洪河씨의 한려대의 총장으로 취임하셨지요?

○證人 徐福英 예.

○金瑋鎬委員 증인은 18년간 李洪河씨 학교에서 학교운영 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한려대 설립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셨는데 설립자의 부인으로서 설립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것이 적정한 인사이고 또 누가 보든지간에 객관적으로 참 잘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요점만 말씀하세요.

○證人 徐福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평생을 오직 교육에 열정과 집념으로

저희들이 생활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실제 설립을 하면서는 많은 애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총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교수님과 또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념에서지 그 자리에 연연하거나 또는 설립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金瑋鎬委員** 알았습니다. 고등학교교장으로 계시면서 설립대학의 총장으로서는 더더구나 남편이 설립한 학교총장으로서는 누가 보든지간에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인사라고 보느냐 그 말입니다.

○**證人 徐福英** 저희들이 교직계에 40평생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瑋鎬委員**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물겠습니다.

증인은 한려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각종 서류 결재란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李洪河씨 지침을 받기 위해서 통제란이라는 난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徐福英**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金瑋鎬委員** 통제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때 교육부 실사……

○**金瑋鎬委員**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徐福英**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통제란이라는 그 결재란이 없어요?

○**證人 徐福英** 예.

○**金瑋鎬委員** 협조 얻는 그런 난도 없습니까?

○**證人 徐福英**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지금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설립 당시를 물어본 것입니다. 있었지요?

○**證人 徐福英** 예, 설립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金瑋鎬委員**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증인께서는 총장의 자리만 지켰지 이것은 권한도 책임도 없는 형식적인 총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는 학교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총장을 했습니다.

○**金瑋鎬委員** 한려대 설립시 수익용 확보재산 보

유현황 그리고 시설비 추가확보에 따른 모든 조달 계획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97년에는 李洪河씨에 의해 가지고 한려대의 공금 111억2,600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증인은 사전에 알고 있었지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金瑋鎬委員** 설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설명을 안할 수가 없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회계상 미숙으로 법률상 횡령만 있었지 실제 착복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 제가 얘기합니다.

○**金瑋鎬委員** 증인은 96년, 97년 신입생 지원자수를 허위보고하고 97년 교원임용시 李洪河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남대학에서 일괄채용 심사한 20명의 교수들을 동교 교수로 임명하는 등 증인의 권한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證人 徐福英** 그때 임용 당시는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서남대학에서 함께 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그렇게 임용했습니다.

○**金瑋鎬委員** 증인은 작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원확보를 미흡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徐福英** 예.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99년8월31일자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도 있지요?

○**證人 徐福英** 예.

○**金瑋鎬委員** 그 공문에서 증인은 현재 한려대는 교원이 73명과 겸임교원 26명, 총 99명의 교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적시해서 제출하셨지요?

○**證人 徐福英** 예, 8월31일 전에 해당된 숫자입니다.

○**金瑋鎬委員** 그런데 한려대가 8월31일자로 공문을 제출한 그날 증인의 학교에서는 2년 기간의 계약제로 근무하고 있던 교수 7명을 포함한 39명의 교수를 재계약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한려대 교원수는 34명이 맞습니까?

○**證人 徐福英** 지금 현재 전임은 34명이고 겸임은 26명으로 60명에 해당이 됩니다.

○**金瑋鎬委員** 됐습니다.

교육부에 올린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39명의 교수를 탈락시킨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

버린 처사로 바로 교육부를 기만하고 국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탈락이 아니고 2년 기간만료로서 저희들이 폐쇄계고조치가 풀린다면 전부다 임용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金瑋鎬委員 보고한 날 숫자하고 보고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재계약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證人 徐福英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폐쇄계고가 철회된다면 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고……

○金瑋鎬委員 교육부에서 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을 경우 총장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알았습니다.

金炳炫 전 교수협의회장에게 묻습니다.

증인은 98년5월 한려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선출 되셨지요?

○證人 金炳炫 예, 맞습니다.

○金瑋鎬委員 증인이 교수협의회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교수협의회교수가 60명 정도였는데 1년 동안 교수협의회 교수의 숫자가 약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측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서 교수협의회를 탈퇴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협의회 비민주성에 의해 가지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입니까? 어느 대목에 동의를 하십니까?

○證人 金炳炫 재단측에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제명문제 때문에 일부 교수님들한테는 저희들도 탈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金瑋鎬委員 증인은 동교에 있는 제철금속학과 국진선 교수를 아시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국진선 교수로부터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 당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불행히도 조작된 사건입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조작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李 교수의 고발장 내용을 보면 단순히 증인의 뜻과 반대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7월5일자 전남매

일 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金炳炫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金瑋鎬委員 분규대학의 대부분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이 교협의 입장에 동조하여 함께 하고 있는데 한려대의 경우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교협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으며 전남지역 전체 16개 대학의 총학생회 또한 교협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광양경제실천협의회를 비롯해서 광양지역의 46개 단체 또한 교협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炳炫 저희들이 지금 광양시내 52개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전교조, 민교협, 사교련에서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 학내 구성원의 중간에 계신 교수님들은 자기의 생존권과 교수의 직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재단측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이 길만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결단을 내렸을 때 귀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證人 金炳炫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金瑋鎬委員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길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金炳炫 예, 하겠습니다.

○金瑋鎬委員 동의하지요?

○證人 金炳炫 예.

○金瑋鎬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 金貞淑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徐福英 증인!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굉장히 엄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證人 徐福英 예, 알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위증하면 안 됩니다.

○證人 徐福英 예.

○金貞淑委員 학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최종학력이 어디입니까? 또 전공은 무엇입니까?

○證人 徐福英 전남대학교 대학원입니다.  
 ○金貞淑委員 전공이 무엇입니까?  
 ○證人 徐福英 가정과입니다.  
 ○金貞淑委員 대학원에서 석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석사 했습니다. 박사도 했고요.  
 ○金貞淑委員 대학에서는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가정이요.  
 ○金貞淑委員 그러면 李洪河씨는 오늘 왜 안 왔습니까?  
 ○證人 徐福英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金貞淑委員 건강이 뭐가 안 좋아요? 여기 목격자들이 줄줄이 나타나서 증거가 다 있는데요. 10월 7일에 봤다는 분도 있고 여수공항에서 봤다는 분도 있고, 교수들한테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또 10월7일에 그 사람이 서울에 왔어요. 6시30분 경에 서울 사학진흥재단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11일에는, 이것도 역시 서남대학 교수한테서 온 것입니다.  
 ○證人 徐福英 건강이 안 좋으시고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지금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12일에도 오후 9시경에 서남대 의대 앞에서 송문석 학생처장, 김주안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고 서남대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어떻게 아프길래 안 나오고 비겁하게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게 합니까?  
 또 오늘 본위원이 李洪河 증인의 부인이 되는 徐福英 증인의 답변하는 태도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을 돕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총장으로서 몇 년이예요? 오랜 동안 총장을 하면서 본인이 서남대학 이사장, 광양대 이사, 남광병원 이사장 등 한 몸에 이렇게 많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가정학을 전공한 총장이 이렇게 학교행정에 전문적으로 나서고, 본인이 스스로 총장의 자질이 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어요? 답변해 보세요.

○證人 徐福英 저희들은 육십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살았습니다.  
 ○金貞淑委員 그 소리는 아까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고교 교장이 총장 되기 전의 최종경력이었어요. 고등학교 교장이 행정 보는 것하고 대학행정을 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證人 徐福英 같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 행정을 알아야만 대학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委員 도움은 되겠지만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또 다릅니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證人 徐福英 물론 다르겠지만……  
 ○金貞淑委員 그 논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서남대 이사장, 총장, 병원 이사장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같이 옆에 앉아서 도와 주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어때요?  
 ○證人 徐福英 저는 처음부터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신념은 같습니다.  
 ○金貞淑委員 됐어요.  
 그러면 한려대학 총장으로서 물음시다.  
 학교회계하고 법인회계하고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徐福英 예.  
 ○金貞淑委員 그러면 남편이 등록금을 횡령했어요. 학생들 등록금을 횡령해서 탄짓을 많이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證人 徐福英 횡령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고 절대로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치부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金貞淑委員 법에서 다 판가름이 난 것이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난해 8월에 교육부가 폐쇄계고조치 내렸지요? 그런데 李洪河씨가 7월까지 수시로 학교를 폐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교수들 앞에서 위협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證人 徐福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金貞淑委員 다 알고 있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누가 잘못 전달해 주신 것

이고 어떻게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폐쇄 시키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학교 만드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은 밤낮없이.....

○金貞淑委員 학교를 만들었으면 하나만 갖고 잘 해야지, 여기서 등록금 받아다가 이쪽에다 짓고 또 이쪽에서 등록금 받아다가 저쪽에다 짓고, 그것이 횡령이 아니고 뭐예요?

○證人 徐福英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金貞淑委員 그것이 횡령이 아니고 뭐길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를 쳐요!

○證人 徐福英 저희들은 평생의 온 사재를 털어서 사립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金貞淑委員 됐어요.

그 다음에 폐쇄계고조치가 내려졌을 때 학교를 잘 운영해서 이것을 철회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39명이나 되는 교수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느냐 말이에요? 이것 하나가 폐쇄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證人 徐福英 아니지요. 분명히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철회된다면 임용을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증인 본인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지요? 법정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래도 아직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證人 徐福英 저는 남편과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무죄이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무슨 무죄예요?

○證人 徐福英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金貞淑委員 그 다음에 金炳炫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폐쇄계고조치 이후의 학교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炳炫 폐쇄계고조치 이후에 첫째는 교수 협의회를 해체하고자 온갖 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도에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해서 사직서를 받고 봉급을 50% 일방적으로 깎고 교협을 해체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을 받고 또 올 2월에는 교수 20명을 재임용 탈락시킨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폐쇄를 철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대로 흡수하려는 발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金兌鎬 증인에게서 답변해 주세요.

○證人 金兌鎬 교무처장 金兌鎬입니다.

○金貞淑委員 39명을 재임용 탈락시켰는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셨지요?

○證人 金兌鎬 예, 그렇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때 인사위원회 회의를 정식으로 개최했습니까?

○證人 金兌鎬 예, 정식으로 회의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날 누구 누구 왔습니까? 그날 일자와 참석자를 얘기해 주세요.

○證人 金兌鎬 저희가 교원인사위원회를 2월19일에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2월19일에 누구 누구 왔습니까?

○證人 金兌鎬 2월19일에 저하고 위홍복, 김해숙, 신명건.....

○金貞淑委員 됐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내용은 재임용 탈락에 대해서 했지요?

○證人 金兌鎬 재임용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등록학생이 50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작년에는 2,300명이었습니다.

○金貞淑委員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사위원회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시라고요.

○證人 金兌鎬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교수님들에 대한 재임용이 되겠는가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金貞淑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39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자고 했지요?

○證人 金兌鎬 탈락시키자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임용을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났지요.

○金貞淑委員 그러면 39명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요?

○證人 金兌鎬 예, 논의는 했습니다.

○金貞淑委員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관련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심사를 했습니까, 검토했어요?

○證人 金兌鎬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교수 재임용에 대한 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金貞淑委員**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재임용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證人 金兌鎬** 재임용 탈락이 아닙니다. 임용만료로서 임용을 다시 할 것이나……

○**金貞淑委員** 다시 안 하면 탈락이지요?

○**證人 金兌鎬** 만약 탈락을 시킨다면 저희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해야 재임용 탈락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金貞淑委員** 金炳炫 교수 나오셨습니까?

○**證人 金炳炫** 예.

○**金貞淑委員** 그 당시에 재임용과 관련해서 연구 실적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까?

○**證人 金炳炫** 전혀 없었습니다.

○**金貞淑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를 한 다음에 이사회나 아니면 총장에게 이 회의록을 다 넘겼지요?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기록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金兌鎬 교무처장!

○**證人 金兌鎬** 예, 이사회에 넘겼습니다.

○**金貞淑委員** 다 넘겼어요?

○**證人 金兌鎬** 예.

○**金貞淑委員** 그러면 그 사본을 바로 본위원실로 오늘 증으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학교로 전화하면 되지요?

○**證人 金兌鎬** 저희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委員** 하면 되지요?

○**證人 金兌鎬** 예.

○**金貞淑委員** 진짜 회의록이 있습니까?

○**證人 金兌鎬** 회의록이 당연히 있지요.

○**金貞淑委員**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질의를 못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읽어 보고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교육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 놓고,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까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교육부도 그래요. 한 군데 허가를 내주고 학교 운영하는 꼴을 보면 아는 것이지 계속해서 대학을 4개, 5개씩 내주고 고등학교를 내주었어요. 이것이 뭐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한국사학과 교육부 부패의 표본이에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질의가 덜 끝났는데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漢**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입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번호를 다 매겨 놓았는데 이 번호는 李洪河의 학교 증식도가 아니라 사실상 재산 증식도입니다. 이 순서는 먼저 어디서 했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나 이것을 밝힌 것입니다.

지금 증인은 아주 수준미달입니다. 徐福英 총장은 총장자격도 없고 미달인데 내가 그것을 논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여성상 설립 당시에 처음 기본재산이라고는 목욕탕 하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위원님께서 잘 아셔야 되고 여기 증인들도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장·차관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설립허가를 내줬어요. 수익용 재산이라고는 오직 목욕탕 하나였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李洪河의 족벌·심복체제를 제가 낱낱이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10분밖에 못하는 영터리 국감, 이것을 누가 발상했는지 나는 우선 거기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李洪河만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사기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문대학의 全載旭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밝히지 않겠지만 적어도 3개 이상의 학교사기단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가 치밀합니다. 스터디그룹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교육부에 비호세력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위원들이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고 그런 전제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洪河는 산하 대학·고등학교에서 426억원의 등록금을 횡령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판결문에 의하면 그 426억원으로 남광병원, 광주적십자병원, 경기도 화성군, 충남 아산시, 광주시 광산구 등등에 학교 매입을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면 이런 학교사기단의 두목에 대한 판결이 정확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김병현 교협 회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 다음에 이 땅들은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하여 산 것인데 아직도 증인과 증인의 아들 이현성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학교 법인으로 환원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證人 金炳炫 알고 있다고 봅니다.

○李壽仁委員 이흥하가 횡령한 돈으로 아들 딸의 등록금, 전세금, 약값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약 1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2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이흥하와 서북영 그리고 그 아들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이 돈이 검찰의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믿고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믿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證人 金炳炫 알고 있다고 봅니다.

○李壽仁委員 그러니까 한 개의 고등학교로 출발해서 두 개, 세 개의 고등학교로 넓히고 등록금을 빼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학교를 설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이 사실을 다 알고도 승인한 꼴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학마피아 그러니까 학교 사기단의 공통된 수법의 첫째 특징은 뭐냐하면 즉벌체제라는 것입니다. 4개 대학 법인의 이사 수가 총 32명입니다. 그 중 50%가 친인척 나머지는 산하 고등학교 출신 심복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도 대부분 증인의 처, 동생, 매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공통으로 이 대학 이사가 저 대학 이사로 이런 것을 따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감사까지 했으니까 교육부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시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壽仁委員 둘째 특징이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 유명무실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대부분 허위입니다. 이것은 학교사기단이라고 부르는 사학마피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남연과 이흥수 99년2월11일, 27일, 3월17일, 3월30일, 4월8일, 8월31일 모두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모르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이 시기에 이사회는 개최된

적도 없고 회의록도 허위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서북영 총장한테는 물어보았자 아니라고 할테니까 제가 입씨름을 하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거의 명확합니다. 이런 날조된 이사회 회의록이 있다는 것을 金 교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炳炫 익히 알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교육부도 알고 있다고 확신하시지요?

○證人 金炳炫 교육부가 세밀히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李壽仁委員 예·결산 위원회도 아주 엉망입니다.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교수 엄영옥 등등입니다. 간사 배경미 이런 사람들은 그런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도장도 자신들이 찍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회의록도 날조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炳炫 저희들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金璘鎬 부의장께서 말씀하실 때 서북영 증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가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8월31일 재임용 대상자 39명을 모두 탈락시키기로 했다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정말 열렸는지, 이것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고발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했는데도 회의록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교육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제출하도록 강력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하여튼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거나 사정이 있었거나로 저는 판단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炳炫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李壽仁委員 지난 8월30일 한려대 교수 73명 중에 39명을 무더기로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파면이에요. 이중 18명은 지난 3월에 2001년까지 재임용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위반이지요. 그런데도 불과 6개월이 지난 올 8월에 임용만료를 이유로 해서 해고시켰는데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지요. 2001년까지 계약을 해놓고 임용만료를 이유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한려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

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르면, 서호학원 정관 제6장에는 재임용하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반이라는 사실을 증인께서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證人 金炳炫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지난 8월말 39명 교수의 재임용 탈락 결정은 정당한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도 날조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들을 재임용 탈락시킨 것은 무효이자 노동법상 부당해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우선 이들을 모두 원상복직시켜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강제해야만 되겠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壽仁委員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김병현 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간결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證人 金炳炫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의 교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학생들 강의 하다가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서 물을 퍼내고 강의를 중단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인근의 순천대나 전남대 심지어는 광주, 서울까지 자료를 찾으러 올라다녔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은 오직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저희들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폐쇄계고조치로 교수협의회 목소리를 죽이고 오직 재단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순간에도 바라는 것은 우리 학교가 정상화되고 안 되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보장 되는 현실이 된다면 저희들은 저희 학교가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어디든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徐福英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勳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기회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서복영 증인이 대단히 불쌍해요. 불쌍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증인은 여기 나와서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남편되는 이흥하 증인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있는 것으로 동료위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증인은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불쌍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참 불쌍해요. 불쌍한 증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에게 등록금에서 빼낸 돈으로 2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해준 것 재판 과정에서 학교에 내놓기로 했는데 왜 안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전시켜 놓은 것이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쓸 것입니다.

○薛勳委員 됐어요. 학교를 위해서 했으니까 학교에 내놓을 것이지요?

○證人 徐福英 당연하지요.

○薛勳委員 언제까지 내놓을 것이예요?

○證人 徐福英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학교 돈으로 구입된 것이 아니었고 개인 사재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를 위해서 60평생 살았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薛勳委員 알았어요. 지금 광주지부에서 판결한 것이 횡령한 금액만 해도 14억입니다. 이것도 증인 편에 서가지고 판결해서 최대한 아주 잘 봐준 것이 횡령한 것만 14억입니다. 그리고 220억을 유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 받은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증인은 날아다니면서 이사회 회의를 해야 하는 처지에요. 이를테면 99년2월27일 오전 10시, 3월30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이사장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徐福英 예.

○薛 勳委員 또 같은 날 2월27일, 3월30일 오전 11시부터 광양의 광양대 양남학원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까지 전북 남원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證人 徐福英 40분이면 충분합니다.

○薛 勳委員 4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오전 10시에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날아갔습니까?

○證人 徐福英 여러 가지 이사의 개인 여건 때문에……

○薛 勳委員 됐어요. 이래서 이것은 날조한 회의록입니다. 40분만에 갔다는 이야기는 차를 가지고 가도 안 되고 헬리콥터로 가도 그 정도는 걸려요 안 되는 이야기니까……

○證人 徐福英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했습니다.

○薛 勳委員 알았어요. 됐어요. 98년8월까지 한려대에서 보유한 기자재가 193종 776점인데 금액으로 5억6,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폐쇄계고 조치를 하고 난 뒤 1년 동안에 약 550종 2,200점 6억8,000여만원어치의 각종 교육기자재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證人 金炳炫 사실이 아닙니다.

○薛 勳委員 서복영 증인, 사실입니까?

○證人 徐福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자재는 분명히 다 됐습니다.

○薛 勳委員 됐어요. 그만해요. 그리고 무슨 뜻으로 교수를 39명이나 재임용 탈락시켰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왕창 뒤집어놓고 교수들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교수들하고 학교를 부둥켜 안고 가도록 해야지 39명이나 교수를 막 쳐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탈락이 아니고요. 폐쇄철회가 된다면 분명히 임용을 한다는 얘기를 교수님께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薛 勳委員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비리 분규대학을 들여다 보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마 장관께서는 엄청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형이 거의 같습니다. 全載旭 유형이나 李洪河 유형이나 거의 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威鍾漢 金日柱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炳炫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학교에 몇 년 계셨어요?

○證人 金炳炫 설립 당시인 95년도부터 해서 5년 됐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그 당시 학생은 몇 명이나 됐어요?

○證人 金炳炫 첫째에 1,2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교수는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證人 金炳炫 그 당시에 스물여덟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지금도 교수로 계십니까?

○證人 金炳炫 지금은 재임용 탈락된 상태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이 학교의 설립이념도 없고…… 지금 내가 묻고 싶은데 대답 분명히 못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모체는 옥천여상이었고 그 이후로 광주예술대, 서남대, 한려대, 광양대 이렇게 되는데 부인이 총장이고 남편이 이사장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교육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개인회사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證人 金炳炫 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초기에는 제대로 재단과 학교가 분리돼서 경영이 됐나요?

○證人 金炳炫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래서 내가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묻고 싶지 않아요. 증인은 거기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오신 것이지요,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물론이지만 모두 대표하고 계시지요?

○證人 金炳炫 그렇습니다.

○金日柱委員 아마 학생들도 증인을 굉장히 신뢰할 것 같아요.

○證人 金炳炫 예.

○金日柱委員 그런데 솔직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증인채택한 이유는 여기서 무슨 재판하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학교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소상히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가 할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장관님, 차관님,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모두 배석해 있으니까 솔직하고 간략하게 대목대목 이야기해 보세요.

○證人 金炳炫 저희 대학은 광양만권의 중심지로서 위치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학교 캠퍼스는 몇 만평이나 됩니까?

○證人 金炳炫 평은 모르고 6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로 봐도 광양만권이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근해에……

○金日柱委員 광양에 대학이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證人 金炳炫 李洪河씨가 운영하는 광양전문대가 또 하나 있고 4년제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봐서도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학교가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저희들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들도 답변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에 보면 폐쇄계고 조치를 내리기 전에도 분명히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감사를 한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조사라는 것은 사흘만의 실태조사를 받았습시다.

감사는 분명히 틀리지요. 감사는 그 서류가 검증이……

○金日柱委員 어디의 실태조사를 받았어요?

○證人 金炳炫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證人 金炳炫 98년6월8일부터 1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측에서 내놓은 일방적인 서류를 교육부가 그대로 인정하고 저희 교수협의회에서 작성한 비리서류나 모든 것에 대한 실사를 교육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을 보면 시정조치를 몇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은 오직 실태조사 한번, 사흘동안 한번 내려와서 그 당시에 2,000여명의 학생이

재직을 하고 있는 이 학교를 폐쇄계고조치를 내림으로 해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金日柱委員 학생이 제일 많았을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證人 金炳炫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500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인근의 광양제철에서 일단 관선이사나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3자가 나온다면 재정을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니까 주변에서 독지가가 나와서 학교를 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證人 金炳炫 있기는 있습니다. 한 두·세분 제가 만나봤는데 李洪河씨의 배후세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오직 관선이사입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든 안되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기업도 재정이 열악하면 공적자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가장 많은 대학을 퇴출시킬 때 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그 임시이사와 저희 학내 구성원들이 한번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폐쇄를 저희들이……

○金日柱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의 총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證人 金炳炫 지금 13만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리고 한려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한 5,000명 정도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됩니까?

○證人 金炳炫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5,000명은 좀 무리이고요 한 4,0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金日柱委員 광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이 차편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證人 金炳炫 순천대학이 버스로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한번의 기회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이 학교가 살아날 기미가 없다면 저희들이 폐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金日柱委員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임시

이사가 파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證人 金炳炫 그렇습니다. 온 광양시민과 뜻있는 인사들이 임사이사 파견만이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金日柱委員 광양의 유지들이며 주민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5%가 시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에서는 인근 주변에 매년 100억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 시립화만 선언을 해준다면 광양제철에서 충분히 그 재정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광양대나 서남대가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서남대는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인·허가 사항이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남대 총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밖으로 ……

○金日柱委員 金炳炫 증인은 어느 학교 출신이십니까?

○證人 金炳炫 저는 전남대학교 출신입니다.

○金日柱委員 광양 근방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證人 金炳炫 아닙니다.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은 李洪河 이 분이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임사이사를 다 파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金日柱委員 金炳炫 증인이 관계없는 곳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월권이에요.

○證人 金炳炫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자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만 제자가 아니고 ……

○金日柱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在五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李在五 위원입니다.

金炳炫 증인, 전 교협회장이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李洪河 증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신병을 사칭한 고의라고 보지요?

○證人 金炳炫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李洪河 증인 부부가 결혼할 당시에는 다 교사출신이었고 개인의 큰 재산이 없었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李洪河씨의 학교사업 진행 과정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81년에 옥천여상, 85년 광남고, 86년 대광여고, 91년 서남대학교, 93년 광주예술대학교, 94년 광양대학교, 95년 한려대학교, 95년 서남대 의대인가, 96년 서남대 분교 설립인가, 97년 안산산업대 설립허가 신청 이렇게 한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 인가받은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李洪河씨의 구속 2심 판결문을 보면 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건축법 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뇌물수수 이렇게해서 구속됐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이것이 1심, 2심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서남학원에서 21억3,000 횡령, 서호학원에서 14억2,500 횡령, 양남학원에서 14억 9,000 횡령, 흥덕학원에서 18억 6,200 횡령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徐福英 증인, 李洪河증인이 대법 상고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제가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李洪河 증인이 대법 상고했느냐구요?

○證人 徐福英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요.

○李在五委員 徐福英 증인은 상고했지만 李洪河증인이 대법 상고했느냐구요?

○證人 徐福英 안했습니다.

○李在五委員 대법 상고 안한 것은 2심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지요?

○證人 徐福英 ……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金炳炫 증인, 李洪河 부부가 학교를 즉별체제로 운영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내가 불러 보겠습니다.

李洪河, 徐福英, 이홍수, 위홍복, 송은섭, 송현철, 이영수, 강남연, 박홍채, 김재련, 송문석, 김재구, 한현택, 이원영, 최인령, 문채련, 김태성, 백형권, 오선

재, 고명석, 장수종, 양판선, 이호재, 한영균, 김길성, 양차열, 이화자, 이명신, 구기홍 이 사람들이 전부 李洪河 부부가 운영하는 학교재벌의 친인척 내지 신복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李洪河씨 범죄중에 등록금 불법전용 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부정대출 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실습기자재 허위보고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도서관 도서구입 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학교 건축물 부실공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학교폐수 불법방수, 쓰레기 불법소각 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학교운영 학사개입 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문서날조 및 변조비리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교원 인사 및 교수 부당대우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족벌운영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李洪河 증인이 대법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법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대법에 상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威鍾漢위원장, 金日柱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나는 대법에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승복한다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李洪河 증인은 복권이 된 것입니다.

증인,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그렇다면 李洪河 증인이 그 동안에 지은 죄가 다 사실이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대한민국 수립후 50년사에서 대한민국 사학 50년사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부패하고 관료와 결탁하고 부정의 온상이고 이것은 교육을 빙자한 범죄집단, 사기집단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학교가 두개 있습니다. 全載旭이 경영하는 학교, 李洪河 부부가 경영하는 학교입니다. 全載旭 부부가 경영하는 재벌은 둘 다 증인으로 안 오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李洪河 부부가 경영하는 학교재벌은 부인이 나왔는데 부인이 여기에 나온 것은 사실을 밝히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것 전부 변명하려고 나와 있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저는 오늘 한려대학에서 온 여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겠느냐? 교육부가 무능하고 아무리 교육부 관리들이 한 때의 실수로 사립대학과 결탁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오늘 와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들어보니까 저의 판단은 학생들만 희생되는 것이예요.

제가 李洪河 부부가 운영하는 전 학교의 재단 전입금하고 교육부로부터 사학진흥재단, 공제회 이런 데에서 대출받은 것 전부 비교해 보니까 본인들이 낸 돈이 1억이라면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서 빌려받은 돈이 10억이 넘어요. 알고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이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證人 金炳炫 없습니다.

○李在五委員 폐쇄계고조치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폐쇄하고 나서 폐쇄된 학교의 재단을 범죄자들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 옮기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證人 金炳炫 그것은 분명합니다.

○李在五委員 그것은 교육부 감사에서 따지겠습니다.

오늘 한려대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전 교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한려대의 李洪河씨 부부가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부 봅니다. 전부 보고 선택해서 혹시 우리들이 오판하지 않을까 해서 법원의 판결문까지 우리가 빌려보았습니다.

李洪河씨와 徐福英씨 부부 맞지요, 두사람 공범으로 재판 받은 것 맞지요?

○證人 金炳炫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은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만큼 분명하게 문제는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서호학원의 족벌체제와 재산축재, 특별히 재정비리 부정축재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徐福英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족벌체제, 이 한려대학 하나만 보더라도 이사장 이홍수는 동생이고 이사는 매부가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대광여고, 옥천여상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이 이렇게 일색으로 그런 인척관계로, 친분관계로 구성되기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말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번 더 徐증인에게 물어보면 한려대 설립 당시 李洪河씨가 교지 확보나 수익용 재산마련에 사용한 돈이 얼마만큼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證人 徐福英 한려대 출연자금으로는 약 260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申樂均委員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학교를 건축했지요.

○申樂均委員 자료에 의하면 학교부지조성은 서남학원 명의로 구입한 땅으로 했고 최초 건축비는 다른 법인의 돈으로 했고 추가시설 확보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누구의 이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횡령한 돈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徐福英 대법원에 상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申樂均委員 현재 판결이 69억원 횡령을 한 혐의로 나타났고 판결문에 보면 총 횡령액이 426억원인데 이것은 횡령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피해액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횡령액수에 속합니

다. 자료 불충분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확인될텐데 그런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원상회복은 하시겠지요?

○證人 徐福英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셨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상 미숙으로 해서 법률상 횡령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申樂均委員 그런 정도를 법원이 다 감안해서 최종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徐증인만큼 그런 것을 판별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나라의 고등법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인에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사례도 보겠습니다.

95년5월부터 97년11월 사이에 재직중인 교수들 한데 적게는 3,000만원 최고 2억5,000만원까지 교수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속되어져 있을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되어 있었습다. 그래서 학교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직교수님께서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래서 이것을 다 갚았습니까?

○證人 徐福英 갚았습니다.

○申樂均委員 이자도 법원에서 갚아 주었는가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저 개인 사재로 갚았습니다.

○申樂均委員 확인한 결과 법인 통장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證人 徐福英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申樂均委員 그러면 어느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했다는 사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난 95년과 96년에 국고지원금 받은 사실을 기억합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申樂均委員 잘 모르시면 金兌鎬 증인이 얘기해 보십시오.

○證人 金兌鎬 제가 교무처장으로 그때 교육부에서 95년도에 1억얼마와 96년도에 4억얼마 이렇게 왔었고 그때 당시 국고는 기자재 도서 그것으로 해서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申樂均委員 도서관 지원과 시설확보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보고서에 도서관 장서

를 얼마로 보고했지요?

○**證人 金兌鎬** 그때 교육부에 보고한 관련서류는 지금 없어서 숫자적으로는 못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는……

○**申樂均委員** 그때 도서 장서를 6만5,000권으로 보고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그랬는데 실제로 98년7월 당시까지 도서류가 소설류 1만2,000권밖에 보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수증이 허위라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실상입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교육부에 최근 폐쇄계고조치 사유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지요?

○**證人 金兌鎬** 예, 제출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교지시설면적이 계획승인면적의 61%에 불과하니까 시설결정면적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했지요?

○**證人 金兌鎬** 이번에 저희가 교지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실험실습 기자재 기타 우리가 이행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충족을 해가지고 그 관련 증거자료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교육부 이행 지시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로 했나요? 여기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확장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학교가 교육부에 낸 자료인데 여기 있어요. 또 교원확보율도 마찬가지예요.

교원확보율도 26%에 불과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한서의 답변도 그렇습니니다. 그것 기억 못 합니까?

○**證人 金兌鎬** 그때 저희가 보고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이번에 보고한 것 99년8월31일 폐쇄계고 이행기간이 8월31일입니다. 그래서 8월31일까지 해서……

○**申樂均委員** 보고서 냈는데 거기에는 이행을 충족시키지 않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확보율은 254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73명으로 보고했다든가 해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입생을 뽑지 않은 기준에서 확보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학교 폐쇄에 대해서 그것을 기정

사실화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金兌鎬** 그것은 아니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폐쇄계고가 철회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원들 그 분들을 다 임용하게 되면 신분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申樂均委員** 일단 아까 徐중인은 철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학교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철회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폐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까 李在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법인을 광양대로 합치려고 하는 그러한 데에 대한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짙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證人 金兌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렵니다.

저희가 학교 폐쇄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 홍보자료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申樂均委員** 신뢰할만한 근거가 너무 없어서 이 학교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은 朴承國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朴承國 위원입니다.

교육부에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준 자료, 이것 만든 자료이지요?

○**教育部長官 金德中** 예.

○**朴承國委員** 徐福英 총장은 남광병원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병원장은 누구입니까?

○**證人 徐福英** 윤태현 원장이십니다.

○**朴承國委員** 그런데 거기에 李모라는 아들이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아니요, 여기 서울 연세대에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런데 이 진단서를 보니까 99년9월29에 끊어서 4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국정감사에 안 나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내놓았어요.

그런데 남광병원의 이사는 아내이고 여기 진단서를 발급 받은 李洪河는 남편인데 그 병원은 남

편이 국정감사에 출두하지 않기 위해 허위 진단서 나 꿔고 있는 병원입니까?

○證人 徐福英 그것은 아주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朴承國委員 적어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겠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병원에 가서 꿔어 와야 돼요.

○證人 徐福英 그전에 전남대학교에서 꿔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朴承國委員 그러면 그것을 내놔야지 왜 이것을 내놔요?

○證人 徐福英 함께 냈습니다.

○朴承國委員 여기 눈감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證人 徐福英 전남대학교 것하고 함께 나와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證人 徐福英 너무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朴承國委員 그리고 회계상 미숙으로 법률상 횡령이지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법률상 용어는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어는 없어요. 횡령이면 횡령이지 어디 가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검찰 조사결과에 서남대 등 4개 대학의 설립 당시 수백억원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행했지요? 그래서 교육부에 갖다 낸 것 아닙니까? 자산내역을 내라고 하니 허위 잔고증명서를 꿔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돈을 빌렸는지, 안 그러면 없는 것을 꿔었는지 하여튼 꿔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검찰에서 그렇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왜 대답 안 합니까?

○證人 徐福英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상황이어서……

○朴承國委員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證人 徐福英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계고 조치까지 되었지요.

○朴承國委員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줘요.

그런 것을 꿔어서 교육부에 갖다 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장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있었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것은 위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면 없었다 있었다면 있었다고 대답하면 우리가 조사해 보고 있는 것을 없다고 했으면 그것이 위증이에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의성은 없었고……

○朴承國委員 고의성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꿔은 것이 고의성이든 자의성이든 타의성이든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證人 徐福英 실무자의 입장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徐福英 총장과 李洪河씨는 모든 것을 허위문서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만들 때부터 허위 잔고증명서를 꿔어서 4개, 5개씩의 학교를 만들고 또 오늘 낸 이 진단서도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證人 徐福英 건강이 너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朴承國委員 7일하고 10일에 다 본 사람이 있는데요?

426억 횡령사건으로 1년6개월 형을 받고 출옥을 하셨지요?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해 주세요. 출옥했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그렇게 대답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총장으로서 학교회계를 책임지고 관리·집행하는데 한려대의 등록금을 모두 대광역고 기획실로 보낸 사실이 있지요? 이것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만 대답하세요. 저는 지금 위증인지 아닌지만 보는 것입니다. 똑바로 대답해 줘야 돼요.

○證人 徐福英 한려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한려대학교에서 대광역고로 보낸 사실이 없다 이 말이지요?

○證人 徐福英 설립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언젠가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보냈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이렇게 대답만 하면 시원한데 왜 그래요?

○證人 徐福英 지금하고 그 전하고 다르기 때문

입니다.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개교 이래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용 후에 교수 1인당 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서 총 151건에 42 억원을 대출받아서 李洪河씨가 학교에서 사용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證人 徐福英 그때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朴承國委員 이것을 받아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證人 徐福英 그때 당시로 전부 다 상환은 바로 되었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일단은 받아서 쓴 것 아닙니까? 받아서 쓰지도 않았는데 돌려 주었나요? 그러니까 받았었지요? 그 다음에 또 모두 상환을 했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무슨 돈으로 상환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 설립자 개인 돈으로 한 것입니다.

○朴承國委員 개인 돈으로 한 것이 분명하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그때 당시에 개인 돈으로 돌려준 재원을 우리가 파악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남아 있는 35 명의 전임교원 임용만료기간이 2000년2월28일인데 이제 교수가 1명도 없게 되면 자진해산 시에 학교 재산이나 챙겨보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朴承國委員 억울하지요?

○證人 徐福英 예.

○朴承國委員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요?

○證人 徐福英 절대로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徐福英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조치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됐습니다.

말을 잘 들으세요. 학교폐쇄 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은 그 자산이 저희 사유재산이라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朴承國委員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그 자산은 국가에 헌납, 국가의 교육용 또는 다

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證人 徐福英 그것은 공익 법인 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만약에 학교가 없어졌을 때 거기서 학교 못 하잖아요. 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고 있는냐는 것입니다.

○證人 徐福英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承國委員 폐쇄조치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證人 徐福英 폐쇄가 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朴承國委員 어떻게 폐쇄가 될 수 없어요?

○證人 徐福英 교육부에서 내려온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朴承國委員 지금 모든 것을 이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모든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 학교는 도저히 이대로 놓아두면 교육이 아니라 사기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를 폐쇄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다고 학교입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뜻,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뜻이 참되어야 그것이 학교입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쇄가 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욕심을 내서 폐쇄시키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徐福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李在五委員 위원장! 저 증인에게 주의 좀 주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日柱 증인은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증인에게 경고합니다. 예, 아니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範珍 위원입니다.

徐福英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徐福英 증인과 李洪河 전 이사장 두 분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證人 徐福英 7개에 해당됩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셨을 때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朴範珍委員 아니, 결혼하셨을 때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證人 徐福英 큰 재산은 없었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朴範珍委員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결혼하셨을 때 재산이 어느 정도였나니까요? 결혼하실 때 두 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다?

○證人 徐福英 교사였습니다.

○朴範珍委員 두 분 다?

○證人 徐福英 예.

○朴範珍委員 그런데 첫 번째 학교는 설립한 것입니까, 인수한 것입니까?

○證人 徐福英 설립한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때 설립한 그 학교의 설립자금은 무엇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證人 徐福英 그때 개인 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朴範珍委員 무슨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

○證人 徐福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때 얼마나 설립자금이 들어갔나요?

○證人 徐福英 그때의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히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朴範珍委員 처음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證人 徐福英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어느 학교였습니까?

○證人 徐福英 서남대학교였습니다.

○朴範珍委員 그 대학을 설립할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證人 徐福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 약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朴範珍委員 그 200억의 설립자금은 무엇으로 충당을 했지요?

○證人 徐福英 그때 개인 수익사업으로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그 정도로 돈을 잘 버셨어요?

○證人 徐福英 예, 그때의……

○朴範珍委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학교였습니까?

○證人 徐福英 세 번째는 광양전문대학입니다.

○朴範珍委員 그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돈이 얼

마나 들었습니까?

○證人 徐福英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朴範珍委員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證人 徐福英 한려대학교입니다. 약 2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니까 지금 학교 설립하는 비용이 전부 다 수백 억 단위입니다.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막대한 자금을 그렇게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의문이에요.

재벌이 그 동안에 문어발 경영을 한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벌들이 회사 차릴 때 이 회사 돈 빼내서 저 회사 차리고 저 회사 돈 빼내서 또 저 회사 차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도 많은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횡령이라고 하니까 횡령은 아니고 회계처리 미숙으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착복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이 학교에서 빼가지고 저 학교에 투자한 것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학교는 학교단위대로 재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복을 안 했다는 것 가지고 변명이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이 붙으면 그 학교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명을 씻어낼 길이 없어요.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朴範珍委員 다 아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지금 부부가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다 알 것 아니에요?

○證人 徐福英 그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돌이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朴範珍委員 됐어요.

金炳炫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한려대학을 시립대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한 일이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金炳炫 예.

○朴範珍委員 그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공감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炳炫 예, 시민들 8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학교 내에서 교수들 사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證人 金炳炫 지금 불행히도 저희 교수협의회가 소수이고 재임용 탈락문제로 해서 일부 중도에 계신 힘없는 교수님들이 재단 측의 압력에 못이겨서 오늘 새벽에도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교수가 소수지만 지역의 52개 단체가 이홍하 퇴진 및 한려대학교시립화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알겠습니다.

신문 끝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日柱 다음은 盧武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서북영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학교가 폐쇄되면 재산이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證人 徐福英 저희들은 폐쇄를 한번도 생각해보는 적이 없거든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안 물을게요. 김태호 교무처장이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법률상 또는 학교 방침이나 정관상 이 학교가 폐쇄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兌鎬 재산이 어디로 가는가는 모르겠고 그 절차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정관 있지요?

○證人 金兌鎬 예.

○盧武鉉委員 사립학교법 아세요? 사립학교법상 정관에 정한 순서가 1순위거든요. 그 정관에 이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 재산이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證人 金兌鎬 ……

○盧武鉉委員 모릅니까?

○證人 金兌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金兌鎬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서북영씨는 알아요?

○證人 徐福英 ……

○盧武鉉委員 가져갈 생각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상 만일에 이 학교 법인이 해산되면 재산을 어디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릅니까?

○證人 徐福英 ……

○盧武鉉委員 증인 중에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證人 金炳炫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명시되지 않으면 국유로 되지요.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證人 金炳炫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아니지요.

다음에 김태호 증인에게 물어보지요. 교육부에서 학교를 폐쇄계고했는데 폐쇄 안 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證人 金兌鎬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盧武鉉委員 부연설명하지 말고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물어드리지요.

○證人 金兌鎬 저희 교수들 열심히 해서 학교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럴 때 학사 운영은 총장 이하 교수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학교의 최종적인 운영책임단체는 이사회 아닙니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兌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렇게 묻지요. 이홍하씨나 서북영씨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사회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兌鎬 학교 설립자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설립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학교 운영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도 그래도 그들은 설립자이므로 이 학교를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김태호 증인의 의견이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金兌鎬 제가 말씀드린 것은……

○盧武鉉委員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證人 金允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日柱간사, 咸鍾漢위원장과 사회교대)

○盧武鉉委員 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나 학생, 지역사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승인할 때 ‘저분들이 변했다’ 이렇게 승인할 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신뢰할 때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證人 金允鎬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역에서 서명도 받았습시다. 폐쇄계고조치로 인해서 3만2,000여명의 서명도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됐습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증인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그 학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육부가 몽창 다 망하겠다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의견으로 합시다.

제가 왜 김태호씨한테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아직도 도장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여기에서 표출시켜 보고자 바보 같은 질의를 했더니 바보 같이 대답을 해가지고…… 그렇지요? 나도 바보 같이 물었는데 바보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정관상으로는 폐쇄되면 광양대학교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교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 교육부의 입장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물리나세요. 제발 물리나고 폐쇄가 되든 아니되든 그것은 교수님들이 지역 사회에서 시장을 움직이든, 시장도 못하겠다면 못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기업을 움직이든 유지들을 움직이든 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교육부도 그렇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수준에서 재단 이사회를 움직이고 금방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교무처장이 앉아서, 광양대로 가게 되어 있다고 누가 메모를 넣어주는데 학교 폐쇄되면 광양대에서 받아서 할 지도 모르는데 정관 모른다고 이런 수준으로 답을 하고 있으니……

○證人 金允鎬 정관에 어떻게 광양대학으로 귀속된다는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盧武鉉委員 그것은 나중에 봅시다.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證人 金允鎬 제가 정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에 어떻게 광양대학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盧武鉉委員 모르면 그만 합시다. 하여튼 이런 수준이면 이제는 교육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아무리 울어도 이 부분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證人 徐福永 盧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盧武鉉委員 이것 왜 이러세요. 지금 국정감사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만 하세요. 말을 그렇게 막지는 않았습시다.

김병현 교수님, 어떻든 학교가 회복불능상황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병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재단의 구 이사진영에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특히 사실상의 방해는 불구하고라도 법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면 회복하도록 지역 사회와 선생과 학생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證人 金炳炫 그렇습시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그것이 방해가 안 되려면 적어도 중립적인 관선이사라도 있으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만 해주면 해보고 안 되면 손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證人 金炳炫 예. 안 되면 저희들이 퇴교를 원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이야기지요. 마치겠습니다.

○李在五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까.

김병현 증인, 이흥하 증인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지요? 상고를 포기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시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몇 달 만에 복권되었습니까?

○證人 金炳炫 2개월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상고 포기하고 2개월만에 복권된 것에 대해서 교수사회에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시다.

○李在五委員 그 뒤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證人 金炳炫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은 바도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지금 이홍하 부부가 이홍하씨는 2심에서 포기하고 승복을 하고 2개월만에 복권되었고 서복영 증인은 대법에 상고를 했던 말이지요. 왜 그랬느냐, 일단 대법에 상고해 놓으면 대법판결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관계되는 자기네들의 학교에 실질적으로 총장도 할 수 있고 이사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주범인 남편은 억울한 것이 없다고 고등법원에 승복을 했는데 종범인 부인은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그 재판기간을 연기시키므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이홍하 증인에 대해서 2심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법인의 모든 공직사퇴를 약속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홍하씨 본인은 이미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홍하 증인이 나와서 재임용을 빌미로 각종 각서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봉급을 50%를 삭감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교수협의회에 가입한 교수들에게 탈퇴를 강요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탈퇴하지 않으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봐주고 그리고 봉급은 재단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공증까지 받게 했습니다.

○李在五委員 전체 교수들 및 일용직의 봉급을 50% 삭감시켰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제가 서복영 증인에게 다시 물겠습니다.

증인, 대학총장 맞습니까?

○證人 徐福英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과거에 고등학교 교사한 것 맞습니까?

○證人 徐福英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것 맞습니까?

○證人 徐福英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런 인격자로서 두 가지의 가장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파렴치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복영 총장에게 중징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병현 증인 맞나 보세요. 교육부에서 서복영 증인에게 중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가볍게 징계결정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징계권은 이사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징계 1개월을 주면서 8월31일에 징계위원회를 해가지고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징계기간을 주었습니다. 맞지요?

○證人 金炳炫 예.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장관, 잘 들으셨지요? 교육부에서 중징계조치를 했는데 경징계조치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8월31일날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징계 1개월 기간을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8월31일날 잠자고 나면 징계 풀려버렸지요?

○證人 金炳炫 그 사이에 학과장회의도 소집하고 그랬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朴承國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인간적이 아니라 반인간적이지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 여기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제가 차마 인간으로서 내가 공개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불출석 진단서 내놓고 다니는 사진까지 제가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홍하 증인이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했다, 누구누구를 찾아갔다 하는 것까지 제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히는 것은 자기 재단의 병원,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갖고…… 차라리 그 진단서를 첨부안했으면 몰라, 그것을 불출석한다고 딱 내놓으면 이것을 인격적인 행위라고 金炳炫 증인 보겠습니까?

○證人 金炳炫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李洪河 증인이 1심에서 풀려 나와서 광주사회에서 집행유예 기간중에 사면되고 난 다음에, 李洪河 증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교육부의 조치를 우습게 알

았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과거에는 구여권에 유착해 갖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지금은 신여권의 몇몇 관계자들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또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李洪河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서 그야말로 황제로 칭하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8월31일 국회 국감자료에 책임용 탈락 보고안해 놓고 그 다음에 39명 탈락시켜 버렸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름뿐인 장학금을 지급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심지어 전산과 황 민교수를 폭행까지 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교육부에서 실사를 나간다고 하니가 형식적으로 학교 단장공사도 하고 전시용으로 학교 꾸미기 행사를 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잔디조성, 가로등 설치, 건물외벽치장, 건물외장 공사를 하고 필요한 기자재 구입은 안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李在五委員 하남건설이 유명회사지요?

○證人 金炳炫 유명회사입니다.

○李在五委員 등록금을 합법적으로 횡령하기 위해서 하남건설을 만들었지요?

○證人 金炳炫 예, 산하에 있는 모든 공사를 하남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이 재단의 고등학교 출신 교수들과 학생,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잔디심기, 건물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 잡역을 시켰지요?

○證人 金炳炫 모두가 아니라 신복교수들입니다.

○李在五委員 그리고 광주예대, 한려대를 일방적으로 폐교를 선언해놓고 말든지 않으면 임용하지 않겠다고 교수들을 협박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광주, 전·남북에는 학생수가 자꾸 감소되니까 재단을 충남이나 경기도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아산과 화성에다가 분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이것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육을 빙자해서 사기를 한 것이지요?

○證人 金炳炫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李洪河 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것은 교육을 빙자한 사기집단 내지 범죄집단으로 규정해도 큰 착오가 없지요?

○證人 金炳炫 그렇다고 봅니다.

○李在五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이상으로 한려대학교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려대학교 관련 세분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委員長 威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학원 덕성여자대학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열분을 성명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姜明姬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順慶 전 총장직무대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金文奎 교수협의회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華 교무처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元國 전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和容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嫻 총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文永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相權 교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信 이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인사)

崔英哲 이사는 재판변론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承國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李文永 이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아태재단이사장, 경기대 석좌교수, 씨알의 소리 발행인, 함석헌 기념회 사업이사장을 맡고 계시지요?

○證人 李文永 예, 맡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지금 상근은 어디에서 합니까, 네군데에서 근무를 하나요?

○證人 李文永 예.

○朴承國委員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회가 지난 국감 때 박원택 이사를 왜 승인하지 않느냐고 묻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후 3개월이 지나서李文永 증인과 함께 승인되었고李文永 증인이 요구하는 3인을 교육부가 강압으로 선출하라고 하여 마치 정이사 체제처럼 증인 측근 4명과 재단측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

○朴承國委員 두번째 朴元國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1997년10월10일 이사장직을 해임당할 때 어떤 다른 사학재단과는 달리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여러 날 감사 끝에 학사관여 라고 지적하고 증인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1999년8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학사관여라고 하나 곧 시정하였고 교육부의 지시대로 잘 지켰다고 보이며 교육부가 잘못으로 해임되었다는 뜻으로 승소하고 증인은 오직 교육밖에 모르고 원칙적으로 살아가고 노력한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朴元國 맞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朴元國 이사장,李文永씨가 재단이사장으로 李相信, 鄭慶謨, 咸世雄씨가 이사로 온 것은 교육부의 강압입니까? 朴元國씨의 뜻입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李文永씨한테 찾아가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朴承國委員 알았습니다.

다음李文永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취임하자마자 대학의 제반규정의 개정을 빌미로 승진, 승급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임용조차 보류하여 54명의 교수가 1999학년도 1학기동안 교수신분이 공중에 뜬 채로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케 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지요?

○證人 李文永 한 4개월간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 다시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 3호에 의하면 기소증인자는 직위해제 대상인데 1998년12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방실침입, 퇴거불응 및 무단강의죄로 기소증인 韓相權을 이사진 개편 다음날인 1999년2월26일에 특채하기로 결정하였지요?

○證人 李文永 예, 특채했습니다.

○朴承國委員 평의회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선제를 도입하고 소위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이 다수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교양학부 소속 동문교수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각종 위원회를 교수협의회 중심으로 만들었지요?

○證人 李文永 그것은 아닙니다.

○朴承國委員 아닙니까? 사립학교법 26조에 의하면 대학평의회는 대학내에 두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법 정신과는 달리 대학의 인사를 포함시켜 재단의 산하에 설치하고 총장에게 본부 보직인선 등의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지요?

○證人 李文永 그렇게 안 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교원징계위원회는 원래 위원의 수가 5명이었으나 표결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임기중인 징계위원 교체를 시도하다가 불가하자 측근 이사 1명과 교수협의회교수 3명 등 4명의 측근을 추가하여 총 위원수를 9명으로 늘렸지요?

○證人 李文永 그런데 말씀하신 이유가 틀렸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임명되어 현재 전임강사, 조교수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양학부 소속 동문교수 30명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립학교법과 정관에도 없는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7명이나 되는 비교협 소속 교수들에게는 학생지도권, 교수회의 및 학사 참여권을 박탈하는 등 하루아침에 시보라는 임시직으로 전락시켰지요,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틀립니다.

○朴承國委員 틀립니까? 지금 저는 증인이 틀리지 맞는지 하는 것은 위증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교무처장 인선에서 총장이 제청한 인사를 거부하고 현 총장퇴진을 주도한 인사를 선임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관철시켰지요?

○證人 李文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朴承國委員 알았습니다. 증인은 지난 해 10월 자매대학인 콜드웰대학과 덕성여대 총장간에 합의한 교환교수의 해외파견을 5월 이사회에서 거부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이사회에서 부결한 바는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공병호 교수와 길형석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논문표절로 동일사안인데 길형석 교수는 3개월 정

직처분하고 총장이 징계요구한 공병호 교수는 징계하지 않고 있지요?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證人 李文永 잠깐 기다리십시오.

○朴承國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證人 李文永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朴承國委員 지금 시간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답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姜明姬 교수에게 韓相權 고발을 취하하라더니 취하하고 나니까 7월30일 이사회에서 姜교수를 징계요구한 일이 있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답 안하시는 것은……

○證人 李文永 아니 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 다음에 상근도 아닌 1주일에 화·목요일 2일 출근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급여만도 연 1억원, 판공비 1억6,000만원, 경기대로부터 2,500만원, 아태재단으로부터는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李文永 지금은 사실의 열거가 틀렸습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정관 직원정원표에 의하면 직원이 16명에 불과한데 증인이 지난 2월에 이사장에 취임한 후 재단직원을 50%나 되는 7명을 더 특채하여 23명이나 되지요,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지금 제가 그것은 기억을 안하고 있습니다.

○朴承國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국동에 있는 해영회관도 훌륭하고 과거 전임이사장들은 다 떨어진 소파를 계속 수리해 사용하면서 재단을 건설하게 키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인은 이 IMF시대에 해영회관, 학교내 이사장실을 비워둔 채 운현궁의 보수비용 23억원을 교비로 지출하고 원래 목적은 교육대학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280여평이나 되는 건물에 호화집기까지 넣어서 재단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질의가 무엇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재단사무실을 쓰고 있지요? 새로……

○證人 李文永 그럼 재단사무실을 쓰고 있는냐고만 물으세요.

○朴承國委員 그러니까 23억원을 들여서 수리한 재단사무실을……

○證人 李文永 글썽 길게 왜 물으세요? 쓰고 있는냐만 물어보세요.

○朴承國委員 보세요! 여기는 국정감사장입니다.

○證人 李文永 아니 제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朴承國委員 그러면 천천히 알아들으려고 하면 되지 될 문느냐고 그래요?

○證人 李文永 그런데 이유가 틀렸으니까 그렇지요.

○朴承國委員 묻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증인은 사무실 유지비, 차량기사 급료, 증인의 급료, 판공비, 과외직원 급료 등 증인으로 하여 덕성재단 지출이 연간 5·6억 이상이 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사학재단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데 이 돈은 100만원짜리 장학생을 500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본인이 받아 가는 돈은 400에 불과하지만 지금 그 23억을 들여서 감가상각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수리를 안한다고 보았을 때 1년에 약 2억씩 소모됩니다. 그런 엄청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증인은 이사 중 3인의 이사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교육부가 재판에 이길 수 있도록 변호사 2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송사는 교육부와 덕성학원 설립자인 朴元國 전 이사장간의 송사인데 어떻게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됩니까?

○證人 李文永 제가 말씀드릴 차례 아닙니까? 혼자만 말씀하면 안될 것같은데요. 제가 말씀할 차례입니까?

○朴承國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은 朴元國 전이사장의 초빙을 받아서 왔으며 대학이 안정되는 기미만 보여도 이사장직을 물러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朴元國 이사장이 초빙해서 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朴元國 이사장을 패소시키려고 거액의 재단 공금을 유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재단이사회의 결정과 법률의 고문 변호사가 긍정하는 입장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朴承國委員 그런데 변호사가 어느 변호사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부하고 朴元國 당사자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그 재판비를 왜 재단에서 부담합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되지요.

○證人 李文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李文永 제가 아직 말씀 안드렸는데요. 저한테 이유를 물으셨으니까요.

○朴承國委員 하세요.

○證人 李文永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朴元國 이사장께서 저보고 이사장으로 오라고 그럴 때에 그것이 모순이 되니까 재판을 취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당시에 재단이사장의 이름으로 저를 朴元國씨가 추천한다는 서면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는 2001년11월입니다.

○朴承國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임기얘기를 하지 않고……

○證人 李文永 아까 질의를 하셨으면 제 말씀을……

○朴承國委員 아까 답변 받았습시다.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證人 李文永 알아듣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차례예요.

○朴承國委員 제가 알았다니까요.

○證人 李文永 뭘 알아요, 말을 안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태의 성함이 누구세요?

○朴承國委員 朴承國입니다.

○證人 李文永 朴承國씨가李文永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承國委員 제가 알았다 말입니다.

○證人 李文永 어떻게 알아요?

○朴承國委員 제가 신문을 하고 이야기를 알아들었다 말입니다.

○證人 李文永 글썽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李壽仁委員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 말씀하세요.

○李壽仁委員 李文永 이사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으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 자기 주장이 명백한 것은 좋지만 우선 제가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10분밖에 질의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 대답은 저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다른 분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뜻을 정확히 못 알아들으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상근하는 곳이 어디냐 그럼 말뜻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

면 주관적으로 짧게 그냥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질의가 무엇이나' 이것은 벌써 이쪽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씨름 입씨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사장님께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사람이李文永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간결하게 그것이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곡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깊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몇 차례 판이 깨지고 시간만 낭비되고 서로한테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것을 깊이 좀 새겨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아주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지금 새겨들으셨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證人 李文永 그럼 이유를 묻지 마세요. yes와 no로만 답하게만 물으세요.

○李壽仁委員 그런 말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勳委員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朴元國 전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성학원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證人 朴元國 설립자라는 뜻이 애매한데요. 내가 그래서 이상규변호사한테 조금 아까도 물어보았습니다. 설립자가 뭐냐 하니까, 내 입지가 뭐냐 '설립자의 장손'이다 이것입니다.

○薛勳委員 설립자의 장손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車미리사여사가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朴元國 그렇지요. 맨 먼저 운영권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薛勳委員 車미리사 여사하고 宋씨 집안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모친이 宋여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朴元國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77년부터 덕성학원 제5대 이사장이었지



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97년6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지요?

○證人 朴元國 예, 받았습니다.

○薛 勳委員 97년에 金庸來 총장은 朴元國 증인이 지나친 학사개입을 한다는 사유로 해서 총장 사표를 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朴元國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薛 勳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결국……

○證人 朴元國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자진사퇴를 한 것입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金庸來 총장과의 갈등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證人 朴元國 오자마자 날 내쫓으려고, 그래서 교수협의회하고 공모해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게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각 처에 나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또 하나 총장의 권한을 확대해서 총장의 인사권을 더 달라든가…… 법에 보장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證人 朴元國 그런데 총장이 그 인사권을 달라……

○薛 勳委員 증인! 알았습니다.

덕성학원의 경영자 및 학원안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증인이 학원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2년간 학내분규를 방치했고 또 지나치게 학사개입을 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함으로써 해서 승인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맞지요?

○證人 朴元國 취소는 되었지만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이사장 승인취소 후에 학원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이 굉장한 시위를 했지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래서 李文永 이사장 맥으로 찾아갔지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래서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초빙하겠다고 약속했지요?

○證人 朴元國 내가 찾아간 것은 내 동생 朴元宅 이사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했는데 교육부

에서 10개월 동안이나 불법으로 승인을 안 해주니까 하도 답답해서 李文永씨하고 李海瓚 장관하고 가깝다고 하길래 李文永씨한테 좀 협조해 달라고 찾아간 것이고 후에 교육부에서 李文永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李文永 이사장을 덕성학원의 이사장으로 구두추천한 적이 있지요?

○證人 朴元國 이사료요?

○薛 勳委員 이사장으로 추천을 했지요?

○證人 朴元國 이사장으로 추천 안 했습니다. 나는 이사회에서 李文永씨 빼놓고 이사장으로 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추천한 그 이사회 날 오후 3시경에 이사의 한 사람이 와서 이사장직무대행이 李文永씨를 지지한다고 그래요. 또 자기도 그렇대요. 그러면 표 대결하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들이 그렇게 추천하고 지지한다는데 나로서는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李文永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 친동생인 朴元宅 이사가 상임이사로 되었지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리고 친조카인 박상진씨가 이사로 들어왔지요?

○證人 朴元國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薛 勳委員 모릅니까?

○證人 朴元國 들어온 것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薛 勳委員 알았습니다.

이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성학원의 재정을 맡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 철의 장막 속에 갇혀서 일체 모릅니다.

○薛 勳委員 됐습니다.

지금 친동생인 朴元宅씨가 상임이사로 들어와 있고 덕성학원의 재정관계를 친조카인 박상진씨가 맡고 있습니다.

○證人 朴元國 나는 모릅니다.

○薛 勳委員 이런데 李文永 이사장이 덕성학원을 찬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증인은 다니면서 李文永 이사장이 덕성학원을 찬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한다는데요?

○證人 朴元國 다니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薛 勳委員** 하여튼 이런데도 찬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證人 朴元國** 4 대 3이라면……

○**薛 勳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李文永 이사장이 동생을 상임이사로 정하고 친조카한테 재정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었겠어요?

○**證人 朴元國** 나하고 의논 안 했으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薛 勳委員** 그러면 지금 증인이 다니면서 해방대학, 해방대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금李文永 이사장 체제가 해방대학 체제입니까?

○**證人 朴元國** 지금李文永 이사장 체제가 해방대학 체제라는 것이 아니라 1997년 가을에 내가 해임 당했을 때 그 당시의 학교사태가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李文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朴元國씨가 덕성학원 이사장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證人 李文永** 예, 해달라고 한 것이 서면으로 있습니다.

○**證人 朴元國**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薛 勳委員** 가만히 있어요! 증인에게 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증인을 이사장으로 추대할 당시에 나를 추대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 의결로 정했습니까?

○**證人 李文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박승서 이사장직무대행이 편지를 보내와서 갔습니다.

편지에 '금번 이사회 선임결의에는 朴元國 전 이사장의 구두추천도 있었음을 참고로 침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덕성여대 이사회에서 증인을 이사장으로 초빙했던 이유는 그 당시 학교……

○**證人 朴元國** 나는 이사장만 추천했지 이사장으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薛 勳委員** 가만히 계세요!

○**李在五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기한테 물을 때만 대답을 하세요. 여기는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연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위

원들이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委員長 咸鍾漢** 계속 신문하세요.

○**薛 勳委員** 그 당시 학원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증인에게 묻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학원소요가 계속 일어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책임자로李文永 증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사장으로 추대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맞습니다.

○**薛 勳委員**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이사회에서 鄭慶謨, 李相信 교수, 咸世雄 신부, 이 3명의 인사들을 추천하셨지요?

○**證人 李文永** 예.

○**薛 勳委員** 그리고 이 3명의 후임인사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고 결국 투표로 결정했지요?

○**證人 李文永** 예, 그렇습니다.

○**薛 勳委員** 그 다음에 朴元國씨 조카인 박상진 씨를 이사로 맞이하고 증인께서 사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재정권을 맡겼지요?

○**證人 李文永** 예, 朴元宅 상임이사에게 묻지도 않고 제가 그 아들을 이사로 천거했습니다.

○**薛 勳委員** 韓相權 교수 특채 건은 이미 구 이사장 때부터 계류 중인 사건이었지요?

○**證人 李文永**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사회에 거의 반년 가량 올라와 있었던 안건입니다.

○**薛 勳委員**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하나가 韓相權 교수의 재임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李文永 이사장이 들어가셔서 학교를 이렇게 평화스럽게 만들고 정리하게 된 큰 공적 중의 하나가 韓相權 교수를 다시 복직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예, 그분을 복직시키고 제가 복직의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하는 보직교수들의 사표를 한 사람도 받지 않았습니다.

○**薛 勳委員** 알겠습니다.

평교수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보직교수는 비교수협의회 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모든 교수가 교협교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학과장이 교협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총장과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습  
니다.

총장께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  
서 “그렇지만 총장께서 임명하셔야 되는데…… 그  
러면 총장을 다른 학교와 같이 직선제로 개혁하리  
까?” 그러니까 총장께서 함구무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을 선거제로 하기로 하고 선거제  
도를 공고한 다음에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기 때  
문에 그것대로 선출했습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덕성여대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대학평  
의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대내에서, 이를 테면  
교수신문 등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학사운영의 귀  
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  
까?

○證人李文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분합니다.

○薛勳委員 그러면 대학평의회가 총장의 권  
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  
까?

○證人李文永 그것이 아닙니다. 이 대학평의회  
는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증인의 이사장으로서의 대우문제에 있어서, 전임  
박승서 이사장직무대행이 과거 金桂洙 이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장의 대우는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사회 결정을 누가 제안했  
고 또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證人李文永 12월31일자 이사장직무대행 박승  
서씨의 편지에 총장의 급여에 준하는 것을 주겠다  
는 내용과 아울러 금번 이사회의 선임결의에는 朴  
元國 전 이사장의 구두추천도 있었음을 참고로 첨  
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려 죄송합  
니다.

○薛勳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許男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  
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朴元國 전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10분입니다. 10분 동안에 물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답변은 한 1·2초 사이에 해야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다 써먹으면 내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것은 여러분을 무시하자

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니까 朴元  
國 증인뿐만 아니라 내 질의에 답변할 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90년 성낙돈 교수, 97년 韓相權 교수를 재임용하  
지 않은 것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후회합니까?

○證人 朴元國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그 후에 성낙돈 교수의 재임용 탈  
락에 대하여 교수들과 학생들이 농성하였는데 그  
때 다시 재임용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證人 朴元國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예, 아니오만 하세요.

97년도 교육부 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인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까?

○證人 朴元國 어느 지적사항인지……

○金許男委員 하여튼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證人 朴元國 예, 있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것을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證人 朴元國 거기서 지적한 것을 전부 시정했  
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지적사항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라  
는 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불만이어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만 하세요.

李文永 이사장을 사실상 관선이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 30초간 이야기하세요.

○證人 朴元國 제가 보기에는 관선이사입니다. 법  
률가 의견은 준관선이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재단 이사회의 자발적이고 자  
유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나 운동  
권들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기 때문  
에……

○金許男委員 대강 윤곽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李康嬾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98년3월1일 총장 취임 후 한 번도 교수  
회의를 소집한 일이 없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李康嬾 교수협의회는 소집을 하지 못했지  
만 교수연수회는 두 번 했습니다.

○金許男委員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證人 李康嬾 한 번은 하루……

○金許男委員 3년간이지요?

○證人 李康嬾 1년 반 되었습니다.

○金許男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비가 된 것입니다. 독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 교수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李文永 이사장님한테 물습니다.

증인은 덕성여대 이사장 직책 이외에 有보수 직책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證人 李文永 아태재단은 비상근입니다. 잡근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기념사업회는 봉사직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金許男委員 됐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말씀이 더디어서 잘못하다가는 10분 다 쓸 것 같아서 중단하고 한 가지 더 물습니다. 덕성여대에서 연봉 1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金許男委員 그리고 우리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사장이 봉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요?

○證人 李文永 저는 전임자가 받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金許男委員 전임이 잘못해서 퇴출되었는데 그대로 받으면 같이 또 퇴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證人 李文永 아닙니다. 전임자는 돌아가셨습니다.

○金許男委員 돌아가셨어도 잘못된 것을, 누가 도둑질 하나 나도 도둑질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법을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법을 몰랐다 그 말이지요. 전례에 따랐다 그 말이지요?

○證人 李文永 예.

○金許男委員 아까 다른 분도 했지만 여태까지 재단 이사장은 봉급을 안 받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장 선임시 특정인사를 이사로 취임시킬 것을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그런 적 없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덕성여대 자라리며 건학이념에 따라 시행되는 세미나식 수업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李文永 전 이사장께서 교양학부를 망쳐놓으셨습니다.

○金許男委員 그 다음 그러면 건학이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까?

○證人 李文永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총장의 권한인 학과장 임·면권, 대학규정 개정·발의권을 박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證人 李文永 박탈한 바 없습니다. 이미 남용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金許男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육부와 박원국 전 이사장님의 행정소송비용을 재단에서 지불한 것이 옳다고 봅니까, 잘못이라고 봅니까?

○證人 李文永 옳다고 봅니다.

○金許男委員 알았습니다.

박원국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李文永 저는 행정소송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분이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 가려면 재판을 취하하시라고 했을 때 저에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그만이지 돌아오려는, 이것은 일종의 어거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박원국 전 이사장님께 30초를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證人 朴元國 그 당시 재단이사장 직무대리가 이문영씨한테 서류를 보낸 모양인데 그 당시에 내가 추천했다 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른 이사님들이 추천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추천의사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만일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했으면 먼저 추천한 세 사람의 이사에 내가 포함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사람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나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사들이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교양학부를 망쳤다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 교양학부는 정말 한국 대학계에서도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망쳤는지 나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金許男委員 30초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장님께 물겠습니다.

회장은 이 학교의 분규를 어떻게 봅니까?

○證人 金文奎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국 전 이사장 체제 하에서 잘못된 여러 가지 폐단이 누적되어 가지고 분규가 일어났고 지금은 정상화를 해서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許男委員 다음에 총장님한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證人 李慶嫻 이문영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교협 회장의 말처럼 개혁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충분히 검증, 연구검토를 하시지 않고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許男委員**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金貞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한나라당 소속의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문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오실 때 취임연설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취임사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원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겠다' 이런 좋은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사학의 공익성과 학원내의 자유의사 존중이 공히 실현되기만 하면 거둬 말해서 시작만 하면 이 자리를 떠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사장 취임사 내용을 보면 자율성을 주고 그 다음에 대학이 안정이 되면 이사장직을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세 명의 이사를 강제로 사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측근인 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지요. 그리고 鄭慶謨 오산학원 관선이사장, 李相信 현 고려대 사학과 교수 등 3인의 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들을 쫓아내고 무리하게 바꾸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證人 李文永** 3인 문제는 저의 말이 아니라 박원국씨가 차관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문영 이사장 쪽에서 셋, 재단 쪽에서 셋, 이렇게 하면 학원이 안정된다는 의사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金貞淑委員** 박원국 전 이사장 대답해 보세요.

○**證人 朴元國** 내가 차관하고 두 차례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차관이 나한테 그랬습니다. 이문영씨를 이사장으로 하는 것은 장관의 뜻이다. 장관하고 똑같은 의견이다 하니까 장관의 뜻이나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문영씨를 이사장으로 하고 내가 세 사람 지명하고 또 세 사람은 교육부에서 추천하겠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내락을 받고 의논해서 옹낙을 받고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여섯 명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검토해 보겠다. 내가 그 당시 이사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니고 해서 그 당시의

이사나 관련자한테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내가 승낙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차관 만나서 격론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말어요……

○**金貞淑委員** 됐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오시고 나서 덕성여대를 안정되게 학사운영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권, 징계권 그 다음에 주요사항 심의의결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반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실로도 정말 많은 자료가 들어왔어요. 분류를 해보면 비민주적 학사운영이다, 교권탄압을 한다, 교육의 질도 떨어뜨렸다.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교수들, 동문회 이런 데서 오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지만 몇몇하게 나는 잘 하고 있다는 태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잘 하시면 이렇게 자꾸 갈등이 일고 불평이 들어오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문영 이사장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證人 李文永** 아닙니다.

○**金貞淑委員**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만 여쭙어보겠습니다.

학사행정에 대해서 총장의 권한침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학의 규정상 규정을 바꾸는 것 또 만드는 것 이런 재·개정 발의권이 총장에게 있는데 대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장도 모르게 이사회에서 재·개정할 수 있도록 정관 세칙을 개정했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證人 李文永** 그렇지 않습니다.

○**金貞淑委員** 이강력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證人 李康熾** 구 시행세칙에 의하면 「학교의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제청, 발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조항을 개정해서 「총장 및 이사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金貞淑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평의원회가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여러 가지 근거를 묻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는 정말 이것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측근

교수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재단이사 두 명과 교육교수에서 세 명 그래서 다섯 명을 위원으로 하고 30여명의 교수의 신분을 여기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협 소속이 아닌 교수 12명을 시보로 네 명은 연구소로 전락시키는 이런 것은 교권남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지요?

○證人 李文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조사도 않고 묻지 마세요.

○金貞淑委員 자꾸 부인을 하시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보세요. 더 말씀을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장의 교원임·면권도 박탈해 갔어요. 예를 들어서 교무처장 같은 경우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두 번씩이나 추천을 했어도 전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영 이사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지요?

○證人 李文永 그것은 너무나 거리가 멍니다.

○金貞淑委員 그러면 이강혁 총장 답변해 보세요.

○證人 李康熾 처음에 교무처장 후보로 제청을 이윤하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교수다 그래서 부교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왜 조교수를 하느냐 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선례, 관례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우는 교무처장 직무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그러셨습니다.

○金貞淑委員 전체적으로 여러 사항들이 진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을 일일이 다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 안 했다고 하실 것이 뻔한데 본위원이 쪽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권위적이고 교권을 휘두르신 것 같아요.

이 분규가 있는 대학에 내려가서 진정을 시키고 처리를 하라고 보낸 관선이사입니다.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격상 그래요.

지금 李文永 이사장께서는 아태재단의 이사장이시지요?

○證人 李文永 비상근입니다.

○金貞淑委員 하여튼 이 정권이 참 재미있어요.

아태재단의 이사장이 덕성여대 이사장으로 가서 1년에 연봉 1억 얼마, 업무추진비가 얼마, 또 승용차 고급, 무슨 283평짜리 사무실을 쓴다는 등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고,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참 유명하신 邊衡尹 이사장도 외대 이사장으로 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덕성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학 이사장 자리

가 권력의 전리품 자리가 아닙니다. 권력이 조금 생겼다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리더쉽이 아닙니다.

이것 수습해 달라고 내려 보냈는데 오히려 교수들이 더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갈등을 느끼고, 총장 권한도 박탈해 간 사례가 몇 가지가 있고, 55명의 교수들이 재임용이 한 학기동안 안돼가지고 붕 떠있는 상태로 강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수들의 사기를 꺾고 또 교수들이 불안하니까 학생들의 학업이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나는 것은 朴元國 전 이사장하고 교육부하고 소송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재단에서 돈을 줍니까? 지금 몇 천만원의 돈을 써서 변호사를 대주고 있고……

이런 것을 볼때 사학에 분규가 좀 있어서 잠깐 내려가서 해결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보내드렸는데, 무슨 영구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고 거기에다 너무 많은 호화판의 사무실을 두시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으로 사랑받고 있는 분이 가셔서 좀 더 봉사적으로 헌신적으로 겸손하게 민주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가셔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총장의 권한도 다 뺏고 前 이사장하고도 대화도 안하고 학사운영에 대해서 상의도 안하고……

○委員長 咸鍾漢 金貞淑 위원,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薛 勳委員 지금 일방적인 거짓된 얘기를 계속 해서 하면서 증인에게 확인도 안해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委員長 咸鍾漢 申樂均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우선 李文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사회가 관선입니까, 정이사회입니까?

○證人 李文永 관선이면 제가 안간다고 그랬습니다. 정이사입니다.

○申樂均委員 정이사회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정이사회에서 저를 이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결의를 해서 편지를 해 왔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법적으로 정이사회지요?

○證人 李文永 예.

○申樂均委員 호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권

남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총장의 임명권도 박탈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력남용을 한…… 아니면 그렇게라도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신가요?

○證人 李文永 크게 봐서는 학교가 지금 조용하고 수업이 한 클래스도 중단된 바가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인사권에 조금이라도 침해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인사권은 평교수와 학과장에게 무게가 옮겨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인 저나 총장이나 보직교수의 힘을 빼자는 것이 개혁의 취지입니다.

○申樂均委員 아까 남용은 아니고 바로 잡았다고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바로 잡은 것이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예.

○申樂均委員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금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저는 돈 문제는 차씨 가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李相信 이사, 현재 대학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證人 李相信 대학평의회에 이사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냥 이름만 불러 보세요.

○證人 李相信 그리고 징계위원회, 인사조정특별위원회입니다.

○申樂均委員 한 분이 그렇게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적으로 있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까?

○證人 李相信 다른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곱명이지만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이사들은 몇 분 안됩니다.

그리고 그 이사들중 한 분은 세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것이 증인이라는 얘기입니까?

○證人 李相信 예.

○申樂均委員 이것때문에 인사행정이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證人 李相信 독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李文永 이사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선임 이후 대학평의회를 설치했다는데 그 설치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李文永 총장께서 개혁에 관해서 아무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관준칙에 대학평의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총장이 계획적인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셨다 이런 뜻입니까?

○證人 李文永 예, 그렇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다른 기구와 역할이 상충되거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까?

○證人 李文永 일종의 비상기구입니다. 그 예가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던 한국외국어대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李康嫻 총장께 묻겠습니다.

현 이사진이 부임한 이후에 학교내의 제도나 변화에 대해서 총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李康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개혁을 이룩해야 되겠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개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검토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개혁에 있어서 경기대학의 鄭成鎬 교수 그리고 李相信이사, 이 두 사람이 주로 개혁원칙, 개혁안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申樂均委員 모두에 개혁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혁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절차나 과정의 문제만 문제라고 보신 것입니까?

○證人 李康嫻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申樂均委員 그런데 ‘개혁은 좋은데……’ 하는 그 얘기하고 아주 상반된 얘기인데요.

○證人 李康嫻 그렇죠.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申樂均委員 그런 절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총장님은 金許男 위원님 질의에 교수회의를 한번도 소집한 일도 없으시는데 그것이 의견수렴을 존중하는 분의 행동하고 일치됩니까?

○證人 李康嫻 대학의 학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

는데 이 학교에는 네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수……

○**申樂均委員** 총섭니다. 학내 사정모른다 치고요 총장님의 일관된 말씀을 논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수회의를 한번도 소집할 수 없는 정도의 학내 사정이라면 역시 이사장도 의견수렴이 그 만큼 어려웠지 않겠는가? 그랬으면 그런 비판적인 말하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康熾** 그래서 교수연수회는 두번에 걸쳐서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申樂均委員** 연수를 할 수 있는데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총장님이 정말 철학과 지성을 가지셨다면 그런 문제를 저희더러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작년 6월에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등이 증인에 대한 퇴직성명을 발표했고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이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證人 李康熾** 韓相權 교수의 복직을 왜 조속히 안시키느냐 이런 데에서 그 동안 3차·실장들이 총장이 퇴진하라 그러한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申樂均委員** 서명운동도요?

○**證人 李康熾** 서명운동은 모르겠습니다.

학내에 있어서 총장의 권한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金文奎 교수협의회장께 묻겠습니다.

교수협의회장으로서 지금 현재의 이사진을 임시이사라고 봅니까, 정이사라고 봅니까?

○**證人 金文奎** 법적인 것은 저희가 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와서……

○**申樂均委員** 이런 공식기구에서 법적인 것이 중요하지요.

○**證人 金文奎** 그러면 법적으로 정이사입니다.

○**申樂均委員** 지금 이사장하고 총장님하고 아주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前 이사장도 물론이고.

그런데 특별히 권력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 남용이 있다고 봅니까?

○**證人 金文奎** 우선 인사권 남용은 총장께서 먼저 하셨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이사장님께서 할

수 없이 제도개혁을 하신 것이고, 작년 1년 李康熾 총장님 재임 시절에는 소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플래카드가 두개 붙고 유인물이 돈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학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쪽 반대편측에서 성명을 한번 낸 바도 없고 공개질의 한 바도 없고 현재 개혁은 잘 되어 오다가 갑자기 국감을 앞두고 이상한 단체와 이상한 유인물이 뿌려진 것뿐입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제기한 그런 부정한 일은 현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證人 金文奎** 인정하지 않습니다.

○**申樂均委員** 그러면 학교는 안정돼 가고 있다고……

○**證人 金文奎** 朴元國 이사장측을 지지하는 일부 교수들의 어떤 고의적인 소요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申樂均委員** 지금 그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證人 金文奎** 전체 교수의 한 40% 정도됩니다.

○**申樂均委員** 그 40%의 교수협의회 사람들은 다 우리 회장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證人 金文奎** 똑같은 생각입니다.

○**申樂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李在五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분규대학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증인분들이 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대학 이사장이다, 총장이다, 교수다 그 직을 활용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증인의 자리입니다.

증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본인의 답변을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른 위원회나 다른 대학에서 있었으면 벌써 몇 차례 정회가 되고 국회모독발언으로 속개를 하느냐 마느냐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李文永 증인께서 위원이 물는데 상근이 무엇입니까 하고 계속 되묻는다든지, 맥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한 국회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그냥 넘어간 것은 평소에



李文永 이사장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는 사적으로李文永 증인과 관련된 분들이 솔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또 朴元國 증인에게서도 본인에게 질의할 차례가 오면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를 들어 '어떤 위원이 어떤 증인에게만 유리하게 묻는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두 분 간에, 지금 이사진과 전 이사진 간의 이야기를 서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국정감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서로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인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고압적으로 나가신다든지 권위적으로 나간다든지 증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일을 잘 풀어나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충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金文奎 증인!

현재 교수협의회 회장이시지요?

○證人 金文奎 예,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교육 위원들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많은 자료를 주셨지요?

○證人 金文奎 예.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

증인에게서도 증인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 위원에게 많은 자료를 주셨지요?

○證人 姜明姬 예,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사장님들보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문건들이 주로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金文奎 증인!

'친李文永 이사장 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체가 교수협의회, 대학평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金文奎 비상대책위원회 라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金文奎 예.

○李在五委員 그 다음에 姜明姬 증인!

'친 朴元國 전 이사장 측이다.' 이렇게 말을 붙인

다면 덕성여대 정상화추진교수회, 교권수호대책위원회, 전·현직 교학부장 이상의 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민주수호협의회 이런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證人 姜明姬 예, 맞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金文奎 증인은 친李文永 이사장 측의 단체들을 대표해서 증언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아야 되겠지요?

○證人 金文奎 예,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은 친 朴元國 전 이사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인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證人 姜明姬 예, 그렇게 보십시오.

○李在五委員 그래서 저는 두 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측에서 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 검토했고 모든 자료를 다 검토했습니다. 저는 짧게 묻겠습니다.

金文奎 증인이나 姜明姬 증인이 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복된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피차간에 너무 과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분에게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나 아니냐 이런 것은 확인하지 않고 추려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金文奎 증인!

구 재단 즉 朴元國 전 이사장 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97년6월9일부터 6월19일까지의 분규 당시에 교육부 민원감사가 있었지요?

○證人 金文奎 예.

○李在五委員 그 감사결과 朴元國 전 이사장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대학 학사행정 제도적 관행적 간섭, 교원임용심사 제청 간섭, 교무행정 전반 간섭, 대학 예산편성 집행 및 특별사업적립금 조성 간섭, 학교 회계 시설공사 간섭,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의 학교운영비 경비 전출 부적정.'

그 다음이 비민주적 인사행정으로 '주요 보직에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배제함' 그 다음에 '李康嬾 총장은 여전히 朴元國 전 이사장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朴 전 이사장 측근의 비리교수 등에 대해 불공정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논문포절 교수를 보직에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요약하면 교협측이 문제 제기한 것이 거

의 다 들어 있습니까?

○證人 金文奎 예,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

지금 姜明姬 증인이 속해있는 4개 단체 측에서 여러 가지 문건과 사진을 제기해왔습니다. 증인이 속해있는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이 낸 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李文永 이사장과 교육부의 결탁, 사실상의 관선 이사 이것은李文永 이사장의 경력이 그렇다.李文永 이사장은 이사장 선임 수락조건으로 교육부에 추천 특정인사 선임을 강요함. 자신을 포함해 현재 이상신, 정경모 등 4인. 따라서 7인중 4인이 과반수를 충족함으로써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상 장악한다. 이사장 선임후 朴元國 전 이사장 상대로 요구, 교육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朴 전 이사장을 배제한 교주 대표를 선임하여 공동명의로 자신의 이사장 임기와 보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학사행정 관여, 조직을 통하여 학사행정에 관여 제한, 교수 선거결과를 총장을 배제한 채 직접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대학평의회를 재단 산하에 두고 본부 보직 인선에 명령 지시, 교원인사 조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양학부 소속 교수의 인사에 관여함, 징계위원회를 통해 편파적인 징계, 55명의 교수 재임용을 한 학기동안 보류하여 학사 업무에 지장을 줌.’

다음 현 재단의 규정상 문제점.

보직 인사권. 원칙적으로 총장권한, 학과장 임명권 대학규정 개정 발의권 등 재단이 가짐.

다음 이사장의 도덕성. 연봉 약 1억원 즉 9,600만원인데 월 800만원.

그 다음에 이사장 사무실.

기존 재단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운현궁 양관의 호화집기 및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사용, 덕성학원에 상근하면서 아태재단 관련 업무, 합석현 기념사업 업무 등 덕성학원과 무관한 업무를 보고 있음.

이런 것들을 직접 써서 제출한 것 맞습니까, 본인이 쓰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을 위원에게 보낸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姜明姬 제가 보낸 것도 있고 저는 교수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동의하고……

○李在五委員 이런 내용의 문건을 낸 적이 있습니까?

○證人 姜明姬 예,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金文奎 증인!

지금 姜明姬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證人 金文奎 대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

아까 金文奎 증인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사실입니까?

○證人 姜明姬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사 선임과정은 저는 朴元國 이사장님이나李文永 이사장님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는 것은 이것이 문건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덕성여대문제는 결론적으로 현재 덕성여대 교내에서 교수들간의 증상모략 비방 또 전 이사장 측과 현 이사장 측간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런 진단에 대해서 金文奎 증인,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文奎 현 상황은 그렇지만 내용상 원인은 다르다고 봅니다.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 동의하십니까?

○證人 姜明姬 예, 동의합니다.

○李在五委員 현 이사장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관선이사 체제가 아니고 구 재단과 교육부의 추천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구성된 이사체제라고 보는데 金文奎 증인, 동의하십니까?

○證人 金文奎 예, 동의합니다.

○李在五委員 姜明姬 증인, 동의하십니까?

○證人 姜明姬 동의하지 않습니다.

○李在五委員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양쪽이 제출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저는 양측 자체에서는 해결점이 잘 안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현재의 덕성여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인지를 교육부 장관께 다음질의 시간에 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盧武鉉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金文奎 증인!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었을 때 “40% 정도가 조

직적으로 현 체제를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金文奎 예.

○盧武鉉委員 그러면 조직적으로 현 체제를 반대하는 교수님들은 얼마나 됩니까?

○證人 金文奎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극소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단이 공개된 바가 없고 국회에 다니는 명단 중에……

○盧武鉉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중립이거나 방관이지요. 방관이 많지요.

보통 이런 데에서 숫자놀음을 많이 하는데 진정서나 탄원서나 이런 데에 서명할 때 보면 서명해 놓고 자기가 무엇을 서명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證人 金文奎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숫자 갖고 승부를 가를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 이사장님이신 朴元國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라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제 손에 들어와 있는 자료, ‘참고자료(안) 덕성학원 사태의 경과개요. 1. 韓相權의 책임용 탈락’에서부터 시작되는 문건이 있는데 혹시 이 문건 대외비이고 법원 제출용인데 아마 다 끝났으니까 그 쪽의 주장을 담아서 보낸 것 같은데 이 주장 아시지요?

○證人 朴元國 압니다.

○盧武鉉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朴元國 전 이사장의 뜻과 같다 이 말씀하시지요?

○證人 朴元國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덕성학원은 이사장님이 주인이시지요?

○證人 朴元國 나는 관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盧武鉉委員 흔히들 ‘교주’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證人 朴元國 처음에 李文永씨가 나에게 교주라고 얘기했지 만날 때마다 교주라고 그러고 이사회에서도 교주라고 얘기했지 나 자신은 교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여기 2페이지에 ‘교주인 朴元國 이 사장을 축출하고 학원 탈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證人 朴元國 李文永 이사장의 말을 인용한 것 뿐입니다.

○盧武鉉委員 ‘李文永 이사장이 운동권 세력에 포

섭되어 그들과 야합하여 교주인 朴元國 이사장의 축출과 학원 탈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證人 朴元國 교주라는 말을 이사장이 사용한……

○盧武鉉委員 불리하든 유리하든 짐작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불리한 사실도 있고 유리한 사실도 있으니까요.

99년4월10일에 작성된 추천서에 보니까 ‘해임결의된 이행원 이사 후임 박원영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법인 덕성학원 교주 朴元國’ 하고 도장 찍힌 사본의 서류가 하나 있는데 이것 누가 만든 것입니까?

○證人 朴元國 그것 내가 했습니다.

李文永씨가 나를 교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교주라는 말을 자주 쓰셨다.

○證人 朴元國 그 전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교육부 감사를 받으셨지요?

○證人 朴元國 받았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계기가 된 것이 학원내 분규사태 때문이지요?

○證人 朴元國 예.

○盧武鉉委員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가 편파적으로 학교 뺏으려고 金庸來 총장과 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감사 자체를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證人 朴元國 교육부가 학교를 뺏을 수 없지요. 편을 들 수는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부당한 감사다 이렇게 이 유인물에 표현하셨지요?

○證人 朴元國 예, 부당합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했는데 또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러시겠습니까?

○證人 朴元國 미안합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증인에게 무례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朴元國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답변하기 복잡하게 질의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朴元國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왜 그러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것이 없습니까?

○證人 朴元國 처음이니까 제가 미숙해서……

○盧武鉉委員 처음이면 답변만 해주세요.

○證人 朴元國 알았습니다.

○盧武鉉委員 감사를 하기 전에 몇 차례 국내 굴지의 방송에 '덕성학원 비리' 이런 내용의 특집보도가 있었지요?

○證人 朴元國 예, 그랬었습니다.

○盧武鉉委員 제 생각은 교육부로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교육부를 바라볼 형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朴元國 그것은 맞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 조사결과에 관해서는 아까 李在五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이사장의 학사관여 이것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닙니다. 통념상 이사장은 학교주인이고 한데 학사관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7년3월19일에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법인과 사전협의 그 다음에 92년4월21일에 문서를 법인으로 보내는 기준 및 절차라는 이런 것을 정하신 일은 있습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 안 정하고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니다.

○盧武鉉委員 87년3월에도 미국에 계시고 92년4월에도 미국 계셨습니까?

○證人 朴元國 87년에는 내가 있었습니니다.

○盧武鉉委員 92년4월에는……

○證人 朴元國 그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니다.

○盧武鉉委員 어떻든 학교에 이런 문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證人 朴元國 맞습니니다.

○盧武鉉委員 있지요? 그래서 법인과 사전에 합의할 업무의 기준이 이 문서에 의하면 학사일정, 교육방법의 변경, 교육과정의 변경, 위원회의 신설, 개폐, 위원위촉, 신입생 편입생 요강 사정원칙, 교수초빙, 시간강사 위촉, 교직원 포상, 해외연수 출장, 건당 2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작 및 건당 300만원 이상의 제조 용역 시설계약 구입과 30만원 이상의 비품 집기, 가구폐기, 예비비 사용 등은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법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證人 朴元國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가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직무대리가 했든 어떻든간에 이사회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적한 내용 중에서 돈을 많이 아끼셨어요. 학교 운영비를 참 많이 매년 40억, 50억 이렇게 아껴 가지고 특별적립금을 자꾸 적립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일반 직원 기준수를 다 채우지 않았더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고 교수의 승진 T/O가 있는데도 승진을 안시켰다 이것이 또 교육부의 지적이고 어쨌든 관점은 다르겠지만 살림 알뜰히 하셨고 그러나 학교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학사활동을 바라는 사람 처지에서는 너무 짜다 그래서 안좋다 이렇게 보았습니니다. 그렇지요?

○證人 朴元國 견해의 차이입니다.

○盧武鉉委員 주인노릇을 너무 확실하게 하셔서 가지고 교수와 학생들이 혁신의 분위기 88년 열린 공간에서만 들고 일어난 것이 뒤에 수습이 잘 안된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수습과정의 대부분은 교수들과 타협을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는 바람에 결국 韓相權 교수를 마지막으로 잘라버리면 끝났는데 그만 그것이 터져서 여기까지 또 와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사장님께 한마디만 물겠습니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정치하는 사람도 많지요? 정치에 관여했다고 해서 무슨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 그것도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그것도 잠시 맡아 있는 일을 못하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도 안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證人 李文永 사실은 당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니다.

○盧武鉉委員 하여튼 정부와 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학재단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는 일은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李文永 그렇게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월급이든 뭐든 월 800만원을 받으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李文永 800만원까지는 안 받습니니다.

○盧武鉉委員 받는 것은 사실인데 명목은 무엇입니까?

○證人 李文永 봉급입니다. 갑근세를 냅니다.

○盧武鉉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넓은 데로 옮겼습니까?

○證人 李文永 옛날의 법인이 있던 데로 다시 옮

였습니다.

○盧武鉉委員 왜 그랬습니까?

○證人 李文永 그 법인 사무실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해영회관으로 임시로 옮겼다가 수리가 되니까.....

○盧武鉉委員 거기에서 증인이 단독으로 쓰는 공간은 몇 평이나 됩니까?

○證人 李文永 28평입니다.

○盧武鉉委員 28평정도 쓰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金日柱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국감하면서 9개 대학 중에 덕성여자대학이 마지막 대학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말씀 왜 하는지 모든 증인들께서는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6년에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나라를 가보았습니다. 소국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옛날 추장집 앞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 무덤이 웬 무덤이나 내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무덤은 영국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래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150년 전까지 식인종들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와 보니까 자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예요. 추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오늘 나를 잡아먹고 다시는 사람을 먹지 말아라. 피지라는 나라에서 그 이후에 식인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다워야 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됩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어떤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무너져버리고 학생을 지도해야 될 교수들이 학생을 선동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역색을 만들어 내고 학연, 지연, 혈연 만들어내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金文奎 교수협의회장에게 제가 물겠습니다.

朴元國 이사장이 왜 물러났습니까?

○證人 金文奎 학교를 사유물화 하고 지나친 전횡 때문에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제가 대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는 대학보다 월등 큰 대학의 재단 이사 7년2개월 하다가 표현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저도 더러워서 재단 이사직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양쪽에

서 보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 중에 보니까 96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나는 이런 줄 몰랐어요. 덕성대학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운현궁 근방에 있던 대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최우수대학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인정하세요?

○證人 金文奎 두번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日柱委員 자료 가지고 온 데서 보았습니다.

姜明姬 증인 이 두 가지 다 사실입니까?

○證人 姜明姬 사실입니다.

○金日柱委員 그러면 전 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지 제가 있던 대학도 사소한 문제는 다 있었어요. 서로 관포지교 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큰 대학이 된 것이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바람에 회생을 당한 것은 학생들뿐이 없어요.

다음 李文永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60년대에 제가 운영하는 연수원에 강의도 오시고 그때 트럭 타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교수들이 왔길래 얘기했습니다. 가서 말씀 전했을 것이예요. 월급도 받지 마시고 방도 한 대여섯평 정도로 줄이고 옛날 생각하시지요? 저는 저의 아버지가 잘 못해도 범법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벌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던 대학의 교수들이며 李文永 이사장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사람이나고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들이 여러명 왔길래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사행정에 전 이사장께서 관여했다고 해서 퇴출되었어요. 그런데 관여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조사를 했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李康嫻 총장께 아마 전 金桂洙 이사장은 제 스승입니다. 그리고 또 새 이사장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지금 새 이사장님과 이사회는 학사행정에 관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文永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학사행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日柱委員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李文永 선

생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나는 가셨다고 그래서 이 분이야말로 가장 대학의 모범 된 재단운영을 해낼 것이다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전부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다시 또 실망을 합니다. 저 분이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젊을 때 모든 생을 걸고……

저도 그때 다 걸고 한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누구누구 강의를 초빙하지 말아라 하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선생님도 모셨고 한완상 선생도 모셨고 金東吉 선생도 모셨고 여기 이 앞에 있는 李在五 위원도 모셔서 강의 듣고 당시 반골이라는 사람들이 다 초빙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번 죽겠느냐 하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안 계시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저께 邊衡尹 이사장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말년에 흙탕물에 뛰어드셨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반대세력과 지지세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왜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곳에 살다 왔습니다. 내 아버지나 내 형제나 다 처형 당한 자리에서 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매도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반국민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앞장서서 내일을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도 요즘 9개 대학 증인들을 모시고 얘기 들으면서 두 번인가 눈물 흘렸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웃 나라 일본에 가도 이런 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이사장실이라는 것이 대여섯평 짜리에 먼지 낀 책상 하나 있습니다. 또 미국의 동구·서구 우수대학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李康嫻 총장은 제 40년 넘는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앓은 모습을 보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어요. 덕성여대 총장으로 마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두 분이 손잡고 과거 60년대, 70년대에 피눈물 흘리면서 투쟁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지 선교사의 마지막 그것이 오늘 영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잘 정리해 주시고 아마 앞으

로 이것이 표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9개 대학에 대한 정리를 소신껏 해나가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 생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나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그분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입니다.

먼저 韓相權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97년도 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덕성여대 교수 협의회 몇 분하고 저를 만나신 적이 있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그때 초점은 제가 아는 한 덕성여대 朴元國 이사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학사개입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너무 지나쳤다……

金文奎 교협회장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때 내가 韓相權 교수 및 그 일행들, 다른 선배 교수들에게 “그런데 학교 공금을 크게 횡령했다는 심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증거가 없다, 내가 여러 가지를 들여다 보고 내 통로를 통해서 조사해 봐도 그것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같이 했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학교 돈을 절대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韓相權 교수 및 선배·동료 교수들한테 학사개입을 절대 못하도록 하라고 간곡히 얘기했지요.

물론 이사장의 권한으로 학사개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총장이 부당하게 하면 그것은 저지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수협회가 항의를 하든지…… 그러나 도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韓相權 교수를 부당하게 책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韓相權 교수가 복직되고……

처음에는 내가 韓相權 교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비록 새까만 후배지만 韓相權 교수가 학자로서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다는 것을 선배·동료들한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선배교수들한테 그 얘기를 하

면서 “韓相權 교수 같이 유능하고 인간성 좋고 품성 좋고 책임감 있는 학자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韓相權 교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일정한 선에서 선을 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韓相權 교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의 관료세력들 중 일부 세력들은 절대로 교수협의회 편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대대적으로 신문보도가 났지만 그것 가지고는 눈 하나 꿈쩍 안 한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朴元國 이사장의 거액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단계를 거칠 동안에 학교는 황폐해진다, 정말 내 말을 깊이 새겨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韓相權 교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후배, 동료교수들이 내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가서 주력부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라, 그리고 내 생각에 교육부에 강력히 접근하는 방법은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도 朴元國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도 선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랬지요. 그것 다 기억나시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내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朴元國 이사장이 거금횡령을 했으면 나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학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했지요. “지금은 일단 감사 때문에, 또 여론에 몰려서 교육부의 일부 비호세력, 절탁세력, 유착세력이 朴元國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지만 언젠가는 복귀를 획책할 것이다, 그러면 韓相權 교수의 복직과 학사개입 자제 또는 중지, 이런 선만 되면 朴元國 이사장이 학원의 재단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 와라, 그러면 나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힘껏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그래서 드디어 朴元國 이사장이 韓相權 교수의 복직은 물론이고 학사개입, 부당간섭을 하지 않기로 하고 朴元國 이사장의 재단복귀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토론 합의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왔었

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교협회장님도 나한테 직접은 못 들으셨겠지만 다 들어서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證人 金文奎 예.

○李壽仁委員 저는 朴元國 이사장님을 직접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뵈 때도 아주 실망을 했는데 오늘 자세나 태도 이런 것이 朴元國 이사장님께는 매우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차이사장님께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합의결과에 대해 저는 교육부 관료들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 내가 아는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고 간곡히 얘기를 했지요.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나야지 정말 학교가 황폐화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진이 구성되었는데 韓相權 교수가 복직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발단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 확인해 두고 李康嫻 총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의 산물 그리고 정상화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유나 상황설명 이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만 해주세요.

韓相權 교수를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證人 李康嫻 있지요.

○李壽仁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께서 교수회의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기발하게 넘어가셨어요. 교원연수회는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도 25년 동안 학교에 있었고 지금도 휴직 교수 신분입니다. 국회에 진출해서 현재 신분은 의원이지만 교원연수회하고 교수회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교수회의는 학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관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수회의를 연 적이 없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李康嫻 인정합니다.

○李壽仁委員 그것은 분명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5월에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교수회의 개척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월17일자로 교수협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8월 하순까지 열겠다고 했습니다. 8월말이면 학기말이니까 방학 전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치 시혜 베풀듯이 해놓고 열지 않았지요?

○證人 李康燧 교수연수회를 1박2일로……

○李壽仁委員 교수연수회하고 교수회의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늘러가는 거예요. 총장으로서 학교 구성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혀 안 지켰어요. 학교총장으로서 자격이 전무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낙돈 교수의 복직을 9월17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러면 제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계속 미루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총장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애정까지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듣는 것이 유감이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範珍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朴元國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李文永 이사장의 추천은 한 바가 없고 이사로서 참여하는 것은 추천한 일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누구의 권유를 받고 했습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李文永 이사장과 그 전에 한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식사한 적은 있지만 이사로 추천할 정도의 친분은 없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다들 좋다고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다들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朴範珍委員 아까는 이사선임문제를 가지고 차관을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證人 朴元國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朴範珍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교육부로부터는 아무런 권유를 받은 바 없습니까?

○證人 朴元國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습니까?

○證人 朴元國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관을 만나서……

○朴範珍委員 趙宣濟 차관입니까?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몇 번 만났습니까?

○證人 朴元國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李文永 이사장으로 하고 세 사람은 내가 추천하고 세 사람은 교육부가 추천한다……

○朴範珍委員 그때는 증인께서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된 상태 아닙니까?

○證人 朴元國 그렇습니다.

○朴範珍委員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왜 교육부에서 불러서 상의를 하지요?

○證人 朴元國 그것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朴範珍委員 교육부에서 주인으로 대접했구만요?

○證人 朴元國 그런 모양이지요.

○朴範珍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證人 朴元國 내가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차관이 추천하면서 아까 장관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證人 朴元國 예, 장관도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朴範珍委員 이문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영 증인께서 여기 이사장으로 참여하신 것은 누구의 권유를 받으셨습니까? 아까 편지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편지를 받고 가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편지 받기 전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李文永 편지 받기 전에는 아까 박원국 선생 얘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친동생을 이사로 운동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운동을 해준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박원국 증인을 처음 만났습니까?

○證人 李文永 처음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러면 그쪽의 권유를 받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證人 李文永 그 전에 저를 석좌교수로 부르고



있는 경기대 총장과 셋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선의의 관계에서 만났습니다.

○**朴範珍委員** 경기대학 총장하고 박원국 증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李文永** 성균관대학 동창이시더라구요.

○**朴範珍委員** 그래서 그 세 분이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證人 李文永** 아니오. 그래서 안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박원국 선생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친동생을 이사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찬씨한테 전화했어요.

○**朴範珍委員** 장관한테 뭐하러 합니까?

○**證人 李文永** 알았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朴範珍委員**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이사로 가는 것인데 장관한테 왜 전화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李文永**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가 서류를 받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朴範珍委員** 지금 덕성여대에는 대학 관련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대학평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는 정관에 있는 조직이고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는 정관에 없는 기구입니다.

○**證人 李文永**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넣었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인사위원회하고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는 다 인사를 다루는 기구지요?

○**證人 李文永** 차이가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다 인사를 다루는 것이지요?

○**證人 李文永** 차이가 있습니다.

○**朴範珍委員** 인사를 다루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證人 李文永** 다릅니다.

○**朴範珍委員** 다른 것은 제가 인정하겠다고요. 그런데 인사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까?

○**證人 李文永** 아닙니다.

○**朴範珍委員** 그래요?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면 '인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證人 李文永** 박원국씨가 34명의 교수를 덕성여대 출신을 계약제로 채용을 하고 교육부에는 전임교수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들이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자격이 있고 박사

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본 직위를 드리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를 다루는 기구 아니냐구요. 그것 하는 것이 인사 아닙니까?

○**證人 李文永** 글썄요…… 덕성여대 출신의 인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어 보느냐 하면 대학에서 인사상 재단의 횡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립학교법 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각급 학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법률상 정해져 있는 그 기구를 피해서 다른 조직에서 하지요?

○**證人 李文永** 특별위원회로 해서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朴範珍委員**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證人 李文永** 옛날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대로 하시려면 하라고 했는데 또 옛날대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1년 계약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원치는 않아요.

○**朴範珍委員**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安相洙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지금 덕성여대사태는 첫째는 구 재단이사장 박원국 이사장의 학교 운영, 학사 간섭 그리고 사학과 한상권 교수 등 20명의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장 승인취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서 지금 취소처분이 승소된 상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문영 이사장 등 현 재단 이사진의 또 다른 차원에서 학사 간섭과 편파 부당한 인사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반발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증폭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감의 요체는 과거에 대한 시비도 물론 가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유에서 이문영 이사장 체제가 출범이 되었든지간에 과연 덕성여대 분규 해결에 이문영 이사장 체제가 도움이 되느냐

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장께 묻겠습니다.

이문영 이사장은 지난 5월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대학교원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신설 재편하고 측근이사를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포진시킴으로써 학사 간여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데 총장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개정 발의를 하셨습니까?

○證人 李康熾 안 했습니다.

○安相洙委員 다음에 종전에 정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학과장 이하 임·면권은 총장의 권한이었는데 현재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변경한 것은 교원보직 임·면권을 적정배분하라는 교육부 감사 시정지시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康熾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安相洙委員 그 다음에 강명희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28일 및 9월10일자 징계위원회에서 이상신 위원이 '총장을 문책하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공언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證人 姜明姬 예, 하셨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런데 그날 회의록에는 이 발언이 삭제되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姜明姬 보니까 부분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날 9월10일날 징계위원회 얘기는 없었습니다.

○安相洙委員 이상신 증인에게 묻습니다.

이상신 증인은 고대 교수로서 덕성여대 징계위원회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證人 李相信 그런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총장께 묻습니다. 교무처장 등 특히 본부 보직자는 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총장에게 그 임·면권이 주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康熾 예, 그렇습니다.

○安相洙委員 이번에 총장이 교무처장으로 추천한 인사를 두 번이나 거부하고 또 반면에 현 이 총장의 퇴진을 주도한 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셨는데 맞습니까?

○證人 李康熾 예.

○安相洙委員 그 다음에 신화용 교수에게 묻습니

다.

당시 주무부서인 교무처의 업무를 담당했었지요?

○證人 申和容 예.

○安相洙委員 교무처장, 기획실장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證人 申和容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安相洙委員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문영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학의 제반 규정을 빌미로 승진·승급은 물론 재임용조차 보류하여 54명의 교수가 99년 1학기 동안 교수 신분이 없어졌다지요?

○證人 申和容 예, 맞습니다.

○安相洙委員 이문영 이사장님, 지금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하나하나 시간을 주시면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相洙委員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證人 李文永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安相洙委員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이사장님이 그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제도적으로 학사 간여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총장이 추천하는 기획실장이라든지 교무처장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했다는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證人 李文永 우선 교무처장 문제는 제가 제도를 만든 다음에, 이 제도만은 신중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장께서 말씀이 교무처장은 잘 정해서 이 자리에 교수협 사람도 오고 평교수 협의회 사람도 올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다……

○安相洙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보충신문중에 제가 선생님한테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문영 이사장을 존경합니다.

과거 어두웠던 시절 민주화에 온 몸을 던져서 많은 뜻있는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현 정권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소위 이 정권의 썩크탱크(Think tank)라고 할 수 있는 아태재단의 이사장이셨고 현재 김대중 대통령 정부 출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사장님은 사립대학이나 대학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교육부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安相洙委員 그러면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사장님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태도 같은 것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분, 조금 전에는 물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해찬이', 이해찬 전 장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과연 교육부가 이문영 이사장님한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삼엄한 국회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교내에서 감히 누가 선생님한테 고언을 드리겠어요. 저도 겁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證人 李文永 저한테 고언이 나온 것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니까 돌출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클래스가 중단된 바가 없습니다.

○安相洙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지요.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뒤에도 학내 분규가 해결되기는 커녕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용퇴하시고 다른 책임자를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證人 李文永 저는 발신인이 없는 괴문서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평교수협의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마는 권순경 교수한테 물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회장께서 만드신 것이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安相洙委員 본위원은 선생님 말씀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위 고액의 연봉 또 호화판 집무실 이것이 법이나 규정에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사장님의 개혁적인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상만을 개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설득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현명한 처신이 요구가 되고 그것은 또 본인의 명예를 지킴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영예로운 임무 수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證人 李文永 제가 봉급을 정한 것이 아니라 봉급을 정해놓고, 영어로 말해서 잡 오퍼(Job Offer)가 와서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이

제와서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安相洙委員 글썄, 저는 그렇게 흔들어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선생님이 가지자 마자 '이런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 필요없네, 내가 지금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나는 오직 이 학교가 잘 되기만을 바라네' 그러셨다면 저는 학내 분규가 있을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李文永 그런데 이 학교가 아주 열중해서 몰두해야지 개혁이 될까말까 한 학교입니다. 여기는 상근직입니다. 아태재단은 제가 비상근이 돼서.....

○安相洙委員 선생님, 교수집단은..... 선생님도 교수이시지만 그래도 최고의 지성들입니다.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면 저는 다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무슨 정책을 쓰고, 책략을 쓰고, 무슨 수단을 써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감히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보충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瑋鎬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瑋鎬委員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李文永 이사장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朴元國 전 이사장이 계실 때 학내 분규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증인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학내 분규가 계속되었습니까?

○證人 李文永 중복이 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 한번도 클래스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康熾 클래스가 중단됐다고 하는 말씀은 강의진행에 관한 말씀이라고 아는데 강의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아까 총장께서는 개혁을 속도조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도출해 가지고 했더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만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두 번째 학사일정이라든가 학교가 정상화 안돼 가지고 수업결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정상화되었다고 보는데, 李文永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예, 정상화가 됐습니다.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연수회가 왜 가능했었느냐 하면 교수협의회 사람과 교수협의회가 아닌 사람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가능해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누군가 괴문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부터……

○金瑋鎬委員 총장은 방금 李文永 이사장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康燦 예.

○金瑋鎬委員 다음 金文奎 교수협의회장님께 물겠습니다.

李文永 이사장 취임후 학교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金文奎 지금 학내 평가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교가 제대로 모습을 찾는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혁의 모범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총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康燦 전적으로 동의는 못합니다.

우선 학내의 교수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도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평가를 그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그러니까 국감에서 여러분을 부르기 전까지도 그렇다 그 말입니까?

○證人 李康燦 그렇죠.

○金瑋鎬委員 이 점에 대해서 李文永 이사장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동의 안합니다. 생긴 후의 일입니다.

○金瑋鎬委員 되풀이 됩니까라는 총장께서는 교수협의회를 한번도 안갔고 다른 스타일로 두 서너 차례 가졌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안하다든가 잘못되었다든가 민주적인 총장으로서의 모습이 결여되었다든가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은 없으십니까?

○證人 李康燦 사실상 학내 분위기로 봐서 공식적으로 교수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총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도 화합을 이루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그러면 李文永 이사장께서 언급하셨듯이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해 가지고는 그래도 연수회라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시간 이후라도 교수협의회같은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겠습니까?

○證人 李文永 그렇지 않지요.

○金瑋鎬委員 그러면 李文永 이사장은 덕성학원 민주수호협의회라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모릅니다.

○金瑋鎬委員 이 단체는 덕성여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성됐다는 일부의 얘기도 있는데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證人 李文永 모릅니다. 회장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金瑋鎬委員 덕성학원 민주수호협의회가 본위원회에 보낸 편지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문건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 역사상 유례없이 재단 이사장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강화하여……' 이것은 李文永 이사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강화하여 자신의 장기적인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그 다음 '李相信, 鄭慶謨, 咸世雄 등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 정족수 일곱사람중 네 사람을 차지함으로써 모든 의결권을 장악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사회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저는 약속을 존중하기 때문에 朴元國 선생이 차관한테 얘기한 것을 따른 것 뿐입니다.

○金瑋鎬委員 다음에 '대학내에 위원회를 마구 설치해 가지고 자신이 데려온 인사들을 학교행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문건안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이 개혁을 안하시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뿐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金瑋鎬委員 총장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합의에 도달하려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까?

○證人 李文永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고

하고 그랬을 때 아무 이의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金瑋鎬委員**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기금으로 거액인 23억을 들여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한 운현궁에 자신의 집무실을 호화판으로 마련하는 등 덕성학원 재단이 학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십년간 적립해 온 2,000억원을 몰쓰듯이 썼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李文永** 23억을 들여서 집을 고친 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쓰듯 쓰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돈 문제 쪽은 죄송하지만 제 쪽은 아닙니다. 저는 학원담당쪽입니다.

○**金瑋鎬委員** 李文永 증인에게서 말씀하신 23억원은 전부터 계획 세워졌다는 것 총장은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康熾** 예.

○**金瑋鎬委員** 그렇다면 이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몰쓰듯이 썼는데 국정감사가 발표되자 재빨리 교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대폭적인 월급인상 조치를 취하려고 획책했었다' 하는 것이 있는데李文永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文永** 저는 그동안의 지론이 우리와 비슷한 대학보다는 조금은 높여주자는 지론입니다.

○**金瑋鎬委員** 그리고 아까 이사장 자리는 상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관에 정해진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證人 李文永** 상근자가 둘이 있습니다. 저와 상임이사 두 사람입니다.

○**金瑋鎬委員** 상임이사는 상임이 붙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하는데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상근이사나.....

○**證人 李文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전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朴元國** 나는 월급 안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근인지 무엇인지 이런 말은 필요가 없었고 내가 그만 둔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일절 철의 장막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金瑋鎬委員** 그런 말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사장으로 계실 때는 보수받으셨습니까?

○**證人 朴元國** 상근은 상근했으되 정관에 상근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상근으로 일했지만 월급은 안받았습니다.

○**金瑋鎬委員** 교육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 정관에 언제부터 상근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이사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고 수업결손도 없고 교수들도 비교적 맡은 바 임무를 잘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이사장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학이념과 건학소신 당초의 심정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證人 朴元國** 우리 학교는 이름과 같이 덕성여자대학입니다. 덕성학원이고 덕성여자중·고등학교이고 덕성이니까 덕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학부를 창설해서 몇 십년동안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李文永 이사장은 그것을 내가 망쳤다는데 나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고 그것을 지금李文永 이사장은 없애려고 그리고 있습니다.

○**金瑋鎬委員**李文永 이사장이 오셔서 정상화되고 분규가 없고 수업결손도 없고 교수들도 잘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전 이사장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朴元國** 학교가 정치로부터 좀 중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교직 중심의 대학이 되면 정말 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잘되면 나는 이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는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李在五委員** 잠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이제 증인들이 다 차분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李文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李文永 증인에게서는 이번 국감이 있기 전에는 일체 학교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李文永**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委員** 權順慶 증인, 1999년2월17일 여자대학교 정상화추진교수회 이름으로 '權順慶 계약학과 전 총장 직무대리, 주영숙 교직과 전 총장 해서 재직 교수중 총 인원 133명중 과반수 약 54%에 해

당하는 1차 서명자 71명의 교수일동이라는 각 단과대학별 가나다순이라는 이 문건을 낸 적이 있지요?

○證人 權順慶 예.

○李在五委員 여기에 71명의 교수일동이 이 문건에 다 동의했습니까?

○證人 權順慶 예, 동의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李文永 증인의 이야기대로 국감 이전에 학교가 지극히 조용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증언이네요?

○證人 權順慶 그 문건은李文永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 것일 겁니다.

○李在五委員 더욱이 지난 2월4일李文永 교수가 학교법인덕성학원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4일.

그런데 이 문건은 날짜별로 2월17일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權順慶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에……

○李在五委員 이 문건 낸 것은 맞습니까?

○證人 權順慶 낸 것은 맞아요.

○金瑋鎬委員 71명의 교수가 동의한 것도 사실입니까?

○證人李文永 예.

○李在五委員 그 당시에 덕성여대 교수가 133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權順慶 맞을 것입니다.

○李在五委員 이것이 맞는 문건입니까?

○證人 權順慶 예.

○李在五委員 증인, 여기서 답변 잘 하십시오.

다음 申和容 증인, '현 이사진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관선이사체제가 아니고 구재단과 교육부의 추천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구성된 이사체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 이사진의 구성중 과반수가李文永 이사장측 인사로 구성되어 사실상 의사결정이李文永 이사장의 의사에 의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문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申和容 저는 관선성 이사라고 생각을 하고 의결정족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면 제가李文永 증인에게 네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李文永 증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 퇴근시간까지 덕성학원에 출근하고 퇴근하십니까?

○證人李文永 저는 거의 매일같이 덕성법인에 나갑니다.

○李在五委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가십니까?

○證人李文永 토요일은 좀 빠집니다.

○李在五委員 지난 번에李海瓚 장관이 있을 때 제가 '이사장도 봉급을 주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사장은 봉급을 줄 수가 없고 상근이사 한 사람에게만 봉급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사장에게 봉급을 주려고 했던 규정을 저희들이 법안 개정을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사장은 상근도 아니고 현재 사립학교 이사장이 이렇게 봉급을 받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해서 이사장이 봉급을 안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봉급을 받고 갑근제도 낸다고 아까 盧武鉉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지요?

○證人李文永 예.

○李在五委員 李康熾 증인!

李文永 이사장이 오셔서 학사개입을 한다고 그렇게 증언하셨지요?

○證人 李康熾 예.

○李在五委員李文永 증인!

덕성학원과 교육부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2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인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李文永 예, 사실입니다.

○李在五委員 이것은 소송 주체가 朴元國 전 이사장 대 교육부이기 때문에 이것은李文永 이사장이 패소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는 박원국 이사장과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재단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李康熾 총장, 말씀해 보세요.

○證人 李康熾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在五委員李文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李文永 우리가 한 것은 주변호사는 교육부에서 내는데 규정상 보조를 낼 수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그러니까李文永 이사장 체제에서 변호사비를 내는 것이지요?

○證人李文永 물론이지요.

○李在五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 62조에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26조2항에 대학평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에 대학교원 인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성학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없고 교원인사특례규정 제10조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원인사특례규정 10조라고 하는 것은 덕성학원에서 만든 것입니까,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證人 李文永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습니다.

○李在五委員 교원인사특례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薛 勳 위원, 말씀하세요.

○薛 勳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의 이 사태를 본질을 놓고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덕성대학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 이사장인 朴元國 이사장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학교운영을 해왔습니다. 독특한 방식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면 그렇고 사실대로 말하면 파쇼적인 형태로 학교운영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침체가 되고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교수들이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있고 그러자 학교에 분규가 생기고 이 분규를 진정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교육부가 덕성대학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박원국 이사장이 타협책을 내세운 것이 관선이사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덕성대학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朴元國 이사장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朴元國 이사장이 덕성대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朴元國 이사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바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朴元國 증인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證人 朴元國 만 70세입니다.

○薛 勳委員 고령이십니다.

지금 朴元國 이사장께서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證人 朴元國 가족도 없고 독신입니다.

○薛 勳委員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신 것이지요?

○證人 朴元國 한 적이 없습니다.

○薛 勳委員 그래서 후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元國 이사장께서는 오랫동안 호텔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신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거주하셨는데 얼마 동안 호텔 거주를 하셨습니까?

○證人 朴元國 내가 호텔 거주한 지가 미국의 콜롬비아대학에 3년동안 교환교수로 가 있었고 그 후에 동경대학에 연구원으로 1년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과세로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집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팔고 하나는 집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호텔생활을 했습니다.

○薛 勳委員 호텔생활 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朴元國 한 2년 될 것입니다.

○薛 勳委員 2년 동안 어느 호텔에 계셨습니까?

○證人 朴元國 신라호텔에 있었고 리츠칼튼에 1달, 하얏트호텔에 1달, 힐튼호텔에 있었습니다.

○薛 勳委員 나머지는 힐튼호텔에 계셨고……

○證人 朴元國 예.

○薛 勳委員 호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네요.

○證人 朴元國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많으나 적으냐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민이 생각하는 비용과 재벌이 생각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薛 勳委員 지금 만일에 현 이사진 체제가 흐트러져서 다시 학원분규가 생기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朴元國 이사장은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朴元國 법대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薛 勳委員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朴元國 이사장께서 후사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李文永 이사진 체제에서 朴

元國 이사장의 친동생 박원택씨를 이사진으로 앉혔고 거기에 다다 중복장치로서 박원택 이사의 친아들 박상진씨를 이사로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분에게 재정권 일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李文永 이사진 체제에서 적어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돈 문제라는 것이 학교운영의 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朴元國씨 그 쪽에 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元國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내 의사와는 반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박원택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카 박상진을 한 것은 내가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薛 勳委員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사장께서는 후사가 없고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관계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혈육이나 다른 없는 친조카를 뒤를 이을 순서까지 만들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른 분규대학과는 다른 덕성여대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되어야 되고 화합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났느냐 朴元國 이사장의 독특한 판단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李文永 이사장이 돈을 많이 받니,李文永 이사장이 갖고 있는 사무실이 크니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참으로 잘 해왔다는 것이 지금 학내분쟁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학내 사회에서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논쟁을 벌이면서 잘 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잘 안되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 말씀하세요.

○李壽仁委員 李文永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朴元國 이사장님은 오늘 처음 뵈고 처음 느낌이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령인데다가 홀로 독신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 정황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학사개입에 부당한 간섭’ 이런 문제는

교수한테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학교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의 성격이나 뭐나 이런 것을 감안 하셔서 이사장께서 접촉까지 하시고 이사장 취임 하시도록 요청까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 성격 이것을 감안해서 좀 더 이 성격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접촉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립학교법 26조일 것입니다. 상근이사에 관해서는 봉급을 주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저는 사립대학에 관련되어서 그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아마李文永 이사장님께서도 사립대학에 근무를 하셨겠지만 그런 것은 저만큼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사학운영에 관해서 관찰할 기회 또 들을 기회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사장은 봉급을 받지 않고 상임이사만 보통 줍니다.

그러나李文永 이사장님께서서는 지금 법률을 모르고 그 전 관행, 덕성여대의 이사장 봉급체계는 전직 김계수 이사장님께서 그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文永 김계수 선생이 받았듯이 저도 받고 있습니다.

○李壽仁委員 김계수 선생께 그때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께서서는 관행상으로 보면 그것은 명백히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개인적 명성에 비추어 보면 관행을 모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죄없이 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셔서 이 학교에서 봉급을 비록 법률적으로 맞더라도 안 받으시든지 이사장 개인 생활상 여기에 전념하시니까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실히 요구된다면 그 법적해석을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證人 李文永 예.

○李壽仁委員 그리고 朴元國 이사장님께 제가 최초로 한마디 말씀을 묻겠습니다.

저는 처음 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후배교수한테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제가 자세히 조사를 했



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는 더군다나 이 국감장에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조사한 전 대학에 대한 내용물, 교육부에 대한 내용물도 처음으로 합니다.

교육개혁은 급진적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찬히 하고 당해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하면 제일 좋지만 원래 대다수의 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날이 변하는 시류, 조건, 의식, 관행 이런 것이 바뀌고 대학교수는 더군다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바뀌고 학생들은 더더구나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학교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박이사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고집불통이시고 한번 생각하면 바꾸시지 않고 한번 원한을 맺으면…… 韓相權 교수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년 전에 성낙돈 교수를 해임했을 때 그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7년 뒤에 재임용을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韓相權 교수, 韓相權 증인도 여태까지 한번도 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내가 선배교수나 동료교수나 새까만 후배, 내 제자별인 韓相權 교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요?

○證人 韓相權 예.

○李壽仁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집념에 사로잡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의 태도가 이사장님한테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자기 생명처럼 아껴야 될 덕성에 20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여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金桂洙 전 이사장님이 봉급을 받는다는 것 또 그때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정한 자세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를 적대적으로 한다면……

이사장님 제가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돈 때문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신라호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어도 그것은 대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 돈을 크게

떼어먹고 독선, 전횡 여러 가지 횡포 이런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학교 돈을 떼어먹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횡, 쉽게 얘기하면 고집만 꺾고 사람을 좀 신뢰하시면 韓相權 교수 복직을 하고 전횡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국감장에서 처벌이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朴元國 이사장님의 복귀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두 가지 조건 충족해서 하면 나도 그러면 총력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합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음양으로 저도 노력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李文永 이사장님 체제가 신문에서 간단히 보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는 그 전 金桂洙 선생이 돌아가신 것은 알고 그 이사장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국감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저는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의 자세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숙고를 하십시오. 주변에 상의하실 분이, 믿을 만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그러셔도 적어도 한두 분은 들을만한 분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 이런 이해를 떠나서 이사장님께서 연세도 그만하신 분이 정말 이것은 새겨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겨들어 주시겠어요?

○委員長 咸鍾漢 그만하고 나중에 하십시오.

○金日柱委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개 대학 증인채택하고 듣는 중에 대구 대학이 아주 모범적 사례가 있었어요. 이사장 李成大씨, 총장 朴鉉炘 그 다음에 교수협의회장 金春一 현 회장입니다. 제가 질의 중에 대구대학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장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제가 그날 눈물 흘린 날입니다. “화합하겠습니다” 하고 쾌히 답을 해요. 그런데 현 교수협의회장 金春一 교수보고 물어보았더니 화합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전 교수협의회장입니다. 우리 韓相權 교수같이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퇴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재판해 가지고 승소해서 복귀되나 보아요. 그 張華煥 교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제가 가장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지만 저는 가슴을 열고 다 용서하고 화합하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여기서 악수하고 제가 초  
대까지 받았어요. 화합하는 날 대구대학에 제가 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韓相權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지요?

○證人 韓相權 예, 맞습니다.

○金日柱委員 지금 존경하는 李壽仁 위원 저런  
발언을 잘 안하는데 만약에 朴元國 이사장이 복귀  
되어 들어온다고 하면 친형제처럼 친부모와 같이  
할 자신이 있어요?

○證人 韓相權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권한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金日柱委員 아니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  
는 것이에요.

○證人 韓相權 그러려면 朴元國 이사장님의 교육  
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日柱委員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나를 잡아  
먹고 다시 사람을 잡아먹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성직자다워야 되고 교수다워야 되고 정치인다워야  
되고 용서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어야 합  
니다.

그래서 저는 張華煥 교수는 앞으로 형제처럼 지  
낼 것이에요. 나는 대학교수 가운데 그런 사람 별  
로 못 보았어요. 제가 있던 대학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학교를 리드했던 설립자, 여러분 대략 짐  
작하실 것이에요. 그 분은 구두 한 켤레를 11년 동  
안 신었고 30대에 살던 집에서 72살까지 살았고  
학교농장에서 배추 한 포기 들어가도 값있고 집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 학교 정원에 심고 그래서 아  
까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金文奎 교수협의회장, 제 방을 찾아왔을 때 분명  
히 제가 얘기했지요? 이사장님 보고 방을 조그만  
것 쓰고 책상도 조그만 것 쓰고 월급은 받지 말라  
고 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지요?

○證人 金文奎 예.

○金日柱委員 제가 보통 같으면 얘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장에  
게 권한 드리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않아요. 총장 나  
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마할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회의 한번도 소집 못할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저 사람 회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고 학생운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장  
에게 권한 주고 한번 기회를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金日柱 위원님의 충정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韓相權 교수, 우리 작년에 만나서 제가  
朴元國 이사장님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문제  
를 아마 얘기를 드렸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韓相權 예, 그래서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뵙고 한번 찾아 뵙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올 필요  
없다고……

○委員長 咸鍾漢 오늘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을 아마 韓相權 교수는 잘 알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왜 요즘 우리가 흔히 방에  
다 써 붙이는 해불양수라는 이야기 있지 않소 물  
은, 바닷물은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고 다 거둔다  
고 우리가 어떻게 바닷물에서 흙탕물 가려내고 진  
흙 가려내고 하오 그러니 하나로 화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마음을 여시고 넉넉  
하게 생각하시면 아마 朴元國 전 이사장님도 옛날  
같은 마음 안 가지시고 학교를 위해서 당신은 이  
렇게 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韓相權 교수는 이것이 대학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위한다는 것은 똑같은데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학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게 서로 이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韓相權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상으로 덕성여자대학교 관련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관련 증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상으로 3개 대학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모  
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8시50분 속개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20시55분 감사계속)

○委員長 咸鍾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  
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

들의 첫 번째 발언시간은 각각 5분 이내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申樂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樂均委員 먼저 한려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한려대 폐쇄계고조치 당시 마련한 종합정상화방안에 따르면 한려대학교 폐교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광양대에 투자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李洪河의 재산가치를 증식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범죄자이고 부도덕한 李이사장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게 한다면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현재 이사진이 더 이상 학교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회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임시이사들이 정상화 가능성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폐쇄시 법인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중부대학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부대 심사결과 이 학교의 경영진은 설립초기부터 교직원의 월급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오로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李普淵 이사장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만큼 법원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들의 이사승인을 취소할 의향이 없는지요?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그 동안 회생을 당한 4,000여 학생이 더 이상 재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이사승인 취소시점을 재판결과에 맞춘다면 길게는 1년 이상 끌면서 이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결국 국 학생들만 다시 희생될 것입니다. 이 경우 모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금품을 주고 임용된 현직 교수들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성여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덕성여대의 경우 朴元國 전 이사장이 고법에서 승소함으로써 확정판결에서도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교육부의 당시 시정조치 자체를 심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다만 교육부가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당시 계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朴 전 이사장이 복귀했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수고하셨습니다.

金許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許男委員 金許男 위원입니다.

장관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문제가 있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불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봐준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사립대학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해야만 모든 것이 됩니다.

내가 장관님께 이것 저것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 그르다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나타나면 거기에 의해서 법대로 집행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장관님이 법대로 집행 안 하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한 것을 차관님이 좀 적었습니까?

○教育部次官 李元雨 예.

○金許男委員 그러면 18일 아침까지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장관님은 바쁘니까 차관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류상 답변한 것을 내가 18일에 보고 이만하면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봐주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격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세상에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법대로 안 해서 이렇게 법대로만 잘 해보소,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선진국가입니다. 독일이나 구라파에 가보고 남아프리카 이쪽에 가보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법대로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18일 아침까지 내가 질의한 것을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다음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委員 이제 우리가 9개 대학에 대한 국정 감사를 끝내면서 몇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金德中 장관께서는 원래 대학에 계시다가 대학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장관 자신의 대학운영처럼 모든 대학이 다 그러리라고 선의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각종 유형의 대학의 비리와 독선과 전횡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대학들의 그런 잘못된 점을 낱알이 보였기 때문에 각종 대학들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내용들을 쇄신할 수 있는 金德中 장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대체로 분규가 있거나 비리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화를 찾고 또 비리를 근절하고 일반대학처럼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분규와 비리에 휩싸였던 주체들이 어떻게든 다시 경영권을 찾고 학교운영에 관여해 보기 위해서 획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하나의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리가 있고 분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육부에서 관여해서 사태를 들여다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시이사를 보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수방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비리의 주체들과 같이 텅구는 이런 것이 우리 대학 교육행정의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바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비리와 분규가 있는데 대해서 적극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개 대학 말고도 청주대학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의 운영에 간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는 좋아지더라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9개 대학 감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런 입장에서 고

등교육의 운영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9개 대학문제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결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번 상지대학 조사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김문기씨가 적어도 용공조작 건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절대적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하자고 했는데 모든 위원들이 다 알았는데 고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위증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없이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불참한 증부대 李普淵 이사장,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김문기씨와 이보연 증인에 대해서 두 사람을 고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壽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壽仁委員 李壽仁입니다.

장관님께 묻습니다. 우선 첫째, 설립인가의 문제점에 관해서 두 마디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91년부터 95년까지 이흥하씨에게 4개 대학의 설립인가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남대 의대, 서남대 아산분교 그리고 설립을 인가해 주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경기도 화성의 안산산업대까지 계산하면 7개 대학을 설립 인가해 주었습니다.

또 이흥하씨는 설립인가 요청 당시 한결 같은 수법으로 학교 설립의 가장 중요한 현금출원증서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온통 가짜 대학을 7개씩이나 인가해준 과정과 교육부의 결재명단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하고 내일까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흥하씨의 4개 대학은 아직까지 설립요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2회 이상 현장조사를 하고 설립요건을 만족시켰나 충분히 확인한 뒤에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장조사를 한 팀의 명단과 그 결재라인도 명확하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감사, 조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육부의 민원사항 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97년2월에 이홍하씨의 광주예술대를 감사한 교육부 관료 5명은 비리사실이나 위법사항은 없고 오히려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적극적인 투자욕을 가지고 있고 교수협의회 교수는 공연한 민원제기로 공권력을 낭비시키지 말라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에 검찰 수사결과 426억원의 횡령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의 감사팀이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학마피아와 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확고히 생각합니다. 당시의 감사관계자 명단과 그리고 그 보고의 결재통로의 명단 이것을 정확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98년6월 교육부의 한려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교수협의회가 자체조사한 한려대의 국고지원금 유용을 확인요청했으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끝나는 날 교수와 학생들은 사립학교법 제12조와 32조에 근거해서 학교 법인이 있는 한려대학교에 법인 관련 서류를 줄 것을 주장했으나 총장 등 학교 측은 그 서류를 광주 대광여고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교육부 조사단은 그 서류를 하루밤 동안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 편을 들어서 광주로 가져가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김병현 교협 회장님 계십니까?

○證人 金炳炫 예.

○李壽仁委員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金炳炫 예.

○李壽仁委員 교육부의 조사단 파견 및 보고의 결재라인을 정확히 저한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실태조사결과만으로도 수 억원의 회계부정에 의한 횡령,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졌는데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은 유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申樂均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이홍하씨의 범죄행위는 사학부정부패 역사상 가장 중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 대한 교육부의 폐쇄계고조치는 겉으로는 철퇴를 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문제의 핵심인 이홍하씨의 재단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교수와 학생들에게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은 시간이 없어서 구태여 안 따지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홍하씨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교수들 모두

내쫓고 폐쇄계고조치가 철회되면 다시 한려대를 통해, 폐쇄가 되면 문어발의 다른 하나인 광양대를 통해 학교 재산권에 대한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적 특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하씨는 사학마피아입니다. 교육부는 이홍하와 관련된 모두가 다 학교에서 손을 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문제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계고조치 이후에도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이홍하씨 학원 고유의 학교사기단, 토지투기단, 이런 것이…… 이홍하가 설립한 모든 대학에 임시이사진을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홍하가 설립한 모든 대학에서 전 이사진을 모두 퇴진시키고 임시이사진을 파견해야 합니다. 이 길 이외에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학교는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광양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려대학은 살려야 합니다. 이 한려대학은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임시이사진을 파견하는 수밖에 아무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명백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 여부를 떠나서 임시이사를 통해 폐쇄·합병 그리고 학교 재생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학마피아의 표본인 이홍하씨를 일벌백계주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경문대의 전재욱과 같이 제2, 제3의 학교사기단이 계속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계를 황폐하게 만들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부 본부 감사시 문졌지만 지금 마지막 한마디만 문졌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학마피아와 교육부의 관료마피아가 합한 것이 교육마피아입니다. 이렇게 준동을 하기 시작하면 폐쇄되면 될수록 이 마피아들이 득을 본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李在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委員 오랫동안 감사에 임하느라고 여러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적어도 이 나라에 분류가 되어

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8개 대학을 총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관께서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규대학의 올바른 처리는 현재 장관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이 점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개 대학을 감사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이 학교가 잘못되면 피해는 학생들이 입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맡아가야 할 일꾼들입니다.

그 아무 것도 모르는 오로지 대학 하나만 믿고 가서 부모들이 어렵게 돈을 내서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못받는다면 이것은 나라의 큰 재산의 손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크게 오늘 대표적인 세 대학인데 학교를 무슨 편의점이나 음식점 체인점 개설하듯이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여기 저기 개설해서 이 학교 저 학교로 돈을 빼들려 가면서 횡령하고 학생들이 내는 돈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고 또 학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교수를 돈을 받고 채용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학교 차려놓고 교수로 들어오는 사람들, 직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돈받고 장사하는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분규형태는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관선이사든 구 이사든 학교의 돈을 빼들려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교수들 사이에서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학교 교육정책의 갈등이라든지 자존심과 인격에 있어서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교육법에 의해서 또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은 저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의 재산을 빼간다든지 그것을 다른 데 쓴다든지 무슨 교수를 돈을 받고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제 나름대로의 9개 대학에 대한 대안은 18일날 본부감사할 때 제시를 하겠습니까마는 오늘은 지금까지 장관께서 저희들과 함께 듣고 보시면서 앞으로 분규대학에 대해서 어떤 의지로 해결하

시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金日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日柱委員 저는 아까 중부대에서 한려대, 덕성여대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부대의 경우는 아마 제가 아직도 이런 식으로 교수임용을 하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에서도 놀라실 것이예요. 교수 채용하는데 몇 천만원올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미지불 된 것 어떻게 썼다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가 이것은 용납이 안 갑니다.

아까 제가 질의때 소상히 했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아마 해결방안이 쉰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려대인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꽤 중요한 위치이고 학생수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광양제철이 가까운 곳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대책이 이미 정해졌을 것으로 믿어요. 이번에 9개 대학중에 1개 대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정조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규대학들에 대한 국감이 끝나는데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덕성대학의 경우는 잘 수습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의 경우도 역시 사람들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분규대학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분규대학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잘 처리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덕성대 韓相權 교수님은 평소에는 제가 함자만 듣고 잘 몰랐는데 아까 악수하면서 충분히 잘 해내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李文永 교수님은 몇 십년 전부터 존경했는데 나중에 저하고 악수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하겠습니까. 저희 후배들이 선배 잘 모시는 것이 도리아니겠어요.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장관께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18일 본부질의때 소상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감사합니다.

安相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洙委員 安相洙 위원입니다.

중부대학 문제는 교수채용 비리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사회에서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래서 저는 대학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실력있고 양심있는 교수들의 발붙일 곳을 막고 저질의 험잡질하는 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실력을 저하시키고 교수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대 뿐 아니고 우리 대학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가 발붙일 틈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대의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모양인데 이 양반이 법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그것이 무슨 돈이든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큰 비호세력이 있는 듯 싶습니다.

2년여동안 재판을 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2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힘이 뒤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국민 전체가 문제로 삼는 것으로 보고 대학 사회에 외부의 나쁜 비호세력이 비리에 관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성대 문제입니다마는 덕성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구재단에서 있었던 분규를 해결하려 들어간 새로운 재단이 새로운 갈등요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본위원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해결하려 들어가는 임시이사 혹은 정이사의 경우 저는 조금 전문성이 있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李文永 이사장이나 또 유사한 분들같은 경우에…… 겁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교육부의 국장인들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관도 나가셔서 뭐라고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보나 대통령하교의 관계로 보나 좀 다루기 쉬운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

습니까? 학교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어른들이 가서 고생하시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은 얼마나 망신입니까? 어른들을 좀 대접을 할 줄 알아야지요. 겨우 데려다가 이사장이나 시키면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것은 저희 후배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邊衡尹 선생님이나李文永 선생님같은 분은 우리가 선생님이로 모셔야 될 분들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임시이사나 이런 분들을 파견할 때는 조금 전문적인 사람으로 마음대로 해가면서, 교육부에서 올바르게 한다고 그럴 때 제대로 말 듣고 이럴 사람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朴範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範珍委員 문제대학에 대한 사흘동안의 국정감사 결과 각 대학의 진상이 많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대학에 대한 처리는 대학별로 그 사정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역시 제일 큰 문제는 교육부의 감독이 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교육부의 감독이 철저하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 더 가슴아픈 것은 대구대학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부 간부들하고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장관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집행을 좀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집행을 단호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임시이사가 나가 있는 대학 또 새로운 이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외대의 경우에 대학에는 고문제도를 둘 수 없다 그것을 시정을 해라 하고 교육

부가 3월부터 몇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러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조항을 봤습니다. 사립학교법 54조2항2호를 보면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3호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그러니까 외대의 경우에는 그 고문제도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이 지나고도 응하지 않으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이 법을 집행할 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에 몇 번 보낸 공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부 다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기했던 덕성여대의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 이것도 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사문제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관에 있다고 그러지만 정관이 법을 뛰어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덕성여대 교원인사조정특별위원회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이것도 시정조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朴承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承國委員 저희들이 3일간 8개 대학을 감사한 전체적인 질의는 18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각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朴範珍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부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분규도 일어나고 또 학교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덕성여대 이사회에서 98년 3월18일 박원택 이사를 승인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어 오다가 .....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7일안에 유무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안되다가 덕성여대로 하여금 사립학교법 제24조 임원의 보완은 60일 내에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교육부가 스스로 못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월이상 끌다가 99년2월3일 승인했는데 이것 교육부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작년 국감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내년 이맘때 가서 또 이 소리 나와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 책임을 물어야지, 책임을 안맡으면 저는 장관을 상대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인사조정특별위원회라는 법에 없는 기구를 만든 덕성여대 이사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덕성여대 23억원의 교비로 교육대학원 건물을 수리하여 임의로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28조 위반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번째 현 이사진의 학사 간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 20조1항3호입니다.

다섯 번째 재판비용 지불은 사립학교법 29조6항의 위반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 번째 비상근 이사장이 받은 급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18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威鍾漢 마지막으로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委員 金貞淑 위원입니다.

저도 18일 교육부 감사 마감 때 사학분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때 좀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려대학을 하다가 저도 본의 아니게 흥분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말도 못할 정도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부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를 허가해 줘니까?

그리고 허가 당시의 조건들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것을 점검도 안하고, 인·허가 당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전혀 체크도 안하고, 또 학과를 증설해 주고 학생들을 더 늘려주고…… 이 짓을 했어요. 감독 전혀 안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폐교가 문제가 되니까 4일 동안 가서 조사를 했지요. 급하게 4일 동안 조사를 하고 폐교 조치를 내렸어요. 폐교조치를 하려면 그것도 법이 있어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학교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의 시정 또는 변경조치를 먼저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63조에는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청문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기들이 허가 내줄 때도 조사도 안하고 엉터리로 내주었고 또 허가 내줄 때 이행하라고 했던 조건도 하나도 감독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학교 사태가 험악하게 되니까 정신없이 내려가서 4일 동안 조사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폐교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학교에 2,341명의 학생이 있었고 176명 교수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뒷처리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의혹이 있어요.

‘한려대는 광양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엄격히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너무 심한 오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오해가 생겨요. 의혹이 짙습니다.

지금 李洪河 같은 분을 따지고 하는 오늘 시간이 아까워요. 徐福英 총장에 대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몹시 불쾌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교육자입니까? 사기꾼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앞서서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이고 이것은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부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월요일에 다시 할텐데 한려대 같은 이런 처리는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려대는 폐쇄계고조치 철회하고 임시이사 내보내서 학교 건질 수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고 안될 때 그때 가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오늘 주시든지 월요일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는 李文永 이사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내일이라도 이사장 내놓으세요. 그 이사장이 뭐라고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명예를 더 높여주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을 너무나 못하고 계시는 것 이에요. 李文永 이사장님이 가서는 안 될 자리였고 가 가지고 일을, 과거의 권위적이고 지금 그런 리더쉽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우리 나라에 연로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과거의 경력 따지고 젊은 사람들 민주적으로 인정 안 해주고 이런 분위기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로 학교를 끌어가시다 보니까 총장의 권한도 없고 이러니 이것 내놓아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 많고 본인의 위신도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놓아 버리시고……

○薛 勳委員 전혀 안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완전 반대예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貞淑委員 薛위원, 가만히 계세요.

○薛 勳委員 듣다 듣다 못해서 하는 얘기에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金貞淑委員 아니,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본인에 덕성여대도 많은 직원 숫자가 이쪽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도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고 해도……

○薛 勳委員 다가 아니면 공정하게 얘기해야지요.

○金貞淑委員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주장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 이에요.

李文永 이사장이 아무리 사회경력이 좋고 평판이 좋다고 해도 일단 덕성여대에 가서 2년 동안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려나온 것이에요. 이 자리에 불려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薛 勳委員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있었어요.

○金貞淑委員 저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부가 덕성여대에 임시이사 내보내는 것을 속단을 하고 너무 빨리 내보냈습니다. 여기도 역시 좀 더 고민하도록 조금 더 놓아 두었어야 돼요. 어째서 교육부는 일관성 없이

어느 대학은 몇 년씩 임시이사 내보내라고 해도 안 내보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의대나 덕성여대 같은 데는 즉각 내보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일률적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것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 월요일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鍾漢 申樂均 위원, 安相洙 위원, 李榮一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내일 오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金日柱 위원, 말씀하세요.

○金日柱委員 장관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학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대학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규대학에 대한 처리에 따라서 대학발전소위원회는 항상 가동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鍾漢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교육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金德中 저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사실 통감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한편 부끄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와서 분규대학에 대한 것을 처리할만한 다른 것을 먼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며칠 전에야 사학분쟁처리위원회 전원을 소집해서 위원장을 뽑고 시작을 시킨 것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해주신 李在五 위원님이나 金日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부 보면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차관께서 준비해 주신 것도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사학이 잘못되었을 적에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사학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첫 단계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이사를 보내 가지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여하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대학의 경우를 安相洙 위원님께서 특히 신입교원채용에 대한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해서 이미 법제화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입교원을 채용하는 규정을 법제화 했습니다. 그것은 공채와 제3자 이런 규정을 다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러한 적당히 돈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제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만일 일어난다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감독소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까마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국의 과장과 몇몇 직원 가지고는 현장파악이나 사후, 특히 승인을 해도 그 승인이 맞는지, 우리가 조치했을 때 조치를 들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인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흘 동안에 느낀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별 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웃소싱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요청을 해서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아웃소싱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어서 현장감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나라의 대학이 이제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공부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안된다는 신념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이러한 몇개 대학을 보았을 때 질은 커녕 우리 나라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개개인의 문제보다도 제가 보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규 중에서 교수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학교 안에서 서로 학생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법제화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느낀 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부탁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로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8일에 사학분규에 대한 종합대책을 저희 부로서도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鍾漢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薛勳委員 위원장, 아까 내가 고발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委員長 咸鍾漢 그것은 간사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께 모두 송구스러운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서로 마음 아픈 일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모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부는 사흘 동안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셔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학생 모두 삶의 최종 목적지처럼 생각하는 대학이 정말 그 대학을 거침으로써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격체를 만드는 그 곳이 요즘 사흘 동안 여기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라면 저희들 가슴 아프기를 데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내일의 우리 주인들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 여러분!

金德中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관 그리고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교육부 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出席監查委員

|     |     |     |     |
|-----|-----|-----|-----|
| 咸鍾漢 | 金貞淑 | 朴承國 | 安相洙 |
| 李壽仁 | 李在五 | 金瑋鎬 | 盧武鉉 |
| 朴範珍 | 薛勳  | 申樂均 | 李榮一 |
| 金光洙 | 金日柱 | 許南薰 |     |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        |     |
|--------|-----|
| 首席專門委員 | 尙元鍾 |
| 職務代理   | 金基尙 |
| 立法審議官  |     |

○被監查機關參席者

|          |     |  |  |
|----------|-----|--|--|
| 教育部      |     |  |  |
| 長官       | 金德中 |  |  |
| 次官       | 李元雨 |  |  |
| 高等教育支援局長 | 金永植 |  |  |
| 監查官      | 金寬書 |  |  |

○出席證人

|         |     |  |  |
|---------|-----|--|--|
| 중부大學校   |     |  |  |
| 總長      | 張炳圭 |  |  |
| 教授協議會長  | 李仁浩 |  |  |
| 前教務處長   | 金衡東 |  |  |
| 한려大學校   |     |  |  |
| 總長      | 徐福英 |  |  |
| 教務處長    | 金兌鎬 |  |  |
| 前教授協議會長 | 金炳炫 |  |  |
| 덕성여자大學校 |     |  |  |
| 理事長     | 李文永 |  |  |
| 總長      | 李康燮 |  |  |

理 事  
前總長職務代理  
教授協議會會長  
前理事長  
教授  
教授  
教授  
教授  
教務處長

李權  
金朴  
申姜  
韓金

相順  
文元  
和明  
相鍾

信慶  
奎國  
容嬉  
權華